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318-000001-01



#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 일러두기

교육부·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30일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였고, 1월 31일 <국정 과제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이행하기 위한 범부처 조직인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교육부에 출범시켰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 질 높은 새로운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23.1.30. 유보통합 추진방안)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책자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인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23.7.28)'에 따라,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되는 과정에서 교육청 공무원에게는 다소 생소한 영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총 5개 분야, 3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보통합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령, 보육사업안내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개념,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직원, 보육사업 서비스 전달 체계 등 영유아보육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깊이있는 업무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배포한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책자\*를 활용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자료탐재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본 책의 관련 근거에서 인용된 법령, 지침 등은 2023년 10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 근거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최신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Contents

## INTRO

### 유보통합 웹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 차근차근 우리함께 준비해요

## PART

### I

### 유보통합 개관

1. 왜 유보통합인가?	17
2. 유보통합 추진의 연혁	23
3. 해외 유보통합 사례	29
4.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38

## PART

### II

### 한 눈에 살펴보는 어린이집

1. 보육의 개념	45
2. 가정양육 지원	47
3. 어린이집 개념	48
4. 어린이집 인가 절차	52
5.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56
6. 어린이집 평가	58
7. 한국보육진흥원	61
8. 육아종합지원센터	62
9. 보육사업 관련 전달 체계	65
10.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 현황	67

# Contents

---

PART  
III

##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유형

1. 국공립어린이집 .....	75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78
3. 직장어린이집 .....	80
4. 가정어린이집 .....	81
5. 협동어린이집 .....	82
6.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2023년) .....	84

PART  
IV

## 특수어린이집 유형

1. 영아전담 어린이집 .....	89
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91
3. 야간연장 어린이집 .....	101
4. 24시간 어린이집 .....	106
5. 휴일 어린이집 .....	110
6. 방과후 어린이집 .....	111

---

PART  
V

##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1.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	117
2.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비교 .....	119
2-1. 공립유치원 재무회계 .....	119
2-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	121
2-3. 어린이집 재무회계 .....	128
3.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영유아 수 .....	134
4.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수 .....	135
5.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수 .....	136
6. 교원/교직원 수 현황 .....	137

PART  
VI

## 참고자료

1.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23.7.28.) .....	141
2.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23.9.13.) .....	148
3.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 업무 이관 안내 .....	159
4. 서 식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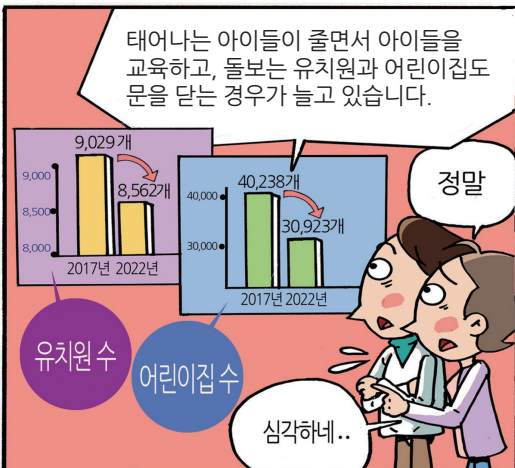
INTRO

## 유보통합 웹툰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유보통합"

차근차근 유보통합에  
준비해요







### 유보통합이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하여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교육, 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보육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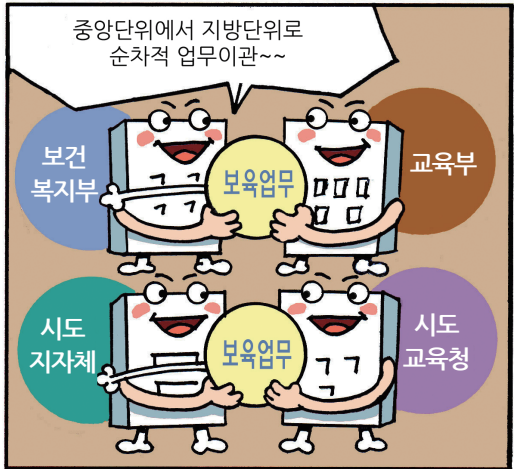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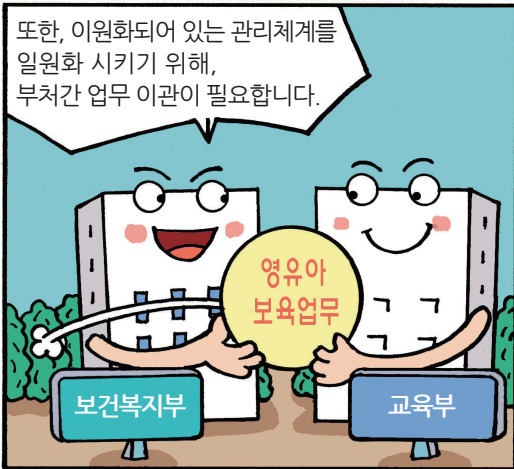
유보통합으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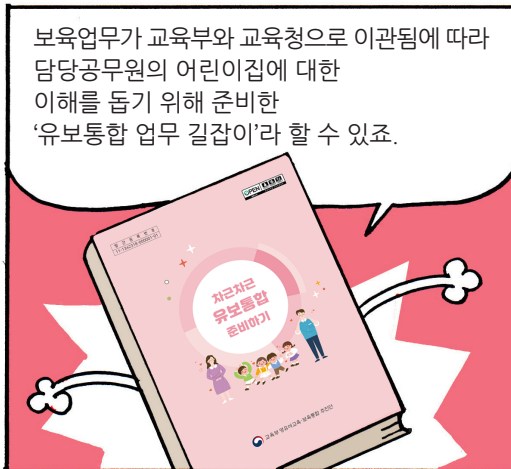
- 영유아 특성·발달 연속성 고려한 교육과정 마련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실질적 보장
-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
- 수급 관리 체계화, 입학·입소의 편의성 제고
-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성으로 선택권 보장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추진단의 노력과  
업무지침이  
차근차근 잘  
나왔네~~



2025년 유보통합 본격 시행 전,  
'유보통합 준비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ART

I

**유보통합  
개관**

1. 왜 유보통합인가?	017
2. 유보통합 추진의 연혁	023
3. 해외 유보통합 사례	029
4.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038





## 1

## 왜 유보통합인가?

## 가. 유보통합의 개념

-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통합의 줄임말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교육 정책임.

## 나. 2023년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 유아교육·보육 통합(이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와 추진은 오랜 시간 진행되어 왔으나, 그간 변화된 교육·보육 환경에 대한 이해와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보통합 이행의 핵심 과제와 방향성을 다시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2023년 상반기 유보통합에 대한 안내자료(리플렛-하나 되는 유보통합, 두 배 되는 아이행복)를 통해, 현재 영유아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각종 지원과 재정규모, 관리체계, 교사자격 등이 다른 데서 오는 교육 돌봄 환경의 차이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음의 필요성을 제시함.
  -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조성
  - 어느 기관이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보육 과정 연계, 통합모델을 통해 개선된 시설·설립 기준을 마련
  - 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책 수행, 주요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는 통합정보 구축 등 유보통합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을 제시
    - ※ 과거 박근혜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의 필요성도 유아교육·보육의 이원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교육 보육과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국가책임의 실현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상기한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달라지는 모습은 통합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음.
  - 통합 논의에 필요한 공통의 핵심 의제를 짚어봄으로써 2023년 유보통합 추진의 목적과 방향성이 보다 명료해지고 미래지향적 설계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 유보통합의 필요성

-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이자 필요성으로 첫째,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한 추이를 보이는 **초저출산·저출생의 인구위기를** 들 수 있음.
  - 저출산의 기초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합계출산율 0.78명(2023년 2분기 0.7명)으로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이 가시화 되는 위기를 목도하고 있음.
  - 역 피라미드의 인구구조 하에서 아동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임.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안전·의료의 제반 인프라 위기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관련 역량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가파르게 줄어드는 영유아 수를 고려할 때, 미래 인적지원으로서의 개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우수한 교육·보육 및 양육의 환경을 구축하고 지켜내는 것이 현재와 같은 초저출산의 인구위기에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임.
  
- 둘째,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이후 더욱 심화된 생애초기 영유아 교육·보육과 돌봄의 **'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들 수 있음.
  -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전달(delivery)과 이용기반(access, use) 및 인프라 유지관리와 지원 수혜(ECEC supports and policies)의 **'형평성(Equity)'**에 관한 것임.
  - 2012-2013년 누리과정의 도입과 2014-2016년 유보통합 추진 3개년 로드맵을 통해서도 영유아 교육 보육 전반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생애초기 출발선 평등이 유보통합 추진의 목적이자 배경으로 논의되었음.
  -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며, 공보육 이용률 증가 등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관점에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과 그 접근성에 대한 차이와 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특히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의 경험,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상에 나타나는 교육격차, 돌봄 격차, 건강 격차와 성장발달 상의 어려움(예: 발달지연, 문제행동 등)에 대한 보고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됨.
  - 생애초기 아동이 경험하는 주요 격차와 공백의 지표에서 사회 인구학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 유의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 ECEC 서비스 이용과 수혜에서의 편차와 그 격차를 좁히고 증가하는 교육 돌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유아교육 보육의 통합된 추진 전략을 필요로 함.
  
- 셋째, 상기한 생애 출발선 평등, 형평성의 과제는 유아교육·보육의 **'서비스 질 (Quality)'** 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양질의 우수한 서비스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자격 및 양성과정, 특히 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의 주요 과제를 안고 있음.
  -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으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실행(curriculum, pedagogy)과도 연관되어 있음.

- 유보통합의 이행은 격차와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취학 전 보편 서비스로서 **ECEC의 질 제고**라는 목표와 필요성을 가짐.
- 넷째, 유보통합은 동일 대상 아동의 동일 업무에 대해 이원화 되어 있는 **‘행·재정 및 지원 체계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임.
  - 교육자치와 일반행정으로 나뉘는 교육과 보육의 행·재정 및 질 관리체계의 거버넌스를 일원화 함으로써, 행·재정의 효율과 질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꾀함.
  - 이러한 효율성의 제고는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이용 및 수혜의 형평성과 양질의 서비스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다부처 사업 추진과 개별 법적 근거로 분절화 된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와 각종 지원·전달 체계에 대해 **통합적 접근과 연계협력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요구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음.
  - 초저출산·저출생의 기조 하에서, 지역별로 유아교육과 보육 인프라 감소와 소멸의 위기를 경험함에 따라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및 연계협력의 거버넌스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는 상황임.
  - 현재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통합적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이 가시화 되는 현장과 지역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넘어선 상호 유사 기관 간 통합적 접근과 포괄적인 연계협력의 운영을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초저출산·저출생으로 아동 수가 줄고, 이로써 관련 교육·보육의 인프라가 소멸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유보통합의 이행과 전략이 필요함.
- 다섯째, **‘아동의 행복한 성장·발달과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보육 정책 및 아동 정책의 전략을 들 수 있음.
  - 이는 아동중심/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의 핵심 가치와도 연관된 것으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아동 권리에 기초한 영유아 중심의 교육 보육 서비스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당위성이 있음.
  - 누리과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아동중심/놀이중심** 교육·보육과정 실행력을 제고하였으나, 여전히 교육과정/교수법의 이행에서 편차를 보임에 따라 질적 제고를 위한 숙제를 안고 있음.
  - OECD 교육 분야 핵심의제를 통해서도, 아동의 **역량(competence)**과 **웰빙(well-being)**을 추구하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추진 전략이 제시되어 있음.
- 여섯째,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복지로의 교육의 역할 및 개념의 확대를 들 수 있음. 유초연계와 전이(**Continuity, Transition**) 및 평생학습, 교육 돌봄의 생애주기 연속성의 확보와 포괄적·종합적 지원체계로서의 역할과 같은 핵심과제의 중요성이 큼.
  - 영유아와 부모의 관점에서 아동에 대한 교육과 돌봄, 기본적인 보호와 복지가 분절되어 있지 않으며 최대한 연속성 있게 종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유보통합을 통해 교육 돌봄의 체계가 분절되지 않고 수요자 영유아와 부모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함.

- 일례로 부모와 영유아는 교육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 및 지원체계에 대한 플랫폼, 안전한 등·하원 정보의 제공과 영유아 연령에 맞는 건강·안전 지원 체계를 원하고 있음. 유보통합을 통해 이러한 종합적 지원과 연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일곱째, **기후위기와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미래 대응의 전략** 차원에서도 유보통합의 추진과 달성 및 유보통합 관점의 대응과 전략을 필요로 함.
  - AI, 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의 당면과제들을 고려할 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영유아의 역량과 행복을 위한 기틀로서 유보통합의 접근과 이행 과정은 미래대응의 전략을 적극 담을 필요가 있음.
  - 이는 온-오프라인 공간의 구성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일 수 있고, 지역사회 및 부모의 참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과정일 수 있음.
- 논의된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상호 연관된 당면 과제로, 어느 하나가 독립된 고유한 논의가 아님. 2023년 시점의 유보통합이 가져가야 할 당위성과 가치를 고려하여 선진화 된 유보통합의 이행 전략과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이행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유보통합으로 실현합니다

여러분! 유보통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유아교육(유치원)'과 '영유아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The diagram shows two overlapping circles on the left. The left circle is labeled '유치원' (Preschool) and '유아교육' (Preschool Education). The right circle is labeled '어린이집' (Childcare Center) and '영유아보육' (Childcare). A plus sign is between them, and an equals sign follows, leading to a larger sun-like shape labeled '유보통합' (Unified System).

우리나라 만 0~5세, 즉 취학 전 영유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기관은 만 3~5세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등 비슷한  
점이 많지만, 어디를 다니느냐에 따라 받는 교육·  
돌봄의 서비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The illustration shows a man and a woman standing between a preschool building and a childcare center building, with question marks above their heads.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치원은 8,562개소로  
55만2,812명의 유아가 다니고 있고, 어린이집은 30,923개소로  
109만5,450명의 영유아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기관	개소 수	이용 유/영유아 수
유치원	8,562	55만 2,812명
어린이집	30,923	109만 5,450명

그렇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연령	만 3~5세	만 0~5세
근거 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소관부처	교육부-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지자체
설립목적	교육 중심	보육 중심
자격체제	원장, 원감 교사 (1급 2급)	원장 교사 (1급 2급 3급)

먼저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  
중심의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 중심의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The illustration shows a man in a suit pointing to two signs: '유아 교육법' (Preschool Education Act) and '영유아 보육법' (Childcare Act).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하네요.

The diagram shows two paths leading to a unified system. The left path is '유치원' (Preschool) with '유아교육 전공' (Preschool Education Major) and '유치원정교사자격증' (Preschool Teacher License). The right path is '어린이집' (Childcare Center) with '보육교사 자격증' (Childcare Teacher License). Both paths lead to a central oval labeled '유보통합' (Unified System) with the text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Towards strengthening teachers' professionalism and improving their treatment).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관리하는 기관도 다릅니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두 기관은 근거 법령과 관리 부처, 선생님이 되는 자격 요건, 시설기준 등이 다 다른데요

유아교육법 VS 영유아보육법	교육부 VS 보건복지부
표준보육과정 (만 0~2세) 누리과정 (만 3~5세)	시설기준 교사자격 ...

유보통합은 우리 영유아(0~5세)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추진합니다. 연구자문단도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도 진행합니다.



또한 본격적인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선도교육청」 사업으로 우선 추진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 추진단은 “아이 행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이란 비전을 내세우고,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 2

# 유보통합 추진의 연혁<sup>1)</sup>

### 가. 해방 후~1990년대

- 유아교육은 교육법(1949년)과 유아교육진흥법(1982년)에 따라 처음부터 교육기관으로, 보육은 아동복지법(1961년)과 아동복지법(1981년)에 의한 탁아시설을 거쳐 유아교육진흥법(1982년)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영유아보육법(1991년)에 의한 보육시설(어린이집)로 발전해 옴.
  - 1949년에 제정한 “교육법”에 명시된 유치원은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유아를 보육하고 심신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었음.
    - ※ 교육법 제146조: 유치원은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교육법 제148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 4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 1961년에 제정한 “아동복지법”에 요보호 아동을 위한 여러 시설 중에 하나에 탁아시설을 규정하였고, 요보호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였음.
    - ※ 아동복지법 제2조(아동 및 임산부): 본법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 ※ 아동복지법 제3조(아동복지시설): 본법에서 아동복지시설이란 함은 아동상당소, 보육시설, 조산시설, 정신박약아보호시설, 맹농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보호시설, 지체불자유아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시설, 부랑아보호시설과 소년직업보도시설 기타 아동복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982년에 제정된 “유아교육진흥법”에는 유치원과 새마을유아원<sup>2)</sup>을 함께 포함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을 병렬로 명시함. 반면, 주무부처는 유치원은 문교부, 새마을유아원은 내무부로 이원화함.
    - ※ 유아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심신발달의 충실을 기함과 아울러 무한한 잠재력을 신장하게 함으로써 장차 건전한 인격을 가진 국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나아가 그들의 역량을 국가발전에 기여하게하기 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이 법에 의한 유아원을 말한다.
      2. “새마을유아원”이라 함은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유아교육진흥법 제13조(취원대상): ①유아원에 취원 할 수 있는 유아는 4세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아반이 설치된 새마을유아원에는 4세미만의 영아를 취원시킬 수 있다.

1) 가, 나, 다 내용은 이옥·김은설·신나리·문무경·최혜선(2006). 육아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아교육·보육의 협력과 통합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06-1; 이미석·김재웅(2007). 『유아교육법 제정 과정 분석: Cambell의 정책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제25권2호; 이일주(2016).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제13차 미래교육포럼-유보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과제-』발제문, 미래교육연구원; 이윤진·김지현·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성과 분석』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6 등을 참고하였고, 법조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인용함.

2) 기존의 탁아시설을 새마을유아원으로 흡수함.

- 1991년 12월 31일「교육법」이 개정되었는데, 유치원의 목적을 '보육'에서 '교육'으로 바꾸었고, 유치원 입학연령을 '만 4세'에서 '만 3세'로 낮추었음. 이에 따라 1949년에 법적으로 동의어였던 유아교육과 보육이 1991년부터 새롭게 법적으로 구분되어 교육과 보육은 다르다는 것을 확정하는 계기가 됨.

※ 「교육법」 개정 전·후 비교

교육법 [법률 제4347호, 1991.3.8., 타법개정]	교육법 [법률 제4474호, 1991.12.31., 타법개정]
제146조 유치원은 유아를 <b>보육</b> 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6조(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b>교육</b> 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48조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b>만 4세</b> 부터 국민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148조(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b>만 3세</b> 부터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기까지의 유아로 한다.

-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탁아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함. 동법을 시행하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어린이집)로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새마을유아원은 보육시설(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환원되고, 보육 시설(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 부처가 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적 및 제도적으로 이원화 체제가 됨.

- “영유아보육법”에는 ‘보호’와 ‘교육’의 용어가 명시되었고, 대상 연령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로 규정함.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 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 1997년 ~2004년: 교육·보육 대논쟁 시기<sup>3)</sup>

- 1997년 6월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안을 보고할 때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확립방안」을 건의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본격적으로 이슈화 됨. 유아 교육 공교육화의 주요 골자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 방안 및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교육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임.

3)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1997년에 시작되어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까지 7년의 시기를 유아교육 대논쟁 시기로 명명함.

-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안”을 1997년 국회가 발의했으나, 초·중등교육법과의 법체계상 문제점 및 유아학교 안에 대해 보육시설, 보육 관련 단체, 학원, 국공립·사립유치원 간 대립 등 이해 단체의 반대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이해 충돌로 본 법안은 폐기 또는 계류가 되풀이 됨.

- 한편,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 전문개정으로 유아교육체제의 구축,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함.

※ 유아교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의 다양한 교육요구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정의):

1. “유아”라 함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3.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무상교육):

- 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유아교육진흥법 제5조(유아교육진흥위원회):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정책의 수립·조정 및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유아교육법안” 제정을 둘러싼 갈등, 대립이 되풀이되다가 마침내 2004년 1월 9일 “영유아보육법” 전부 개정되었고, 2004년 1월 29일 독립된 모법인 “유아교육법”이 제정됨.

-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전부개정안에는 종전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들만을 대상으로 하던 ‘선별보육’에서 모든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편보육’으로 전환하면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능이 중복되는 문제를 야기함. 동시에 사회복지서비스로 기관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치원과 차별화된 기관임을 명시함.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독립된 모법인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학교임을 명확히 하였고,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육기능을 강화함.

※ 유아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1. “유아”라 함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6. “종일제”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 다. 2005년~2013년: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

-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2004년 제1차, 2005년 제2차 육아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모두 포함하는 육아정책개념을 제시함.
  -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적 정책연구를 위한 육아정책개발센터(현, 육아정책연구소) 설치를 제안, 2005년 12월에 설립함.
- 이명박 정부는 이원화되어 있던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제정하여 만 3~5세 모든 유아들이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함.
  - ※ 2011년 5세 누리과정(2012년 현장 보급), 2012년 3~4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정하여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3년 현장 보급)을 완성함.
  - 기존의 유아교육과정의 5개 영역(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과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을 누리과정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으로 통합함.
  -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동일하게 함.
    - ※ 2012년 월 19만원으로 시작해서 2023년 기준 누리과정 지원금은 월 28만원임.
- 누리과정은 유보통합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큼. 그러나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면서, 2015년에는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소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금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첨예한 갈등이 발생했었음. 현재 누리과정 재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평회계)를 설치하고 국고와 교육세에서 충당하고 있음.
  - ※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하였으나,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함.

## 라. 2013년~2017년: 유보통합 정책 의제화<sup>4)</sup>

- 박근혜 정부는 2013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위한 3단계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4년부터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임기 내에 완성을 목표로 설정함.
  - ※ 2014년 2월 국무조정실에 3개 팀으로 구성된 ‘영유아교육 보육 추진단’ 설치
  - ※ 국무조정실이 설정한 유보통합의 기본방향은 ①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 ② 박근혜정부 임기 내 완성, ③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라 ‘영유아 교육 보육 추진단’에서 12개의 추진과제를 재설정하여, 수요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던 많은 요소들을 통합하였음.

4) 장석환(2020). 한국의 영유아정책: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관점 참조.

※ 유보통합 12대 추진과제는 2014년 1단계에 ①유아학비 보육비 지원 결제카드 통합, ②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공시 연계 통합, ③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체계 통합, ④ 재무회계규칙 강화 통합 추진, 2015년 2단계로 ⑤ 가격규제 제도 개선, ⑥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 및 교육 보육과정 통합, ⑦ 시설기준 정비, ⑧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⑨ 교육 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⑩ 교사양성 자격 정비 및 연계 추진, 2016년 3단계 추진과제로는 ⑪ 교사 처우 격차 해소, ⑫ 관리부처 및 자원, 법률 통합 추진

- 박근혜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계자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0~5세 영유아의 유보 통합을 통한 유아의 연속적 발달단계를 고려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1~2단계의 과제 시행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음.

- 결제카드 '아이행복카드' 통합, 정보공시 항목과 범위 통합, 공통평가항목 기준 마련, 미흡한 시설기준을 정비,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한 예산과목 조정,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시범 실시, 유치원 원비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가격규제 장치 마련, 어린이집에 맞춤형보육 서비스 시행 등을 추진함

-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과제인 교사양성 자격 개편 및 처우개선과 관리부처 자원 통합 방안은 마련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은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유보통합에 따른 자원확보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정권 말기 국정농단 사태, 2014년~2016년 세수 부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쟁 등 갈등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함.

#### 마. 2017년~2021년: 유보통합에서 유보격차 완화로<sup>5)</sup>

-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음.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설정하여, 교사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 질의 균등화를 추진하였으나, 유보통합 추진 등의 추가적인 진전이 없는 답보 상태를 보임.

- 만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2019년 7월)하고 전면 시행(2020년 3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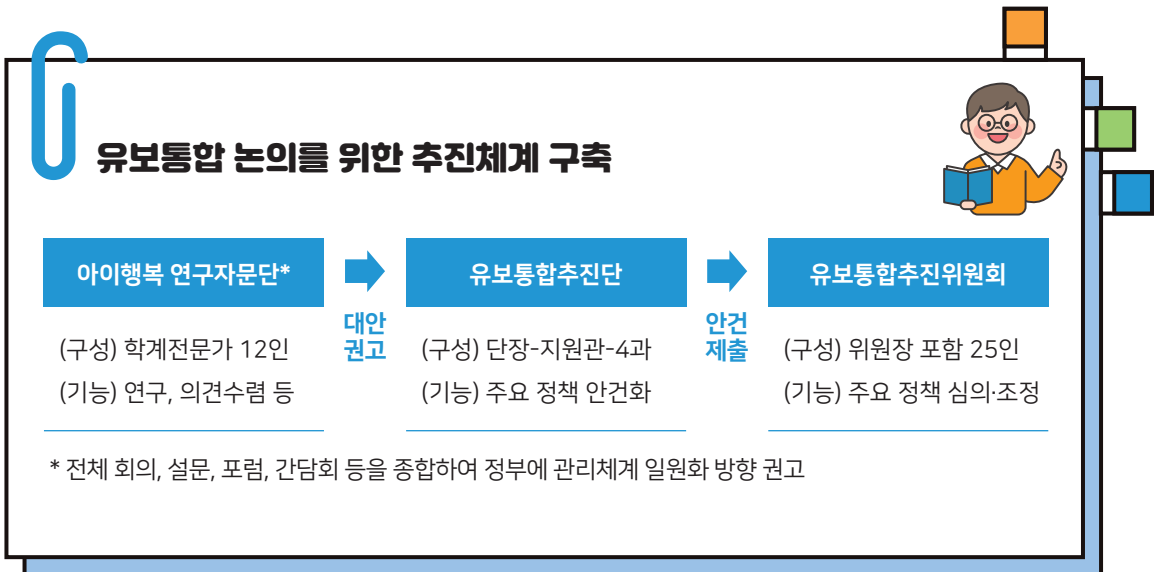
- 유치원 3법 개정(2020.1. 29.)으로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근거가 법률에 신설되고,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등 유치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

※ 2020년 3월 1일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

5) 장석환(2020). 한국의 영유아정책: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관점 참조  
국무조정실(2021).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참조

## 바. 2022년 이후: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의 단계적 추진을 포함(교육부·복지부)함.
  -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교육부는 2023년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 중임.
  - 유보통합은 1단계(2023년~2024년)와 2단계(2025년~)로 나뉘서 추진되며, 1단계 시기에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 시기에는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예정임.
    - ※ 「유보통합추진 준비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정(2022.9.14.)
    -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2023.1.31.)
    -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출범(2023.4.4.)
    -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발족(2023.4.14.)



# 3

## 해외 유보통합 사례

### 가. 뉴질랜드<sup>6)</sup>

#### ● 유보통합의 역사적 배경

- 뉴질랜드는 1986년 이전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지원과 관리 책임이 교육부, 사회복지부, 마오리 담당부로 나뉘어져 있었음.
- 영유아를 위한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논의와 함께 보육과 유아교육의 개념(ECCE: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이 유아교육(ECE: Early Childhood Education)으로 대체됨.
- 질 높은 유아교육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1986년에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교육부로 이관됨: 5세 이전(Before Five)으로 불리는 유아기 교육 보육 정책 개혁을 수행하면서 교육으로의 이전이 완료됨.

#### ●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

- 1984 노동 선언서 완료, 보육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 목표 설정
- 1985 보육시설에 관한 개정안, 보육과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연수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보육 행정의 전환을 위해 합동 장관급 특별전담반 구성  
    유아교육과 보육에 관한 장관급 포럼 개최
- 1986 사회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보육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  
    유치원교사 3년 양성과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 1987 유치원과 보육 서비스를 위한 3년 교사 양성 정책 수립
- 1988 그 이상을 위한 교육(Education to be more): 유아교육과 보육 특별위원회 보고서(녹서)
- 1988 5세 이전(Before Five): 뉴질랜드의 유아교육·보육 보고서(백서)
- 1988 Te Kohanga Reo 보고서 정부 차원 검토
- 1989 5세 이전 여섯 가지(Six Before Five) 정책 실행을 위한 특별위원회 보고서
- 1990 모든 유아서비스(ECS, Early Childhood Service)에 대한 공적 재정투자계획 수립
- 1990 유치원·보육서비스를 위한 공인교원 자격요건에 관한 단계별 정책 수립

6) 본 섹션은 「공병호, 최인화, 한유미(2019). 보육 선진국의 유보통합 과정 및 통합 시스템 연구」, 「김은설(2011). 뉴질랜드의 유아교육 보육 통합과정(육아정책포럼 제25호, pp. 26-34)」, 「박은혜, 장민영(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교육과학연구 제45집 제1호, pp. 149-180)」 및 「Meade, A., & Podmore, V. N.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policy co-ordination under the auspices of the Department/Ministry of Education: A case study of New Zealand. Early childhood and family policy series(UNESCO-Ser-1-2002)」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유보통합 관련 5년간의 작업 결과

- 보육과 유치원교사 교육 연한 통합
- 교원 양성에서부터 자격까지 인사행정통합
- 교원 연수과정의 핵심 교과 과정 통합
- 교원 양성을 위한 재정보조 형평성 제고
-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급여의 형평성 제고

#### ● 행정체계 및 재정

- 1986년 유아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교육부로 통합됨.
- 유보통합 후 교육부는 정부 정책을 개발하고, 시설을 인가하고, 시설의 현장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전달함.
- 정부의 다른 부서 ERO(Education Review Office)는 매년 정부 규정과 각 서비스가 자체 현장의 목표 및 정책을 준수하는지 검토함.
- 1989년 예산안 발표 시 보육서비스도 상대적으로 공평한 보조금을 지급받음. 교육부의 모든 유아 서비스는 2세 미만 영아에게 추가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면 시간당, 아동당 보조금이 제공됨.
- 사회복지부는 유보통합 후에도 자산 조사를 통해 취약 계층 가정에 비용 보조금을 계속 지불함.

### | 뉴질랜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및 재정 지원 |

통합연도	법	담당부처	재정지원
1986년	Education Act(1989)	교육부	● 공 사립 기관에 재정지원(기관 이용 아동에게 시간당 지원되는 보조금은 아동 연령, 시설유형, 운영형태, 교사 자격수준에 따라 달라짐)

#### ● 기관 운영 및 제공서비스

- 유보통합 후에도 기관의 운영 형태, 문화적 배경,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방식,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나이 등이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 뉴질랜드 유아교육 보육 기관 유형 |

연령	0	1	2	3	4	5	6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주도기관(Teacher-led service): 유치원, 교육 보육 서비스, 가정 기반 교육 보육 서비스, 질병이나 특수한 상황으로 기관 등원이 어려운 영유아대상 교육서비스(Te cura)</li> <li>● 부모주도기관(Parent-led service): 놀이센터, 놀이그룹, 토착 민족의 고유 언어로 운영하는 영유아 교육 보육서비스 등</li> </ul>						초등학교 입학

주: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유아는 5세 생일이나 그 직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6세가 될 때까지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의무는 아님<sup>7)</sup>.

7) 뉴질랜드 교육부 홈페이지. <https://parents.education.govt.nz/primary-school/schooling-in-nz/primary-and-intermediate-schooling-in-nz/> (2023. 8. 28. 인출).

### ● 교원의 자격

- 1986년 부처 통합과 함께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 및 교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필요
- 유치원교사 2년, 보육교사 1년의 교육을 1987년 통합된 3년의 교사양성 과정으로 정책 수립 (실습기간 20주 이상)
-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돌봄과 교육을 아우르며 영아부터 취학 전 유아까지 포함
- 놀이센터 지도자와 유치원 교사에게 요구하는 자격증이 다름.

#### | 뉴질랜드 유아교육 보육 교원 자격 |

교원자격	양성체계	ISCED 단계	담당연령
놀이센터 지도자 (Playcenter leader)	고등학교 졸업	ISCED 3	0~5세
유치원 교사 (Kindergarten teacher)	3년 대학	ISCED 5	

### ● 교육과정

- 1986년 유보통합을 하면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전개
- 교육과정 초고가 나오기 이전 작업부터 최종 교육과정인 테파리키(Te Wh riki)가 1996년 탄생 하기까지 총 5년이 소요됨.
- 2017년 테파리키 개정
- 테파리키 4원칙: 역량 강화, 총체적 발달, 가족과 지역사회, 관계
- 테파리키 5가닥: 웰빙, 소속감, 기여, 의사소통, 탐구

#### | 뉴질랜드 유아교육과 보육 교육과정 |

학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초등학교 1학년
교육단계	유아교육단계						초등교육단계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Te Wh riki)						국가 의무교육과정

## 나. 핀란드<sup>8)</sup>

- 유보통합 추진 배경
  - 1990년대부터 모든 유아가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받을 보편적 권리 보장을 강화(신동주, 2015)
  - 유보의 연계와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유치원(kindergarten)과 유아원(creche)을 통합한 데이케어(day care) 확대
  - 복지적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유아교육·보육과 초등교육 간 연계 강화
  - 0~5세 대상 보육서비스는 사회보건사업부, 6세 학령전교육은 교육문화부 담당이었으나, 2013년 유보통합이 추진되면서 교육문화부로 부처 일원화
- 유아교육·보육 통합 과정
  - 1973 아동보육법(Children's Day Care Act) 제정
  - 1996 모든 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장
  - 2000 유아교육 필수 교과과정 마련
  - 2001 취학전 아동(만6세) 대상 유아교육을 교육문화부에서 담당  
지자체가 유아학교 교육과정 운영
  - 2002 국가 차원의 영유아 ECEC 정책에 대한 정부결의  
국책연구기관 설립 및 활동: 국립보건복지연구원 및 국가교육위원회
  - 2003 0~6세를 포괄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교육과정 제시
  - 2013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고, 관할 부처를 교육문화부로 일원화

8) 본 섹션은 「신동주(2015a). 노르딕국가의 ECEC 제도 연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73-99, 「신동주(2015b). 핀란드의 유아교육 교원양성제도 연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교원양성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 교육연구, 32(4), 103-129,」 「박은혜, 장민영(2014). 통합 요소별로 살펴본 8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현황 비교: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교육과학연구 제45집 제1호, pp. 149-180),」 「곽노의(2017). 핀란드의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8(1), 329-341,」 「오교선, 이병환(2019).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제도 및 유아교사 현직교육 비교. 교육문화연구, 25(5), 523-542」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 ● 행정체계 및 재정<sup>9)</sup>

- 2013년 유아교육·보육 관할 부처가 교육문화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로 일원화
- 2015년 새로운 아동보육법(Children's Day care Act)이 도입되면서 핀란드 모든 영유아의 안녕과 발달을 위한 데이케어 서비스 제공과 학령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가 강조된 새로운 교육과정 시행
- 국가 유아교육계획 기반을 마련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두고 있음.
- 개별 데이케어센터는 개별 유아를 위한 개별 유아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모와 협의 하에 계획을 실행하고 부모의 정기적 평가 실시
-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자부담금법(Act on Client Fe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2016)에 근거하여 이용자부담금 규정 방법, 소득 기준, 지자체가 부과 가능한 최대 금액 등에 대한 규정이 정해짐.
- 부모의 부담금은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중 약 14% 정도로 소득수준이나 가족규모에 따라 무상이거나 소액을 부담하며, 학령전교육은 무상임.
-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립기관이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정은 지방정부에서 60% 이상, 중앙정부가 약 25% 정도 부담

### | 핀란드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및 재정 지원 |

통합연도	법	담당부처	재정지원
2013년	Children's Day care Act(1973/2015) 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2018)	교육 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과 상관없이 재정지원</li> <li>- 0~5세: 부모의 소득수준 및 가족규모에 따라 부모 부담금이 정해지며, 전체 예산 의 약 14%</li> <li>- 학령전교육(6세): 무상</li> </ul>

### ● 기관운영 및 제공서비스

- 핀란드는 0~5세까지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6세는 프리스쿨에서 학령전교육 실시
- 학령전교육은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8월부터 만 6세 대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였으며, 지자체는 1일 4시간, 연간 700시간 이상 제공하여야 함.

### | 핀란드 유아교육·보육 기관 유형 |

연령	0	1	2	3	4	5	6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re) 1일 10시간 이하</li> </ul>						학령전교육 (Preschool Class)

9) 핀란드 교육문화부 홈페이지, <https://okm.fi/en/legislation-ecec>, (2023. 8. 31 인출)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보안

● 교원자격<sup>10)</sup>

-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교원은 유아교사와 보육사가 있으며, 전체 교원의 1/3 이상이 학사학위 이상의 유아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유아교사(Kindergarten teacher)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학사학위소지자이거나 사회 복지 및 보건 분야를 전공하고 유아교육 관련 학점을 추가 이수한 사회교육사(Social pedagogue)가 있음.
- 보육사(Childcarer)는 아동 돌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 및 지도 분야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하거나 등등한 자격과정을 완료해야 함.
- 학령전교육 담당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 핀란드 유아교육·보육 교원 자격 |**

교원자격	양성체계	ISCED 단계	담당연령
보육사	전문교육	ISCED 5	0~5세
유아교사	대학교육	ISCED 6	6세

● 교육과정<sup>11)</sup>

- 2003년 0~6세 영유아를 포괄하는 유아교육·보육 국가교육과정 제시
- 2013년 유보통합 이후 유아교육·보육 국가교육과정 지침서(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에 따라 교육 과정이 실시되었으며, 학령전교육은 유아 교육을 위한 국가핵심교육과정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imary Education)에 따라 실시되었음.
- 2022년 3월부터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 적용
- 핀란드 국립 교육청(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이 수립한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지역별 교육과정이 수립되고, 각 기관에서 개별 유아교육 및 보육 계획 수립.

**| 핀란드 유아교육과 보육 교육과정 |**

학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6세반
교육단계	유아교육단계						초등준비단계
교육과정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국가 핵심 교육과정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CEC)						

10) 핀란드 유아교육학습 공동연구포털, <https://www.opiskelevarhaiskasvatusta.fi/>, (2023.8.31. 인출)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보완

11) 핀란드 교육청 홈페이지, <https://www.oph.fi/en/education-and-qualifications/national-core-curriculum-ecec-nutshell>, (2023.8.31. 인출)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보완

다. 대만<sup>12)</sup>

- 유보통합 추진의 배경
  - 유아교육과 보육이 교육과 복지로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었음.
  -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짐.
  - 아울러 저출생 현상이 맞물려져 유보통합을 추진하게 됨.
- 유아교육 및 보육법(幼兒教育及照顧法) 체계<sup>13)</sup>
  - 제1장 총칙
  - 제2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설립 및 에듀케어 서비스
  - 제3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유아교육자의 자격, 권리
  - 제4장 아동의 권익 보호
  - 제5장 부모의 권리와 의무
  - 제6장 에듀케어 서비스 기관의 관리, 지도
  - 제7장 징벌 규정
  - 제8장 부칙

Ⅰ 교육·보육 체계 Ⅰ

학제	0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4세반	5세반	6세반
교육단계	보육		보육/교육 단계				교육단계
교육과정	-						국가 의무교육과정

- 대만 유아교육 및 보육법 시행 과정<sup>14)</sup>
  - 1997년 12월 중앙정부 차원에서 유보통합 논의
  - 2001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2004년 교육부와 내무부 장관 “유보통합방안 기획 결과보고서” 기자회견
  - 2005년 유치원의 행정주관기관 교육부로 결의
  - 2010년 ‘아동교육 및 보육법’ 초안 공청회
  - 2011년 ‘유아교육 및 보육법’ 제정
  - 2012년 1월 1일 ‘유아교육 및 보육법’ 시행

12) 본 섹션은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法學研究 第34卷 第1號)와 황성일, 김선희(2023),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東北亞法研究 第16卷 第4號)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13) 황성일, 김선희(2023).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東北亞法研究 第16卷 第4號. p. 82.

14)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研究 第34卷 第1號. pp. 482~483.

● 행정체계 및 재정

- 유치원과 탁아소의 통합 개편<sup>15)</sup>
- ‘유아원’으로 유치원 및 탁아소 명칭 대체
- 2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까지 교육과 보육 서비스
  - 4~5세 유치원과 2~5세 어린이집을 합쳐 2~5세 일률적 통일
- 교육부에서 총괄·관리·감독<sup>16)</sup>
  - 소관 부처, 교사 자격, 교육 및 보육가정 등 교육부로 통합
  - 교육부 초등교육과 내무부 아동복지과를 교육부 초등교육으로 통일
- 교육부 사회교육과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방과 후 보육 주관, 교육부 초등교육과는 유치원 방과 후 보육 관할
- 가정 보육과 0~2세 영아 보육은 아동·청소년복지 관계 법규와 하위 법령에 의해 내무부 아동 복지과에서 비용 지원
- 국·공립의 경우만 국가에서 무상교육

| 대만 유아교육과 보육 기관 유형 |

연령	0	1	2	3	4	5	6
기관	내무부 아동복지과		교육부				교육부

● 기관운영 및 제공서비스<sup>17)</sup>

- 기관책임자는 유아원 설립등기 명의인(법인: 이사장)
- 교원 구성은 유아원 원장, 교사, 교보원, 보조교보원
- 유아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 2세부터 3세까지 유아 한 학급에 16명 상한
  -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과 유아 비율 1:8
-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한 학급에 30명 상한
  -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과 유아 비율 1:15
-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 학급에는 1인 이상의 유아원 교사 배치
- 유아원 원내 보조 교보원 수는 교육·보육 서비스 인원 총수의 1/3 초과 불가

15)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研究 第34卷 第1號. p. 483.

16) 황성일, 김선희(2023). 동아시아 3개국의 유보통합에 관한 연구. 東北亞法研究 第16卷 第4號. p. 83.

17)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研究 第34卷 第1號. pp. 485~486.

● 교원자격<sup>18)</sup>

- 「교원양성법」에 의거
- 교원양성법 규정에 따라 유아원 교사는 교사 자격 취득한 자
- 교사, 교보 원, 보조교보원의 신분 구분과 요건은 유보법의 개정과 '교육·보육서비스 인력 조례'의 제·개정에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Ⅰ 교원 자격 Ⅰ

구분	자격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원 교사 또는 교보원 자격을 갖춘 자</li> <li>● 유아원(제정 유보법 시행 전의 유치원 및 탁아소 포함)에서 5년 이상 교사 또는 교보원으로 근무한 자</li> <li>● 직할시·현(시) 주관기관이 자체적으로 또는 위탁하여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과, 학위과정을 갖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실시하는 유아원 원장의 전문교육을 통과한 자</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양성법 규정에 따라 유아원 교사 자격 취득한 자(교사증서(威師證書) 소지)</li> <li>● 교원양성법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유치원 교사 자격 규정 적용</li> </ul>
교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 또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외국 전문대학 이상 학교 의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위과정 및 학과를 졸업한 자</li> <li>● 국내 전문대학 이상 학교 또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유아교육, 보육과 관련 없는 학위과정, 학과를 졸업하고 유아교육,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한 자</li> </ul>
보조교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고등학교 보육 관련 과정 및 졸업 자격을 갖춘 자</li> </ul>

18) 김대홍(2023). 유보통합을 위한 대만의 '유아교육 및 보육법'에 관한 연구. 法學研究 第34卷 第1號. p. 486.

# 4

##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

### 가. 추진경과

- 유보통합은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 돌봄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하기 위함.
- 유보통합 1단계('23~'24)에서는 영유아교육 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및 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1단계 추진 방향: 학부모의 교육 돌봄 부담 완화,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자격 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안전한 환경(시설) 조성, 조직의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채용 이관 및 통합 추진, 관련 법률 제 개정 추진
  - 추진 방안(내용):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유보통합 2단계('25~)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보통합을 시행하고자 함.
  - 2단계 추진 방향: 교사의 개편된 자격 양성 과정 적용, 설립·운영 기준 개선안 적용, 조직의 일원화된 관리체제로 통합 지원,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제·개정 법률 시행
  - 추진 방안(내용):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운영,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 단체 대표, 교원 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조정, 유보통합 연간 추진 계획 및 성과의 점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 처리를 위한 실무 기구이자 범부처 협업조직으로서 교육부에 설치

### 나. 유보통합 1단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운영을 통해 기관 간 격차 완화 도모
  -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과제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운영함.

- 선도 교육청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시간 및 대상 확대,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안전 환경 개선 등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항목을 발굴하고 예산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함.
- 유보통합추진단에서는 선도 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법 행정적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선도 교육청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새로운 통합모델 수립 등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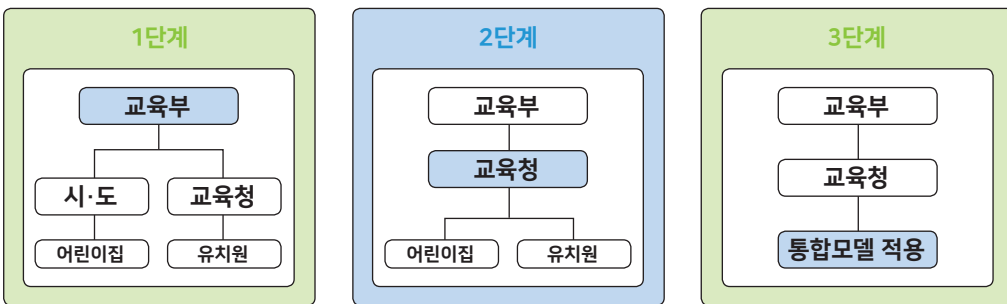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기관의 교육 돌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확대 추진.
- 기관 이용에 따른 학부모 추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2024년 5세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누리과정 지원금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임.  
※ 현재 5세 누리과정 지원금은 28만원임.
- 0~2세는 무상보육 내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원함.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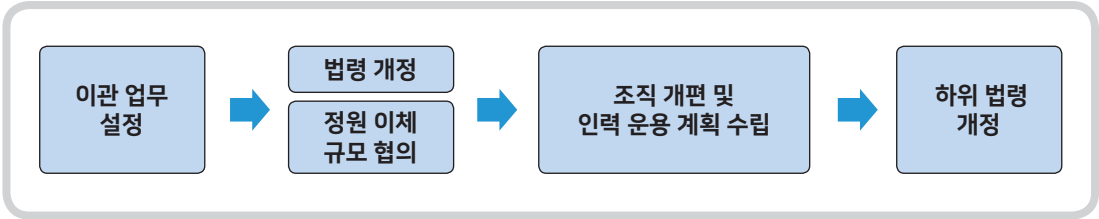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예산, 정원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함.
- 중앙 단위 먼저 이관을 완료한 후 지방 단위에서 이관(先중앙, 後지방)을 추진함.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3.5월) 추진 순서 관련, 응답자의 57.5%(특히, 시·도 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4.4%)가 "先 중앙 - 後 지방이 적절하다"고 응답.
- 중앙-지방 순차 이관에 따라, 유보통합 실행 모습은 3단계로 구분

Ⅰ 유보통합 3단계 실행 모델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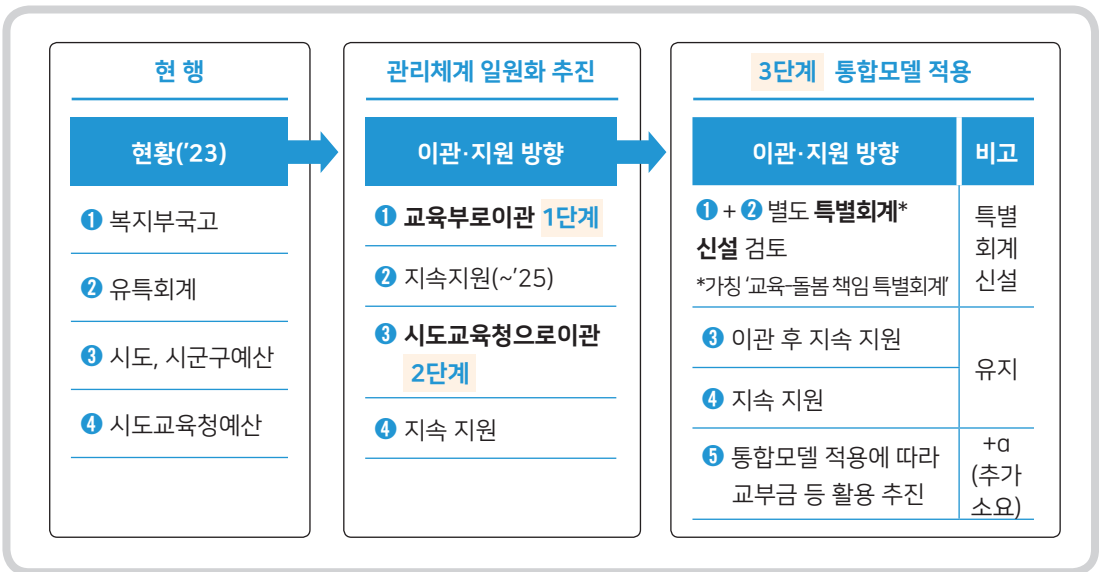
※ 통합모델 일정에 따라, 1~2단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성격은 유지한 채 이관

- 이관 절차는 중앙실무협의체, 지방추진단, 중앙-지방4자 실무협의회\* 등으로 업무 재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함.
-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함.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을 추진함.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은 기관 간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의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기관으로의 재설계를 원칙으로 삼음.
- [교사] 교사의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양성 체제 개편 추진
- [교육과정] 미래역량 반영, 특별한 요구가 있는 유아, 교사지원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통합,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체계화함.
- [설립·운영] 학부모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적 특수성 등이 반영된 기관 설립·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별·기관별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영유아의 교육·돌봄 환경에 필수적인 시설 기준의 합리적 상향을 통해 교육·돌봄 환경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논의함

## 다. 유보통합 2단계: 유보통합의 본격적 시행

###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 및 운영

-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인 영유아 교육 돌봄을 지원함.
- 지역별 영유아 추계 및 수요에 따른 기관 수급 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따른 기관 배치 및 질 관리 등을 추진함.  
※ 예시: (현행) 유아배치계획과 어린이집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 → (개선) 영유아배치계획 수립
- 1단계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통합기관을 출범 운영함.

###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 [교사] 1단계에서 마련한 교사 자격·양성 체제 개편안 및 처우개선안을 적용하여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무여건 개선을 추진함.
- [교육과정] '26년 현장 적용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마련을 추진함
- [설립·운영] 지역별·기관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기관이 설치·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경과규정 적용 등을 통해 기존 기관에 대한 통합기관으로의 전환 추진·지원을 병행함

PART

II

**한 눈에 살펴보는  
어린이집**

1. 보육의 개념	045
2. 가정양육 지원	047
3. 어린이집 개념	048
4. 어린이집 인가 절차	052
5.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056
6. 어린이집 평가	058
7. 한국보육진흥원	061
8. 육아종합지원센터	062
9. 보육사업 관련 전달 체계	065
10.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 현황	067





## 1

## 보육의 개념

가. 보육(child care)은 출생 후 영아기와 유아기에 제공되는 돌봄과 교육을 뜻함. 출생 초기인 신생아에게는 필요한 영양과 식사를 제공하고 목욕을 시키고 쉽게 잠들 수 있게 하는 돌봄에 국한되지만 영아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사회적 자극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포함해 언어, 인지, 수, 자연 등 통합적 교육활동을 의미함

\* 이순형 외(2013). 보육학개론(4판). 서울:학지사

나. 보육의 개념은 과거 '탁아'라는 개념에서 시작함.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 대신 일정시간 동안 아이를 맡아서 돌보아 주는 것.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보육은 단순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지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들의 보호받고,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개념으로 변화됨

\* 유구중, 조희정(2015). 영유아교육개론. 경기:공동체

다. 2004년 1월,「영유아보육법」개정 이전의 보육

-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

라. 2004년 1월,「영유아보육법」개정 이후의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서비스”

- 보육의 개념에 “보호·양육·교육”이 포함, 선택적 보육에서 보편적 보육으로 보육의 대상이 전환

마. 2008년 12월,「영유아보육법」개정 이후의 보육

- ‘가정양육 지원’까지 포함

- 현행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 OECD가 사용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칭하는 용어.
- 환경과 예산지원, 운영시간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상관없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돌봄과 교육을 포함

OECD가 ECEC에서 '보육(care)'앞에 '교육(education)'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었다. 여성 고용의 현저한 증가는 아동양육 방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쳐 많은 국가로 하여금 육아정책을 발전시키게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을 수립하므로 아동의 필요와 발달에 부적합한 정책수립으로 이어졌다. 육아가 여성의 일에 장애물로, 육아가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나쁜 인식도 키웠다. OECD는 '보육'앞에 '교육'을 씌으로써 영유아를 위해 조직된 모든 서비스에서 양질의 교육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함을 강조하였다.(OECE, 2006)

## ECCE(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 유네스코가 사용한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칭하는 용어

ECCE에 대한 유네스코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유네스코 홈페이지)  
 유아기는 출생부터 8세까지이며, 이 시기는 두뇌발달이 최고조에 이르고 현저하게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동안 어린이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유아보육과 교육(ECCE)은 초등학교 준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견고하고 광범위한 평생학습 및 복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사회적·정서적·인지적·신체적 필요를 종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ECCE는 배려하고 유능하고 책임질 줄 아는 미래 시민을 기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ECCE는 한 나라가 인적자원개발, 양성평등,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훗날의 교정 프로그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 중 하나이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어린이들을 위해 ECCE는 가족 측면에서의 불리함을 보상하고, 교육적인 불평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2

## 가정양육 지원

### 가. 개요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근거,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나. 목적

-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영·유아에게 현금성 수당, 시간 단위 일시보육서비스, 각종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 완화

### 다. 사업 내용

	가정양육수당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2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 부담 경감	가정양육 가구가 긴급 또는 일시적 상황으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지원	보호자의 양육역량 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 영유아의 인권 보호
대상	86개월 미만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	6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아	영유아보호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업 수행
지원단가	월 10~20만원 (월령별로 다름)	시간 당 4천원 중 3천원 지원 *월 80시간 이내	-
추진체계	복지부→시·도→시·군·구 *시·군·구: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 정산	복지부→시·도→시·군·구→관리기관(시·도육아 종합지원센터)→제공기관(지정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군·구: 제공기관 지정, 예산 집행 관리 등	(중앙)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커리큘럼 등 개발, 강사진 훈련 (지방)시·도, 시·군·구→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신청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복지로)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전화신청(1661-9361)	육아종합지원센터
'23 국고 예산	1,759억원	204억원	10억원('2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지방 이양('22)

# 3

## 어린이집의 개념

가.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보육”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범주에 포함



### ‘탁아소’ VS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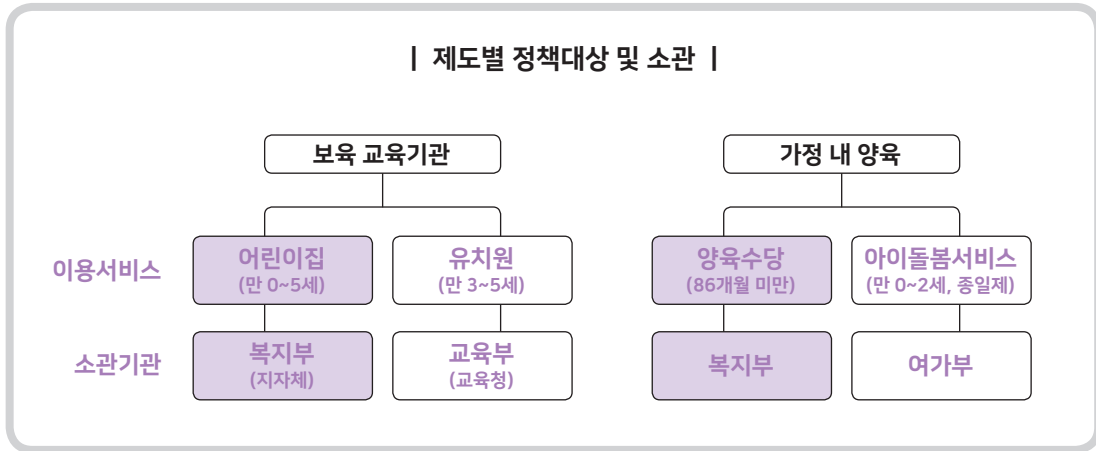


광복 이후 초기의 탁아소는 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자선, 빈민구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 고아나 미아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이들을 수용·보호하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탁아소가 생겼고, 재정 지원은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부르도록 권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탁아소라는 이름은 일제 강점기에 생겨난 것으로 어린이를 임시 맡겨 두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며, 보모들도 어린이를 맡아서 보호하는 일로 자기들의 사명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은 이름 그대로 어린이가 자기 집에서 처럼 놀며 배우고 사랑받고 자라며 사람 사귀는 곳이라는 뜻을 함축한다

다. 정책 대상 현황

- (보육대상) 취학 전 영아(만 0~2세)·유아(만 3~5세) 220만명
- (제도별 이용 현황) 어린이집 이용 110만명(49.5%), 유치원 이용 55만명(25%, 만3~5세), 가정 양육(양육수당 수급) 아동 56만명(25.5%)



라. 어린이집 현황 (3만 1천개소) (※ 유치원은 총 8,562개)

- 총 3.1만개 어린이집이 설치 운영 중('22.12월 기준, 전년 대비 7% 감소)
  - (시설수) 가정어린이집 1.2만개(39%), 민간 1.0만개(31%), 국공립 0.6만개(19%) 순
  - (아동수) 민간어린이집 47.8만명(44%), 국공립 27.7만명(25%), 가정 18.4만명(17%) 순

마. 어린이집 현황 및 규모별 분포

- 전체 3.1만개소로 설치주체에 따라 7가지로 분류(영유아보육법 제10조)
  - ① 국공립, ② 사회복지법인, ③ 법인·단체 등, ④ 민간, ⑤ 가정, ⑥ 협동, ⑦ 직장 어린이집으로 구분

(22.12월, 단위: 개소, 천명)

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기관	30,923 (100%)	5,801 (18.8%)	1,254 (4.0%)	610 (2.0%)	9,726 (31.5%)	12,109 (39.1%)	132 (0.4%)	1,291 (4.2%)
아동	1,095 (100%)	277 (25.3%)	65 (5.9%)	28 (2.5%)	478 (43.6%)	184 (16.8%)	3 (0.3%)	62 (5.6%)	

\* 가정어린이집(12,109개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의해 정원 20인 이하로 운영



## 유아교육·영유아 보육 업무



구분	유아교육 업무	영유아 보육 업무	
중앙 행정 기관	관장 주체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과</li> <li>-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 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국 3과</li> <li>-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보육사업기획과/보육기반과</li> </ul>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책임교육정책실)</li> <li>①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수행</li> <li>② 유아교육비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li> <li>③ 유치원 교육과정 및 교원 관련 제도 개선</li> <li>④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1조(인구정책실)</li> <li>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li> <li>② 영유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li> <li>③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li> <li>④ 보육행정 전산화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운영·관리</li> <li>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자격관리</li> <li>⑥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li> <li>⑦ 영아·장애아·다문화 가정 영유아 등 취약보육 서비스 등의 지원</li> <li>⑧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li> <li>⑨ 어린이집의 평가인증</li> <li>⑩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확충 및 환경 개선</li> <li>⑪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인가 기준</li> <li>⑫ 어린이집의 지원 및 지도·감독</li> </ul>
지방 자치 단체	관장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교육감</li> <li>교육지원청의 교육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지사</li> <li>시장·군수·구청장</li> </ul>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시·도교육청 유아교육과/유초등교육과/유아특수교육과/초등교육과</li> <li>교육지원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보육정책담당부서</li> <li>시·도청, 시·군·구청</li> </ul>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근거: 「유아교육법」)</li> <li>① 매년 유아교육 시행계획 수립</li> <li>②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설치</li> <li>③ 사립유치원 설립·폐지 인가</li> <li>④ 유치원 설립 의무</li> <li>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설정</li> <li>⑥ 공립·사립유치원 지도·감독 및 유치원 장학지도, 유치원 평가, 유치원 휴업 및 휴원 명령, 유치원 폐쇄 권한</li> <li>교육지원청(근거: 시도조례)</li> <li>- 공·사립유치원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거: 「영유아보육법」</li> <li>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li> <li>②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③ 국·공립어린이집 설치</li> <li>④ 국·공립어린이집 외 어린이집 설치 인가</li> <li>⑤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 관리</li> <li>⑥ 취약보육 우선 실시</li> <li>⑦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급</li> <li>⑧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도와 명령</li> <li>⑨ 어린이집 휴원 명령, 어린이집 폐쇄 등 권한</li> <li>⑩ 위반사실 공표 권한</li> </ul>
지원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교육진흥원(교육원, 체험원): 시·도 15개원, 분원 9개원('23.10.1.기준)</li> <li>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li> <li>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li> <li>③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li> <li>④ 유아 체험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보육진흥원</li> <li>① 어린이집 평가</li> <li>②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li> <li>③ 보육교직원 맞춤형 교육 및 지원</li> <li>④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li> <li>⑤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아우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li> <li>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18개소, 시·군·구 112개소('23.10.1.기준)</li> <li>①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li> <li>②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li> </ul>	

## 전국 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교육원, 체험원, 분원 현황)



(2023. 4. 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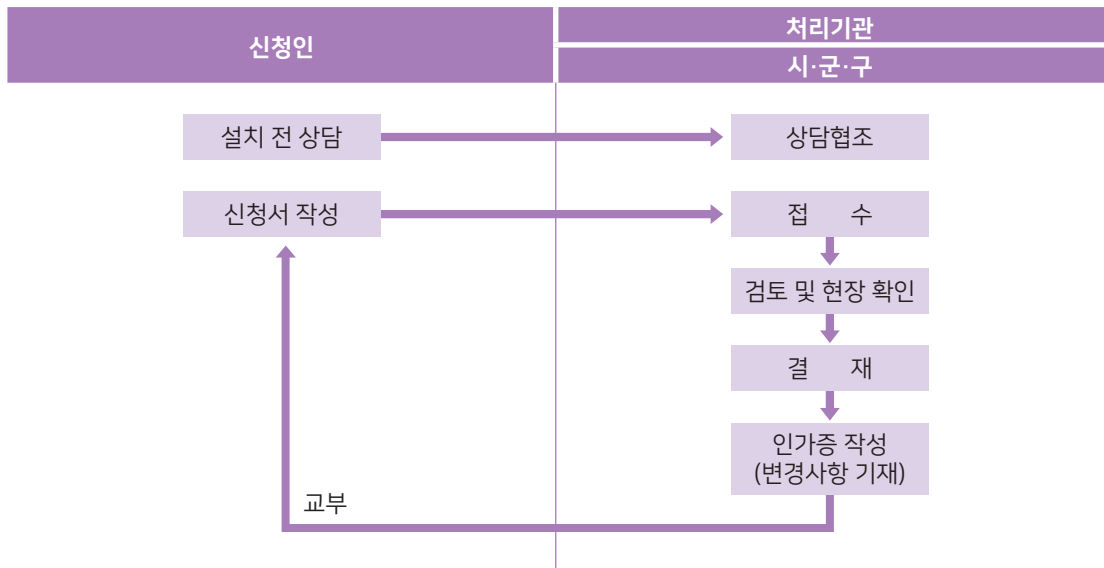
구분	시도	공식명칭	설립연도
1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8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09
		부산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유아놀이체험센터	2019
3	대구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2
4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1
5	광주	광주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0
6	대전	대전유아교육진흥원	2013
7	울산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2011
		울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크나무놀이터	2021
8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세종유아생태체험센터	2022
9	경기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2004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0
		평창유아체험학습장	2014
		속초유아체험학습장	2015
11	충북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2012
12	충남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10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북부체험교육원	2020
		충청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남부체험교육원	2022
13	전북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2
		석교유아종합학습분원	1998
1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2013
15	경북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1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유아교육체험센터	2010		
16	경남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2002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2008
		경상남도교육청유아교육원 김해체험분원	2014
17	제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012

# 4

## 어린이집 인가 절차

### 가. 인가절차

- 신규(변경)인가



### 나. 인가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법 제13조)
-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설치인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보육수요 등 지역 여건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의3)
- 어린이집의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인 자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시설의 종류·명칭·대표자·소재지·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
-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①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함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CCTV 설치, 정원 50명 이상인 경우 놀이터 설치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어린이집 입지 조건 및 재산요건, 설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야 함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의미하며, 취약지역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설치 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여
  - 다만,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또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통한 위탁보육 가능
  -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명단 공표 실시

#### 다. 인가 시 유의사항

-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대표자 소재지 정원 변경 및 증 개축시설에 적용함
- 2층 이상 어린이집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관서에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함

##### 1)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협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어린이집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 고지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함(시행규칙 제4조의3)

##### 2) 설치 전 상담 시 유념하여 고지할 사항

- 어린이집의 인가관련 법령 준수여부 확인
- 어린이집의 입지 관련 사항
  -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옥외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입지조건 중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
  - 건축물의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건물의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 '05. 1. 30.부터 대표자·정원(증원)·소재지·종류의 변경 등이 제한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보육료·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인)의 ‘자산 및 부채현황’ 등 경비의 지급 및 변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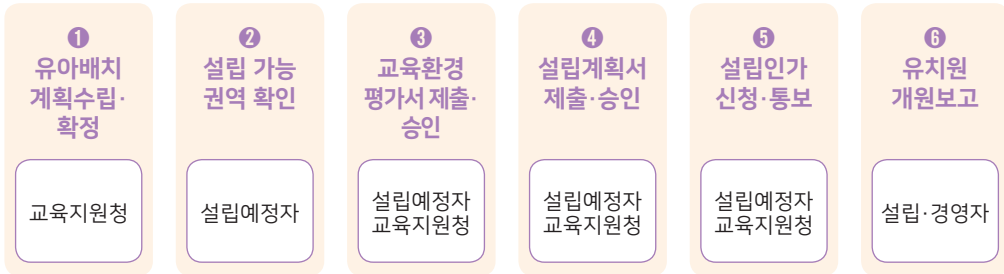
###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해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함(법 제13조제2항)
-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 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생활권 등 해당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시군구 단위 내에서 인가제한권역을 설정할 수 있음
- 보육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유치원 설립인가 흐름도



구분	요약	시기
① 유아배치 계획수립·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취원수요에 따른 정원으로 신·증설 인가 여부 지역교육청 판단 결정</li> </ul>	3년마다
② 설립 가능 권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유치원 설립가능권역 및 신설가능 정원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 확인</li> </ul>	매년 1월 15일까지
③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예정지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 환경 등에 대한 평가서 제출승인</li> </ul>	(승인) 제출받은 날로 부터 45일 이내
④ 설립계획서 제출·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예정자의 재산주체, 교지확보계획, 교사 건축계획, 설립·경영자 자격요건 등 구비서류 적정성 및 유아교육관계법령 부합여부 검토·승인</li> </ul>	(제출) 매년 3월 31일 까지
⑤ 설립인가 신청·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통해 설립인가·통보</li> </ul>	(신청) 설립예정일 4개월 전까지
⑥ 유치원 개원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임용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li> <li>개원 결과 보고 -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li> </ul>	개원 후 7일 이내

# 5

##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가. 보육교사는 1, 2, 3급의 자격이 있으며, 1급은 신규취득이 불가하며 승급에 의해 취득, 2, 3급은 신규취득 가능함

① 신규 자격 취득

- (2급)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학위 취득자, 대학 등 이상 학력 인정받은 자로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학위 취득자(17과목, 51학점)

\*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 교육원) 교육과정(65학점) 이수자

② 승급기준 : 보육교사 2·3급자가 승급하기 위해서 일정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총 80시간) 이수 필요

\* 3급→2급 : 2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2급→1급 :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

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종류는 일반, 가정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으며, 각 자격기준 충족 및 원장 사전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증 취득 가능

\* 일반자격기준 : 보육교사(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유치원 원장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 1급 취득 후 5년 이상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등

다. 어린이집에는 원장, 보육교사 이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조리사) 등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이 보육 업무를 이행하고 있음

### 보육종사자

- 보육교사 **23.1만명**이 어린이집 종사, 총 자격취득자는 114만명('22.12월 기준)
  - 담임교사 16.6만명, 보조교사 3.2만명, 연장교사 2.2만명, 대체교사 0.3만명 등
- ※ 유치원 교원은 5.4만명 규모

라.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관한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함



## 어린이집·유치원 기본 현황



(유치원: '23.4.1, 교육통계/어린이집: '22.12.31, 보육통계/단위: 명, %)

구분	유형	기관 수	영유아수			교원수
			0~2세	3~5세	계	
어린이집	국공립	5,801 (18.8%)	148,853 (22.8%)	126,791 (28.9%)	275,644 (25.3%)	73,511 (23.6%)
	사회복지법인	1,254 (4.1%)	27,235 (4.2%)	35,479 (8.1%)	62,714 (5.7%)	16,975 (5.4%)
	법인·단체	610 (2.0%)	11,086 (1.7%)	16,017 (3.6%)	27,103 (2.5%)	7,027 (2.3%)
	민간	9,726 (31.5%)	250,514 (38.4%)	226,027 (51.5%)	476,541 (43.7%)	116,442 (37.3%)
	가정	12,109 (39.2%)	182,972 (28.1%)	1,061 (0.2%)	184,033 (16.9%)	76,144 (24.4%)
	협동	132 (0.4%)	1,144 (0.2%)	2,056 (0.5%)	3,200 (0.3%)	953 (0.3%)
	직장	1,291 (4.2%)	29,896 (4.6%)	31,639 (7.2%)	61,535 (5.6%)	20,944 (6.7%)
	<b>소계</b>	<b>30,923</b> (100%)	<b>651,700</b> (100%)	<b>439,070</b> (100%)	<b>1,090,770</b> (100%)	<b>311,996</b> (100%)
유치원	국공립	5,133 (60.8%)	-	152,661 (29.3%)	152,661 (29.3%)	23,975 (43.1%)
	사립	3,308 (39.2%)	-	369,133 (70.7%)	369,133 (70.7%)	31,662 (56.9%)
	<b>소계</b>	<b>8,441</b> (100.0%)	-	<b>521,794</b> (100.0%)	<b>521,794</b> (100.0%)	<b>55,637</b> (100.0%)

# 6

## 어린이집 평가

### 가. 어린이집 평가제도 개념

-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
-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12.11.)으로 어린이집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진행하던 평가인증제가 '19.6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평가제로 전환되어 시행

### 나. 평가 항목

-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건강·안전, 교직원 등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운영상황(4영역, 18개 지표, 59항목)평가
- 현장평가자가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한 내용을 전문가들이 심의하여 평가등급 결정



#### 다. 평가받은 어린이집 관리

- 어린이집 평가제에서는 평가 후 어린이집이 평가주기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
- 평가 후 관리 내용으로는 사후방문지원, 확인점검, 평가 관련 교육 제공, 등급조정 등이 포함

사후방문지원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방문지원, 교육 및 정보제공
확인점검	평가받은 어린이집 중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수준 확인
평가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온라인 포함)
최하위 등급 (D등급) 조정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라. 평가받은 어린이집 찾기

- 부모님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어린이집 정보 공개포털'을 통해 평가결과(평가(인증) 여부,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평가(인증) 이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유치원 평가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공·사립유치원 평가의 권한이 있으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함

###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에 대한 평가는 국립·공립·사립유치원을 각각 그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유치원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치원 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유치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시정보 등을 이용한 정량(定量)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을 이용한 정성(定性)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가. 설립목적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

※ 「영유아보육법」제8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나. 주요업무

- **(어린이집 평가 관리)**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주기적 평가 및 교육·컨설팅 등 사후 관리를 지원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 취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육 교직원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역량강화 도모를 위해 현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및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호자 대상, 부모교육, 양육 상담 등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내 어린이집의 보육활동 지원을 위해 보육교직원 대상 컨설팅, 상담 지원
- **(어린이집 이용불편 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 지원)** 부정수급 방지, 신뢰받는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운영·회계 교육, 조사 기반 강화, 이용불편신고 및 CCTV 운영·관리 상담 기능 확충 등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교육, 운영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공공형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
- **(국공립 확충 지원 및 품질관리)** 어린이집 확충 사업지원 및 신규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수행

고유사업	수탁사업
- 어린이집 평가 사업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및 현지조사 지원
- 보육교직원 자격관리 사업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품질관리 전담사업
- 보육교직원 인성교육 및 평가 사업	- 공공형어린이집 품질관리 사업
- 보수교육기관 평가 사업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시간제보육 사업운영·관리
	- 취약보육 담당 보육교직원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사업

### 다. 조직 및 정원(7.31. 기준)

- 1실 5본부 19부(정원 367명)
  - 정원 368명(정규직 142명, 무기직 226명) / '23년 예산(291억원)

# 8

##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목적 :**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

**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 7조(육아종합지원센터) 및 36조(비용의 보조), 동법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다. 사업예산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22년부터 지방이양)

\*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설치 예산은 국비 50%지원('23년 국고 10억, 1개소 신축)

**라. 주요 사업 :** 어린이집 지원, 양육 지원, 기타 지역사회·유관기관 연계사업 등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기타사업
- 어린이집 컨설팅 -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연수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상담 - 영유아 성행동문제 관리·대응 지원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	- 부모교육 및 상담 -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 육아콘텐츠 개발·지원 -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 놀이(체험)실,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등 운영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지역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보육 및 양육 정보 수집·제공 - 지자체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총괄·지원

**마. 설치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 131개소('23.8월말 현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22.6월부터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지정)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소,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12개소

(단위: 개소)

구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1	1	1
시군구		25	9	2	6	2	2	5	-	31	3	5	3	4	3	6	5	1

**마. 이용 안내**

- 대표전화번호 1577-0756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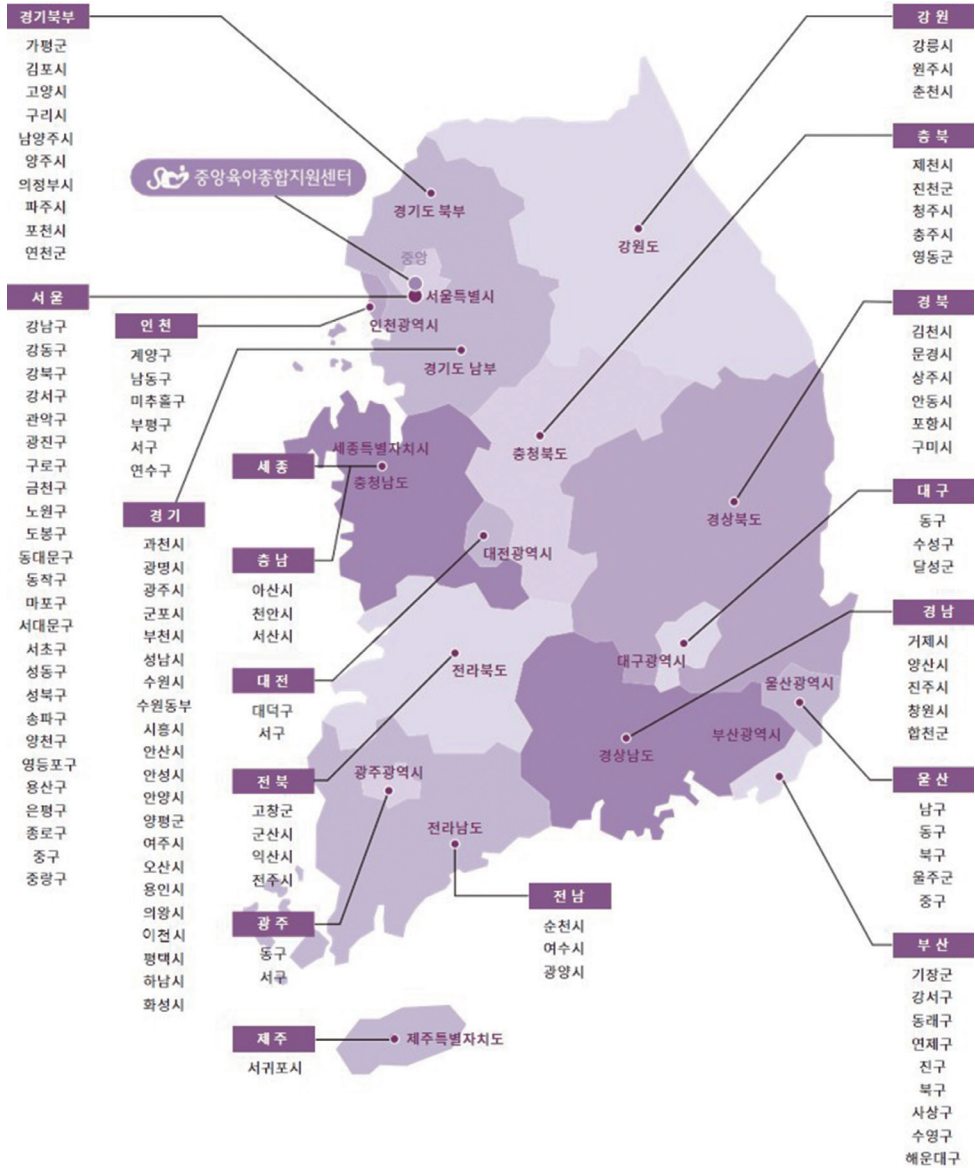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기준일 : '23. 10. 1.)



구분	중양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 (A)		시군구수 (B)	설치율 (A/B)	
계	131	1	18	112		228	49.1%
중양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0	-	1	9	강서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16	56.3%
대구	3	-	1	2	동구, 수성구	9	22.2%
인천	7	-	1	6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10	60.0%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		-	-
경기	33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 북부		-	1	9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10	90.0%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5	-	1	4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14	28.6%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2	27.3%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 9

## 보육사업 관련 전달 체계

### 가. 보육사업 관련 주요 근거법률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 나. 보육사업 주체별 역할 및 전달체계

#### 1) 보건복지부

-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규 제정 및 정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계획 수립 및 지원, 관리 감독 및 지도
- 보육료 등 각종 보육정책 예산 편성, 집행 및 관리 감독
- 보육교직원 자격 및 양성 체계 운영
- 보육 정책 관련 각종 제도 개선

#### 2) 시·도 및 시·군·구

- 중앙정부, 시·군·구 간 및 시·군·구 내 연계(시·도, 시·군·구)
-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례 등 제정 및 정비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사업비 교부 및 정산, 관리 감독 및 지도
- 어린이집 지도 점검 및 가정 양육 지원

#### 3)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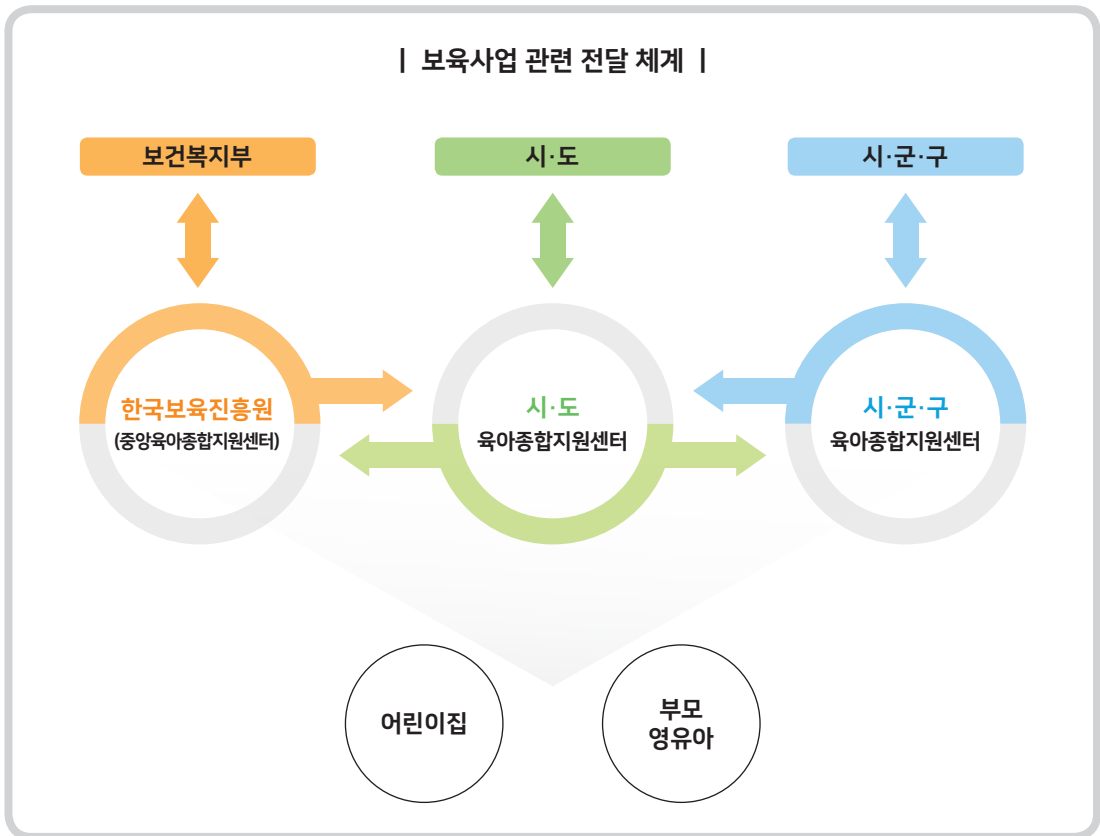
- 어린이집 평가척도 개발
- 보육 양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보육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4)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공동사업 및 특수사업 총괄·지원 및 수행
-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 관할 지역의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지원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 지역 지원
-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 5)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특성에 기초한 보육·양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관할 지역의 보육·양육 공동사업 및 특수사업 총괄·지원 및 수행
- 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
- 지역 정보수집 및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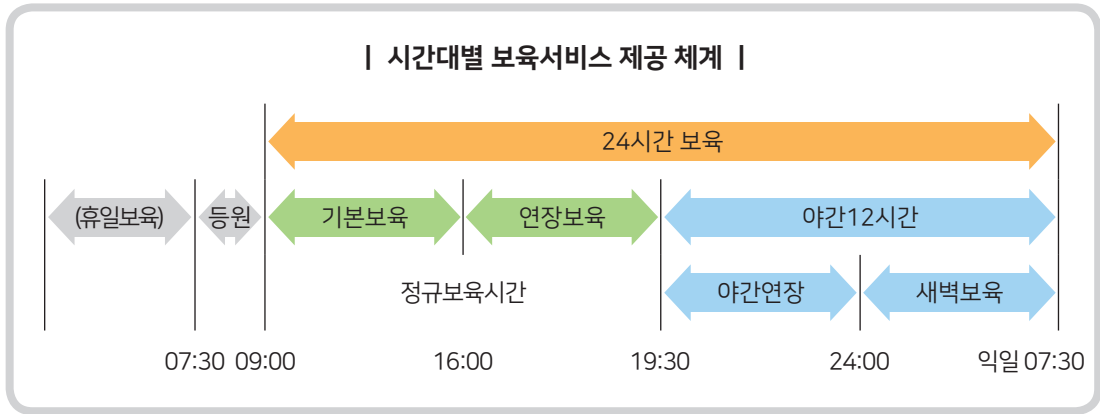


# 10

##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및 보육료 지원 현황

가. 어린이집 보육체계: 정규보육(기본+연장) + 그 밖의 연장형 보육

- 기본보육(09:00~16:00) + 연장보육(16:00~19:30) 시간이 정규보육 시간
- 정규보육 이전·이후 취약시간 보육을 위해 그 밖의 연장형 보육으로 야간연장, 야간 12시간(야간 연장+새벽보육), 24시간, 휴일보육 등 제공



- 연령별로 법정 정원 이하 반(班)을 편성, 담임 보육교사 중심으로 해당 반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현황



('22.12월 기준, 단위: 명)

구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
법정 비율	1 : 3	1 : 5	1 : 7	1 : 15	1 : 20	1 : 20
실제 비율	1 : 2.8	1 : 4.6	1 : 6.6	1 : 11.0	1 : 14.6	1 : 15.2

**나. 영유아 보육 예산**

- 국비 6.7조원(보육료 3조원, 교직원 인건비 1.8조원, 부모급여 1.6조원 등), 지방비 3.9조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누리과정) 1.8조원
- ※ '23년도 유특회계 예산은 총 3.5조원 규모(유치원 1.7조원)

**다. 2023년 민간·가정어린이집 연령별 보육료(월 기준)**

(단위: 천원)

영아반(정부지원)				유아반(정부지원)				부모 부담 보육료	계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계	구분	부모보육료	누리운영비	소계		
만0세반	514	599	1,113	만3세반	280	78	358	108	466
만1세반	452	326	778	만4세반	280	78	358	91	449
만2세반	375	221	596	만5세반	280	78	358	91	449

\* 부모보육료: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수요자(보호자)에게 100% 지원하는 보육료

\*\* 기관보육료: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vs. 국·공립어린이집 등: 반별로 인건비 30~80%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보육료수납상한액(시·도지사 결정, 지역별 상이)과 부모보육료(정부전액지원) 차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받는 보육료(현재 전액 지자체 지원중)

**라. 양육 지원: 부모급여·양육수당 및 시간제보육 지원**

- (부모급여·양육수당)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0~23개월 아동에게 부모 급여 월 35~70만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24~85개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월 10만원 지급
- \* '22년 출생아부터 지급, '24년부터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
- (시간제보육) 생후 6~36개월 아동의 가정양육 중 긴급·일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등 지정된 기관에서 이용하는 시간 단위 보육



## 유아교육·보육예산 현황



### 예산규모

구분		2022년	2023년	비고
보육 (어린이집)	유특회계(국고)	2.1조원	1.8조원	
	복지부국고	5.5조원	5.1조원	
	지자체부담 (복지부 국고 매칭)	3.3조원	3.1조원	
<b>소 계</b>		<b>10.9조원</b>	<b>10.0조원</b>	
유아교육 (유치원)	유특(국세교육세)	1.7조원	1.7조원	
	지방교육재정(교육청)	3.2조원	3.9조원	
<b>소 계</b>		<b>4.9조원</b>	<b>5.6조</b>	
<b>합 계</b>		<b>15.8조원</b>	<b>15.6조원</b>	시도, 시군구 자체사업 - 22년 1.9조 / 23년 2.0조



## 2023년 국고 보육예산 현황



구 분	'23예산 (백만원)	세부 내역
합 계	6,678,017	
● 영유아보육료지원	3,045,558	
- 영유아보육료 지원	3,025,145	- 어린이집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시간제 보육지원	20,413	-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표준보육비용조사	-	- 적정보육료 지원단가 산출을 위한 조사
●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52,643	
- 어린이집 기능보강	3,473	-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개선
- 어린이집 확충	49,170	- 국공립신축, 국공립장기임차, 공동주택리모델링, 장애아전문 신축 등
● 어린이집 관리	31,482	
- 보육사업관리	4,655	-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1,000	- 신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조성비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1,892	- 교직원 보수교육, 보육자격관리 관련 운영비지원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941	-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분야 모니터링단 운영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43	-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21,772	- 한국보육진흥원 운영 지원
-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1,179	- 현지조사 지원 및 이용불편신고센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	1,751,026	
- 공공형어린이집	664	-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지원, 사후품질관리
- 보육교직원인건비및운영지원	1,750,362	-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 인건비 -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 특별수당(담임교사, 연장보육교사, 농촌보육교사, 겸직원장) - 어린이집 운영지원(교재교구 차량 등)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75,854	- 취약전 가정양육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지원	1,621,454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PART

Ⅲ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유형**

1. 국공립 어린이집	075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078
3. 직장어린이집	080
4. 가정어린이집	081
5. 협동어린이집	082
6.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2023년)	084





## 1

## 국공립어린이집

## 가. 정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법<sup>1)</sup>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1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 (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 시 수정 제출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2조 제2항)
-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설치 등록 시 대표자명에 시장·군수·구청장 개인 성명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기재
-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원 2주 전부터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소대기 신청가능일을 선택 할 수 있음

1) 이 책에서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라. 우선 설치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법 제12조제1항)
  -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마. 의무 설치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함(법 제12조제3항)

**바. 시설의 위탁운영 등**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 참조

**사. 예산 지원**

-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 지원대상

**| 대도시, 중소도시 |**

-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17인 이하 어린이집 중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
- ④ 정원 21인 이상, 현원 18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농어촌 등 지역 |**

- ① 정원 20인 이하, 현원 17인 이하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
  - \*단, 5개반 이상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겸직제외 가능
- ② 정원 20인 이하, 현원 18~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
- ③ 정원 21인 이상,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 원장

**| 대도시, 중소도시 |**

**| 농어촌 등 지역 |**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대·중소도시	정원	현원	지원 조건	농어촌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20인 이하	17인 이하	보육교사 겸직시 *5개반(미충족반, 시간제보육반 포함) 이상 운영 시 겸직 제외 가능	○
	18~20인 이하	-	○		21인 이상	18~20인 이하	-
21인 이상	4인 이하	-	X	4인 이하		-	X
	5~17인 이하	5개반 이상 운영	○	5인 이상		-	○
	18인 이상	-	○				

## 2) 보육교사: 소요 현원(정원이내)에 대한 월 지급액의 일부를 지원

-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 0세반: 아동 3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1세반: 아동 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3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2세반: 아동 7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4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
  - 3세반: 아동 15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8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4세 이상반: 아동 20명을 기준으로 재원아동이 최소 11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시 군 구청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및 반을 매년 2~3월 중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여 반별 지원 기준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 충족)과 무관하게 1년간(3월~다음 해 2월) 지원하고 당해연도 3월말까지 지원 현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
  - ① 행정구역(읍 면 동) 내(전체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집이 1개만 있거나, 행정구역 내 어린이집이 2개 이상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너무 넓거나 어린이집 간 거리가 너무 멀어 보육 수요를 감안 할 때 어린이집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 소재 어린이집
    - \* (예)도서, 산간벽지, 지역이 분리된 경우(지역 사이에 강이 흐르는 등) 등 이동 상 어려움과 아동 안전 (재해 상황 고려), 가정과 어린이집 간의 등하원 거리 등을 고려
  - ② 전체 2개반(미충족반 포함) 이상 운영 어린이집
  - ③ 연령별로 1개반(혼합반 포함) 운영하는 경우(해당 연령반은 정원충족률과 관계없이 지원)

## 3) 조리원(조리사):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4)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대체교직원 채용시 기존 대상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
-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의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라 대체교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대체교직원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 지원

## 2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가. 정의(법 제10조)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
- 근로복지공단이 건립한 어린이집
-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 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 사회복지시설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노동부에서 설치, 지원한 근로청소년회관내 설치 어린이집 포함)
- 보육교사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 학교, 종교시설 등 부설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원한 어린이집('95~'97년, 보육사업 3개년 확충계획)
- '99년도 이전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해야 하며, 명칭 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산업단지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에 어린이집 설치시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기재
-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 시 대표자명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성명 또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기재
- 법인·단체등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호, 제2호, 제4호 중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만 해당)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인가증 발급시 대표자명에 법인대표의 성명 또는 '○○법인·단체 등 대표이사'로 기재

##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도록 함

# 3

## 직장어린이집

### 가. 목적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과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나. 내용

- (직장어린이집)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 (이행방법) 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보육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14조)
- (이행기준)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보육 시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
  - 위탁보육비용은 사업장 전체의 0~5세 영유아 중 30% 이상으로 규정
-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 공표방법 : 복지부 및 고용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 (과태료)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2.12.11. 시행)
  - 1차 위반시 5천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 부과
- (이행강제금) 지자체장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 부과
  - 미이행 시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직장어린이집 미설치기간 및 사유 고려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 가능('19.10.31.)

# 4

## 가정어린이집

### 가. 정의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동일 시·군·구내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다. 설치절차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 내지 2호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별표1의 11호 노유자시설에도 설치 가능)
-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법 제13조)

### 라. 배치기준

- 지역 보육수요와 어린이집의 공급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함

# 5

## 협동어린이집

### 가. 정의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

###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다. 설치절차

-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졸업 등을 제외하고 인가 후 6월 이내에 조합원의 1/3 이상이 변동될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는 부관 부가 가능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이사회 임원 등)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해당유무가 확인되어야 함(신규인가 및 조합원 구성 변경 시 적용)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의 출자 규정은 설치기준으로서 인가 후에도 유지되어야 함  
※보육 영유아별 보호자는 1인에 한정하며, 가구별 보육 영유아가 다수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인으로 산정

-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총회(또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5~10인 이내 이사회)를 운영해야 함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분기는 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으로 구분함(1분기(3-5월), 2분기(6-8월), 3분기(9-11월), 4분기(12-2월))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음  
※인가 시 정관(약정서)에서 정한 출자의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인가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함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 어린이집 대표자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원장이 전임하며, 주요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원장은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도 선임 가능
-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

# 6

## 어린이집 유형별 정부지원 현황(2023년)

구분 (*23년 국비 예산 기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직장	민간	가정	협동
부모보육료 (3조 1509억원, 기관보육료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0~5세 쉼 계층」 및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 (기본반) 0세반 514천원, 1세반 452천원, 2세반 375천원, 3~5세반 280천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부담)</li> <li>(연장반) 0세반 3천원, 영아반 2천원, 유아반 1천원, 장애아반 3천원</li> <li>- 장애아보육료 지원 : 월 559천원</li> <li>-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야간연장 시간당 4,000~5,000원, 휴일 일 보육료의 150%, 24시간 월 보육료 150% 지원)</li> </ul> </li> </ul>						
기관보육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은 기관 보육료 대신 인건비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0~2세 아동 및 만 12세 이하 장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지원단가 : 0세 599천원, 1세 326천원, 2세 221천원 장애아 653천원</li> </ul> </li> </ul>			
인건비 (10,189억원, 고용보험기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장 : 월 인건비의 80%</li> <li>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아반교사 : 월 80%</li> <li>- 유아반교사 : 월 30%</li> <li>- 방과후반교사 : 월 50%</li> <li>- 장애아통합교사 : 월 80%</li> <li>- 야간연장교사 : 월 80%</li> </ul> </li> <li>조리원, 치료사(장애아전문), 농어촌 교사 1인 : 월 100%</li> <li>특수교사(전문+통합), 치료사(장애아전문),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당 : 월 10~4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월 60만원 (중소기업은 월 138만원) * 고용보험기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b>영아 전담·장애아 전문</b>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li> <li>장애아통합교사 : 월 174.6만원</li> <li>야간연장교사 : 월 178.6만원</li> </ul>	
보조(연장)교사, 대체교사 지원 (4,65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교사, 연장교사 지원(4,092억원) 61,024명 (104.2만원/월)</li> <li>대체교사 지원(560억원) 3,923명 (234.2만원/월)</li> </ul>						
처우개선비 (2,46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2,170억원) 153,424명 (26만원/월)</li> <li>교사겸직원장 지원비(68억원) 14,786명 (7.5만원/월)</li> <li>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226억원) 33,660명(11만원/월)</li> </ul>						
교재교구비 (9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22.12월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li> <li>개소 당 평균 100만원/년 교재교구비 지원</li> </ul>						
차량 운영비 (9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소재 어린이집,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li> <li>실제 운영하는 차량당 연 240만원 (월 20만원)</li> </ul>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1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소재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월 200~280천원)</li> </ul>					
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시설확충 (609억원, 고용보험기금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축 (470백만원/개소)</li> <li>공동주택리모델링 (55백만원/개소)</li> <li>민간 가정 장기임차 (민간:105백만원/개소, 가정: 75백만원/개소)</li> <li>기자재(5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비 무상지원 - (대규모기업) 최대 3~6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4~20억원 * 고용보험기금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아전문신축(564백만원/개소)</li> </ul>					
	환경개선-기능보강 (35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 개축비(92백만원/개소)</li> <li>시설 개 보수비(30백만원/개소)</li> <li>장비비(2백만원/개소)</li> <li>장애아시설 개 보수(30백만원/개소)</li> <li>장애아 장비비(3백만원/개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설 개보수비 최대 1억원 * 고용보험기금 지원</li> </ul>			



PART

IV

특수어린이집  
유형

1. 영아전담 어린이집	089
2.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통합 어린이집	091
3. 야간연장 어린이집	101
4. 24시간 어린이집	106
5. 휴일 어린이집	110
6. 방과후 어린이집	111





## 1

## 영아전담 어린이집

## 가. 정의

- 영아전담어린이집: 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나. 운영기준

## 1) 보육아동 정원 책정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만 2세 미만반이 만 2세반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만 2세 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연령은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만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 2) 반편성 기준

-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시설 정원범위 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예시



100명 정원 시설에서 영아 현원이 50명일 경우 3세아반 교사대 아동 비율이 1:15이므로 유아 2개반 별도 편성 가능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영아반을 우선 편성해야 하며, 유아보육현원이 9명 미만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이 경우, 교사대 아동비율은 만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만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만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만 2세반-유아 혼합반은 1개만 구성 가능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2005. 12. 31. 당시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 불인정(기존 총정원 40% 범위까지 인정)

### 다. 예산 지원

-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시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신규지원 승인대상에서 제외
-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
지원조건	3.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등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 인건비 80% 지원 기준 동일 적용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 국공립·법인 등 시설과 동일하게 현원이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 만 0세반: 3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2명까지 지원 ● 만 1세반: 5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3명까지 지원 ● 만 2세반: 7명을 기준으로 아동현원 4명까지 지원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 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기타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국공립·법인 등 시설의 지원 기준 동일 적용	● 유아를 만 2세반과 혼합보육할 경우 영아가 50% (4명)이상일 경우에만 지원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시설(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대해 월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농어촌 시설인 경우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 라. 지정 취소

- 시·도지사는 국공립 등 어린이집 유형에 관계없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
  - 소재지 변경 및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 국가사업 수행 관련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전할 경우 소재지 변경 가능(민간사업자 재건축 등은 변경 불가, 정원 증원불가)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영아전담시설의 일반어린이집으로의 전환
  - 신청에 의해 일반어린이집으로 전환 가능. 단, 신축비 지원 시설은 개원 후 3년 이상 정상운영 이후에 전환 가능  
※인건비 지원 법인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은 보건복지부 사전승인 필요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없음

# 2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가. 정의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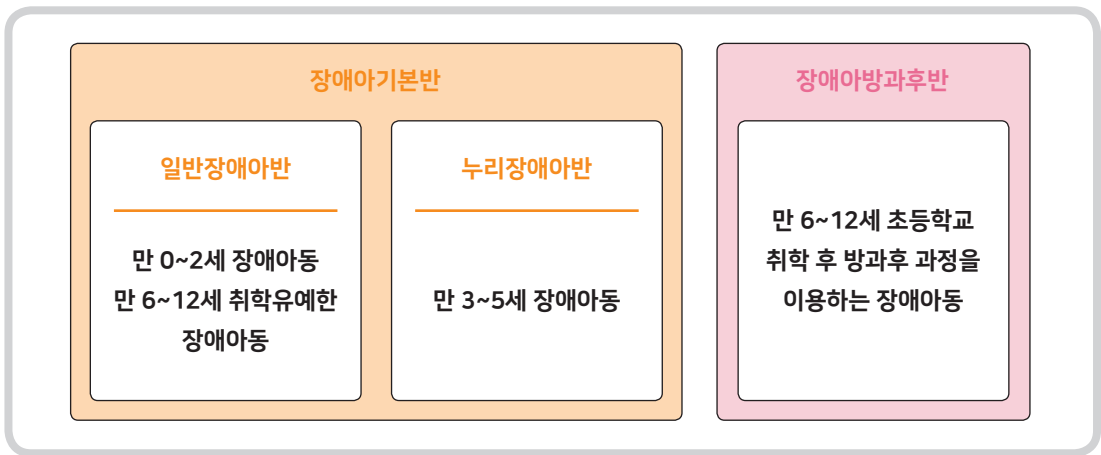
### 나. 총괄

-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비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참조
  - 지원대상: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 지원단가: 1,800,000원/㎡(국비, 지방비 포함)
  - 개소당 673㎡까지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1,346㎡까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2)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인건비 지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미승인한 시설: 기관보육료 653천원 지원
- 3)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 4) 장애아 보육료 및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참조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 이용 장애아동: 55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만2세반 이하는 정부지원단가, 만3세반 이상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의 '장애아동' 참조
  -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대아동비율(1:3)을 준수하는 시설 이용 장애 아동: 정부지원단가 (559천원)의 50%인 279천원 지원
  -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 10만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시 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5) 장애아반 구성

- 장애아기본반: 일반장애아반 + 누리장애아반
  - 일반장애아반: 만 0~2세 장애아동, 만 6~12세 취학유예 장애아동
  - 누리장애아반: 만 3~5세 장애아동



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원

1) 인건비 지원 대상 시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로서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건비 지원을 승인한 시설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12명 미만이라도 인건비 지원시설로 승인하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정일로부터 1년간 원장 및 인건비 지원조건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되, 1년 이후에도 장애아동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건비 미지원시설로 전환하여 인건비 미지원)

## 2)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 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 보육 현원이 9명 미만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내 수급상황(인근 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세반과 유아반 혼합 보육 가능 (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하고 누리과정을 적용해야 함)

### 예시



2세아 10명, 유아 4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4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해야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교사 3인 중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로 배치. 단,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 탄력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의 일부를 해당 반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3) 인건비 지원기준(인건비 지원시설)

- 원장,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치료사 인건비 지원

구분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지원조건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단,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9명 이상이고 장애아 기본반이 3개반 이상 편성되어야 함)	소요현원(정원이내)에 대하여 지원(아동 3명을 기준으로 현원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정규인력으로 채용된 경우에 한해, 아동 9명당 1명 지원 (교사대 아동비율 및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준수시)
지원액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80%	월 지급액의 100%
수당 (월·인)	-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직무교육과정을 '16.3.1' 까지 이수한 사람 포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 시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기준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 (신청 월 포함 3개월)	치료사 자격 수당 40만원
현원감소시 지원 기준	12명 및 9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달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아동 현원이 1명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3월 이후에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여 편성된 반이 아동 퇴소로 정원 충족률 50% 미만이 될 경우에도 다음해 2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현원이 5명으로 감소시까지는 지원할 수 있음
기타		보육교사는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과정을 이수한 자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 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지원조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장애아방과후 보육을 일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하며,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하여 지원
- (지원액)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반편성)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기본 연장보육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 (기타)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정원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50%를 초과하여 보육할 수 없음

- 기타 지원 사항

- 조리원(조리사)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월 2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 등의 지침 동일 적용

#### 4) 지정절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 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정부지원 사전승인을 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

#### 5) 지정취소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 ③ 착오 등으로 잘못 지정받은 경우
- ④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법 제22조에 따른 보육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⑦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⑧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그 밖에 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가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 ⑨ 어린이집의 원장이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 취소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 지정할 수 있음

6)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정원산정 기준 및 방법

- 면적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의 나목 1)을 따르며,
- 산정방법은 장애아를 12명 이상 정원에 포함하고, 총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해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가능

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지원

1) 지정대상

- 정원의 20% 이내에서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 기본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기본반 기준임)

2)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의 장애아 기본반

3)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및 지원액

- (지원기준) 장애아 기본반을 편성·운영하거나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통합보육하는 경우 장애아 전담교사 1인당 인건비를 지원
  -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된 반의 경우 아동 3명을 기준으로 미취학 장애아 현원이 2명 이상인 반의 교사 인건비 지원
  - 통합보육 미취학장애아 현원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액)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장애아전담교사 월 지급액의 80%를 지원하고, 민간지정 시설인 경우 장애아전담교사 1인당 월 1,746천원 지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으로서 장애통합시설에서 장애아방과후 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 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한 경우 월지급액의 100%를 지원
- 단, 이 경우에도 장애아 기본반 지원이 3개월간 연속으로 중단되면 지정취소

4) 보육교사 배치 기준

-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통합하여 보육하되 교사는 장애전담교사, 일반 보육교사 각각 1인씩 배치

예시

 장애아 3명+비장애아 20명을 장애전담교사 1명과 일반보육교사 1명이 통합 보육

-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는 만 3세 이상 장애아반에 우선 배치
- 장애아 통합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육교사가 장애아반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 시·군·구에서는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이수계획(보수교육 신청 자료) 등을 제출받은 후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기준**



(‘18년 3월부터 취학하지 아니한 만 3세 이상 장애영유아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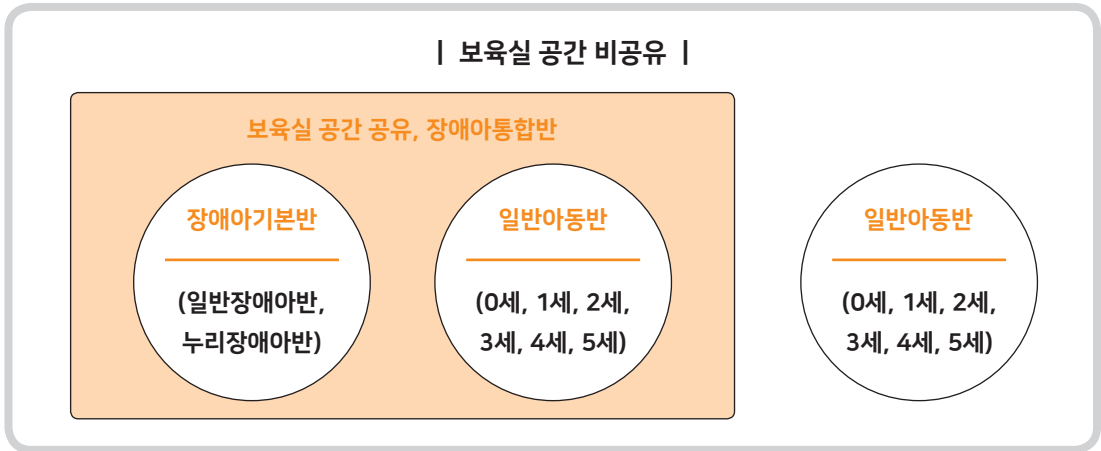
-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 예시**

- 만 3~5세 장애아 2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3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4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6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 만 3~5세 장애아 9명, 만 2세 장애아 9명: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 유치원과정 특수교사 1명, 장애아전담보육교사 2명, 특수교사 1명
  -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유치원과정의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장애아전담교사는 특수교사가 대체 가능
  - ※ 만 3~5세 장애아가 여러반으로 나누어져 편성된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나 유치원과정 특수교사는 만 3~5세 아동이 포함된 반에 배치

5) 반편성 기준(지정시설 공통적용)

-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반을 편성 운영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탄력편성 가능(단, 장애아연장반과 장애아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6) 기타 지원 사항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아반 담당 특수교사(유치원과정) 자격소지자 수당
  - 특수학교 정교사 2급이상(유치원 과정) 자격소지자 : 40만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시행당시('12.8.5)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사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과정을 '16.3.1까지 이수한 사람(보건 복지부 장관 인정 유치원 과정 특수교사) : 40만원
- 장애아 현원이 1명이상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기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수당
  - 장애아반 담임교사: 30만원
  - 장애아통합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5만원 \* '23.3.1.부터 시행
  - 일반반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10만원
  - 장애아연장반 전담을 위해 별도 채용된 교사: 15만원
    - ※ 해당 월에 임면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 기존 근무자가 해당 월에 신규자격 취득 시 취득일 익월부터 지급
    -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가능(신청 월 포함 3개월)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국공립 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 7) 지정절차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 및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함

## 8) 통합시설 지정기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 미취학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전담 교사를 채용한 시설
    -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과 장애아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는 6개월 이내에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사이버 교육 포함)을 이수해야 함
    - ※ 단, 초기 장애영유아 모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미취학장애아가 없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이 가능하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한 시설
    - ※ 2층 이상의 시설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실 및 장애아통합반을 1층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3.다. 1)의 설비(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갖추지 않더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가능
  -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 9) 지정취소

- 취소기준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취소기준과 동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지원시설이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시 군 구에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다른 시설을 장애아 통합시설로 대체 지정할 수 있음
  - 신규 지정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지정 후 1년 이내에 장애아통합반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기존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24개월 동안 장애아통합반을 3개월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시설별 장애아보육 지원기준 총괄



구분	지정 주체	인건비지원 (교사 1인)	보육료 지원 (장애아 1인)
<b>1. 장애아전문지정어린이집: 전담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b>			
-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	559천원
- 기관보육료 지원(보건복지부 장관 미승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 부모 보육료: 559천원 - 기관 보육료: 653천원
<b>2.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 통합교사 배치, 교사대아동비율 준수</b>			
- 인건비 지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80%(국공립·법인) 1,746천원(민간)	559천원

※ 장애아 기본 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 아동은 같이 반편성 불가

※ 장애아의 연령과 달리 반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 및 시·군·구담당자의 승인에 의해 조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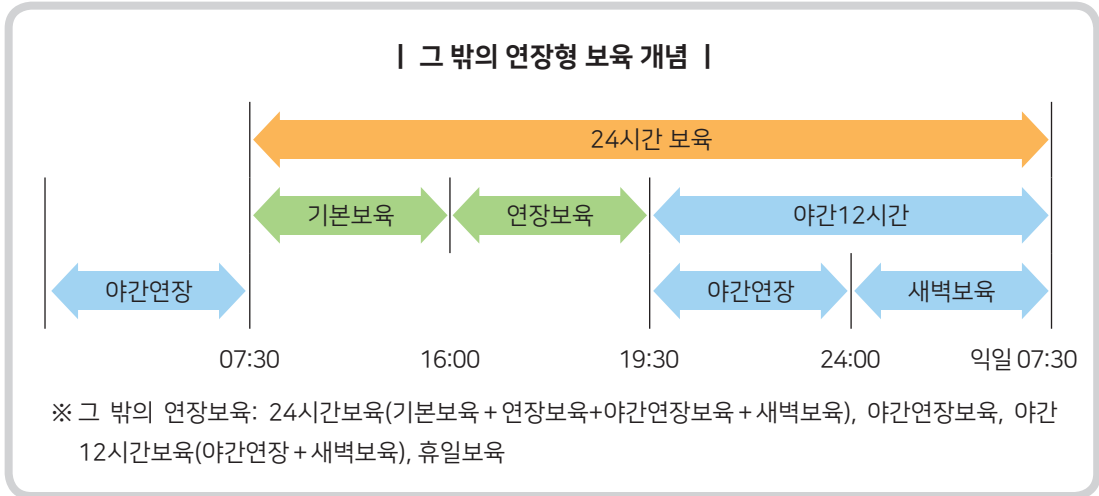
※ 또한, 장애아전문 또는 통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교사대아동비율 미준수, 전담교사가 미배치 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어린이집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함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이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 장애아수(미취학, 취학장애아 포함)는 통합보육 상한 (20%) 이내이어야 함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동일한 보육료를 지원

# 3

## 야간연장 어린이집



### 가. 정의

-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나. 원칙

- 해당 시설의 연장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단,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겸직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월급여형)는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은 불가능함. 또한 별도로 단시간 보육교사로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단시간형)의 경우에도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가능하며, 이 경우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도 가능
  -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야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
-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시설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 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야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공립시설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야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 시에도 야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다. 지원 대상**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라. 인건비 등 지원**

※ 기존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월급여 형태)를 지원받고 있는 야간연장반은 근무수당 지원으로 전환 불가하나 추가반 개설 시 근무수당 지원 가능

1) 월급여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5:00 이후 실근무한 시간으로 산정함

※ 주간 보육교사를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할 경우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

※ 위 금액은 인건비 지원 금액이며,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음.  
또한 야간연장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가능함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일 경우 지원(보육아동 귀가를 위한 통학차량 이동시간 제외)

-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 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미만일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
  - ※ 지원교사 수는 시·군·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 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 예시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야간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 당 보육아동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9:30~21:30(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가 원칙임
  -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 단 토요일은 사전 파악한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함

## 2)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 아래의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주간 보육교사(교사 겸직 원장 포함)가 초과근무 형태로 야간연장 보육한 경우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야간연장반 별 월 475,000원 지원
    -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의 경우, 동일 야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야간연장 보육 할 수 있음
    - ※ 단시간 야간연장반 보육교사의 보육교사 경력(자격·호봉)인정
- 시작시간(19시 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예외: 국공립 등 인건비지원 비영리법인 시설,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지원시설은 보육아동 1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 ※ 원장, 대표자가 자신의 자녀(또는 손자, 외손자)를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야간연장 보육을 하는 경우 인건비 산정을 위한 아동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야간연장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연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개반까지 지원 가능  
 ※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야간연장반을 우선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야간연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원

**예시**

 야간연장 보육아동이 6명(1세아 2명, 2세아 3명, 3세아 1명) 인 경우, 야간연장반 5명 편성 후, 다른 시간 연장반 편성 가능

- 야간연장 보육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매일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야간연장 미지정시설의 경우 시설당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장어린이집은 야간연장 미지정시설 이어도 수요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5명을 초과하여 보육 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야간연장 보육 이용 아동이 있는 날에는 19:30~21:30 (토요일은 15:30~17:30) 동안은 반드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 새벽 05:30~07:30 포함 시에도 동일

**마. 지원조건**

-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원 4대 보험 가입
  -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선 준수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바. 경력(자격·호봉) 인정**

-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채용된 야간연장 보육교사는 정식으로 당해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만 경력(자격 호봉)을 인정

**사. 정원관리 및 운영기준**

-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주로 야간에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주간보육아동 정원을 채웠을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새로 책정할 수 있음

**예시**

 정원 50명 시설에서 주간아동 50명중 40명이 가고 나면, 야간에는 추가로 40명을 더 보육할 수 있음 (연장아동 10명+야간만 이용아동 40명)

- 주간(19:30이전)에 이미 최소 4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에는 시설 정원(주간보육정원)에 포함되므로, 주간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이어서 19:30이후까지 보육할 경우 19:30부터는 야간연장 보육 정원으로 간주
  - ※ 시설 내 여윌공간과 야간연장 보육교사가 있을 경우 이용자 부모의 사정(야간근로 등)에 따라 야간 연장보육 기준시간(19:30) 이전에도 보육은 가능하나 야간연장 보육료 기산은 19:30부터 시작

### 아. 지정절차

-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IX-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해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정
  -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야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 자. 지정취소 및 재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야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세부기준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 하는 것은 지양

-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이가 변경되는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시설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4

## 24시간 어린이집

### 가. 정의

- 24시간동안(07:30~익일 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 '10.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야간12시간보육: 야간시간대(19:30~익일 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24시간 보육: 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 나. 원칙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가 야간12시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수요를 판단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반드시 협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와 협의하여 지정물량을 배정
-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12시간 보육 및 24시간 보육서비스 아동 입소 관리 등을 통해 아동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24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아동 등록은 반드시 시·군·구에서 확인후 등록 승인하고, 주기적인 관리 실시
-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지원

### 다.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해야 함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

## 라. 지원대상 및 조건

### 1)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의 야간연장 보육교사(19:30~24:00)와 새벽근무 보육교사(24:00~익일 07:30) 인건비를 각각 지원
  -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12시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 2) 지원조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 인건비는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새벽근무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월 지급액의 80% 지원
  - 직장어린이집: 월 지급액의 80% 지원(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체계에 따라 호봉을 책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외 시설은 민간시설에 준해 지원)
  - 기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① 야간연장 보육교사

(단위: 원/월)

근무 시간	6~6.5	7~7.5	8
지원 단가	1,730,000	2,018,000	2,306,000

② 새벽근무 보육교사 : 1인당 2,018,000원(월) 지원

-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보육할 경우 인건비 지원
  - 보육 아동이 1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하여 지원
-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함. 단,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기본반 연장반 편성시는 연령에 따라 반편성)
- 새벽근무 보육교사는 원장과 협의하에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와 교대 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 교대근무 형태는 원장과 보육교사가 협의 하에 결정(당일교대 또는 연속근무 후 휴무실시 등)
- 24시간 보육아동의 경우 보육료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비용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 24시간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 수납할 수 없음
  - 보육료 지원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단가의 150%까지는 지원받고, 그 이상은 부모로부터 추가 수납가능
  - 보육료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부모가 내는 보육료(시·도지사 고시 상한액)를 기준으로 100%까지 추가수납 가능
- 지원조건, 경력인정, 정원책정 등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에 준함

**마.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대상 아동**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영유아로 야간12시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영유아에 대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미취학 영유아)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별로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

**바. 24시간 어린이집 원장의 의무**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 입소 시 보호자의 의무사항(주3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아동 접촉, 주 1회 이상 귀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장기간 아동 방치 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의뢰 등),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여건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보호자로부터 <서식 IX-5-3>의 이용신청서를 제출받아 비치하고, 시·군·구 승인 하에 24시간 보육가능
- 어린이집 원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가정에서와 같은 환경(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균형적인 급간식 제공 및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기본생활습관 형성, 가족과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
- 어린이집 원장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

**사.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조치**

- 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1월 이상)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였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아동의 계속 보육여부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의 필요성 등을 판단하도록 조치
- 시·군·구청장은 24시간 보육아동의 관리를 위해 아동복지 담당부서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장기간 방치된 아동의 계속 보육 또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지역의 아동위원 또는 아동복지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분과 위원회 등 유사위원회 활용 가능)를 둘 수 있음

**아.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

- 시·도지사는 지역 내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시설의 보육환경(수면실 등)과 급간식 제공여건 및 야간12시간 보육 프로그램 등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한 후 야간12시간 및 24시간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지정
  - 국공립·법인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수면실 등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비용(증개축 또는 개보수)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정취소 세부기준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행정처분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24시간 어린이집의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하는 것은 지양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자체예산으로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 야간12시간 근무교사의 조·석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5

## 휴일 어린이집

### 가. 정의

-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

### 나. 정원 책정

-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 다. 인건비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국공립 법인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 및 직장 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보육교사 1인당 2명 이상 영유아를 5시간 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 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6,000원 지원
  - ※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가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음
- 휴일 보육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휴일보육 미지정 시설의 경우 시설 당 휴일반 2개 반을 초과할 수 없음

### 라. 지정절차

-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IX-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IX-4>의 지정서를 교부

# 6

## 방과후 어린이집

### 가. 정의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 이상(~19:30분까지)

### 나. 인건비 지원기준

- 지원대상: 2004년도 3월 1일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 법인·단체등어린이집(신규지원 없음)
-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16명 내지 20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 보육교사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방과후 보수교육 과정 이수)
    -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음
-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 범위 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 단,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출산휴가·육아휴직·산재휴직 등에 따른 대체교직원 채용시 인건비 지원은 국공립·법인 등의 지침과 동일 적용

### 다.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 지정취소 세부기준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기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라.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 영유아 최소 인원(5명) 이상을 대상으로 기본·연장보육을 지속해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 교사를 채용해야 함
    - ※ 단, 방과후 이용 아동 5명 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 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 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 하에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



PART

V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1.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117
2.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비교	119
2-1. 공립유치원 재무회계	119
2-2.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121
2-3. 어린이집 재무회계	128
3. 출생아수·합계출산율, 영유아수	134
4.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수	135
5.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수	136
6. 교원/교직원 수 현황	137



# PART V

##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교



### 1

### 유치원·어린이집 비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거버넌스	근거법령	● 유아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대상	● 유아 -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 영유아 -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법적성격	● 학교	● 사회복지시설																		
	관리 체계	관리 부처	●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																	
지원 조직		● 유아교육진흥원( 시도 17개 )	● 한국보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 1개, 시·도 18개, 시·군·구 112개) ('23.8.31. 기준)																		
기관	구분	● 국립/공립/사립유치원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어린이집																		
	기관 수	● 8,441원('23.4.1., 교육통계) - 국공립 5,133(60.8%) - 사립 3,308(39.2%)	● 30,923개('22.12.31., 보육통계) - 국공립 5,801(18.8%), 사회복지법인 1,254, 법인·단체 610, 민간 9,726(31.5%), 가정 12,109(39.2%), 협동 132, 직장 1,291개소																		
이용	이용 인원	● 521,794명('23.4.1., 교육통계) - 국공립 152,661명(29.3%) - 사립 369,133명(70.7%)	● 1,090,770명('22.12.31., 보육통계) - (0~2세) 651,700명, (3~5세) 439,070명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구분</th> <th>국·공립</th> <th>민간</th> <th>가정</th> </tr> </thead> <tbody> <tr> <td>0~2세</td> <td>148,853 (22.8%)</td> <td>250,514 (38.4%)</td> <td>182,972 (28.1%)</td> </tr> <tr> <td>3~5세</td> <td>126,791 (28.9%)</td> <td>226,027 (51.5%)</td> <td>1,061 (0.2%)</td> </tr> </tbody> </table>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0~2세	148,853 (22.8%)	250,514 (38.4%)	182,972 (28.1%)	3~5세	126,791 (28.9%)	226,027 (51.5%)	1,061 (0.2%)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0~2세	148,853 (22.8%)	250,514 (38.4%)	182,972 (28.1%)																	
3~5세	126,791 (28.9%)	226,027 (51.5%)	1,061 (0.2%)																		
교육·운영일수	● 교육과정 : 연간수업일수 180일 이상 ● 방과후 과정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교육·운영시간	● 교육과정 : 1일 4~5시간 ● 방과후 과정 : 교육과정포함 1일 8시간 이상 - 아침·저녁·온종일돌봄 가능	● 1일 12시간(07:30~19:30) - 기본보육 1일 7시간 - 시간연장 가능																			
교육·보육과정		● 3~5세 누리과정	● 0~2세 표준보육과정, 3~5세 누리과정																		
학급 편성 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시도교육감이 결정('유아교육법 시행령')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3세</th> <th>4세</th> <th>5세</th> </tr> </thead> <tbody> <tr> <td>15명 내외</td> <td>22명 내외</td> <td>24명 내외</td> </tr> </tbody> </table>	3세	4세	5세	15명 내외	22명 내외	24명 내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0세</th> <th>1세</th> <th>2세</th> <th>3세</th> <th>4세</th> <th>장애아</th> </tr> </thead> <tbody> <tr> <td>3명</td> <td>5명</td> <td>7명</td> <td>15명</td> <td>20명</td> <td>3명</td> </tr> </tbody> </table>	0세	1세	2세	3세	4세	장애아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3세	4세	5세																			
15명 내외	22명 내외	24명 내외																			
0세	1세	2세	3세	4세	장애아																
3명	5명	7명	15명	20명	3명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직위	●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교사 자격	● 유치원 교사 1급/2급(교원자격검정령) - 1급 18,251명, 2급 28,632명('22)	● 보육교사 1급/2급/3급(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1급 162,680명, 2급 65,939명, 3급 2,629명('22)
	교(직)원 수	● <b>55,637명</b> (23.4.1. 기준, 「교육통계」) - (국공립) 23,975, (사립) 31,662 ※ 원장, 원감, 1·2급정교사, 보건 영양교사 등 ● <b>55,124명</b> (23.4.1. 기준, 「교육통계」) ↳ 보건·영양교사 제외시 (국공립) 23,569 (사립) 31,555	● <b>311,996명</b> (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 (국공립) 73,511, (민간) 116,442, (가정) 76,144 등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b>263,587명</b> (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제외시 (국공립) 62,900 (민간) 98,017 (가정) 65,964 등
	양성기관	● 유치원 교사 2급 : <b>학과제</b> -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등 ※ 방송통신대 포함	● 보육교사 2급 : <b>학점 이수제</b> - 2~4년제 대학 아동·보육학과, 기타학과 ※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 보육교사 3급 : <b>특수양성기관</b> - 보육교사교육원
	이수과목	● <b>72학점 이상</b>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2급) <b>17과목 51학점 이상</b> - 교직과목 미포함 ● (3급) 22과목 65학점 이상
자격검정 기관	● 학력만 필요한 검정 : 교원양성대학의 장 ● 교육경력 포함 검정 : 교육감	● 한국보육진흥원장	
교사 처우	처우 개선비 ('23년 기준)	● 사립유치원 교사 - 담임: 77만원/비담임: 64만원	● 0~2세 보육교사 : 26만원(담임) ● 3~5세 보육교사 : 36만원(담임)
	연금	● 국공립: 공무원 연금 ● 사립: 사학연금	● 국민연금
설립 및 시설 설치 기준	인가	● 시·도 교육감(국립은 장관)	● 시장·군수·구청장
	시설임대	● 불허 (사립 교지와 교사는 소유주체와 설립주체 일치)	● 제한 없음
	시설처분	● 매매 불가 및 매도·담보제공 금지	● 제한 없음 (단,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양도불가, 가정/ 민간은 토지 건물 소유권 전세권 부채비율 100 분의 50미만 허용)
재정 지원	재원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항목	● 유아학비 ('23년 28만원) ● 방과후과정비 ('23년 7만원)	● 보육료 ('23년 28만원) ● 교사 처우개선비, 기관 운영비 일부 등
학부모 부담	교육비/ 보육료기준	● 원장 자율 결정 ● 원비 인상 상한률 적용 ● 월 <b>16.8만원</b> (교육비 13.5만원,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포함)(사립, '22년)	●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 수납(상한제) ● 월 <b>5.6만원 부담</b> (21년 보육실태조사) * 입학금·특별활동비 등 포함

# 2

## 유치원·어린이집 재무회계 비교

### 가. 기관별 회계운영 근거

- 1) 공립유치원(단설·병설유치원) : 「유아교육법」, 「공립학교 회계규칙」
- 2) 사립유치원 :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 3) 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2-1

## 공립유치원 재무회계

### 가. 공립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		
구분	일정	주요내용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시달 (교육감)	2022.11.30.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에 시달</li> <li>● 경기교육방향 및 단위학교 재정운용 기본방향</li> <li>●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학교회계운용 일반사항</li> <li>● 예산과목 및 과목내용 등 학교예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내용 포함</li> </ul>
예산요구서 제출 및 예산안의 편성 (학교장)	2022.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는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교 교육시해 및 학교예산편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li> <li>● 학교구성원으로부터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소요경비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제출받아 예산안 편성</li> <li>●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조정(1차 사정)</li> </ul>
전의금 교부계획 통지 (관할청)	2023.1.9.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청에서 하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의 총규모 및 분기별 자금교부계획 통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li> </ul>
예산조정작업 및 예산안 확정 (학교장)	2023.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총세입 규모를 확정</li> <li>● 교직원회의 또는 부장회의에서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안 확정(2차 사정)</li> </ul>
예산안 제출 (학교운영위원회)	2023.1.29.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li> <li>●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개치 7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별 동지 ※ 예산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경우 운영</li> </ul>
예산안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2023.2.23.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의 교육시책방향 및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 제안 설명</li> <li>●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 의견 청취</li> <li>● 심의 후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통보</li> </ul>
예산확정(학교장)	2023.2.28.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 심의 통보 후 확정</li> </ul>
예산공개(학교장)	확정 후 1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예산서 공개</li> </ul>

나. 공립유치원 결산 처리 절차

| 결산 및 심의과정 |

구분	일정	주요내용
결산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 결산서의 작성, 예산의 이·전용, 예비비 사용 등 확인</li> </ul>
회계연도 종료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년 2월 말일 기준</li> <li>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 종료</li> </ul>
출납폐쇄 정리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4조</li> <li>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2월말 기준)</li> </ul>
결산서 작성	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li> <li>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 내역, 계속비 내역, 예비비사용 내역 첨부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0조 제1항</li> </ul>
결산서 제출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 30조의3 제5항</li> <li>결산서 제출 시 첨부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 사용명세서</li> <li>- 계속비조서</li> <li>- 예금잔액증명서</li> <li>- 기타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li> </ul> </li> <li>세출예산 이·전용명세서</li> <li>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명세서, 계속비이월명세서</li> <li>시설적립금 현황</li> </ul>
결산 심의	5.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운영위원들에게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결산서 개별 통지(~5.22.)</li> <li>학교의 장이 결산 내용 설명</li> <li>의문사항에 대하여 관련 교직원 의견 청취</li> <li>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li> </ul>
결산공개	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의 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결산서 공개</li> </ul>

## 2-2

###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 가. 사인이 운영하는 유치원(법인이 아닌 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

구분	일정	주요내용
예산편성 사전 준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규모 예상 및 필수경비·가용재원 파악 등 세총규모 사전 검토 (유아학비, 수의자부담경비, 차입금, 이월금 등)</li> </ul>
예산편성 요령 통보 (사립유치원 경영자)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1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유치원 경영자 → 유치원장</li> <li>시·도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유치원 예산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li> <li>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학교의 예산편성 요령을 정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li> </ul>
예산편성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직원 예산요구 → 자체 심의·조정 → 예산안 편성</li> </ul>
예산안 제출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1월 전 (1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비회계 예산 편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li> <li>원장은 회계 개시 30일 전까지 유치원운영위원회 제출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서류: 7일 전 위원에게 송부</li> </ul>
운영위원회 자문 및 예산 확정 (운영위원회,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유치원 경영자 - 유치원장(2월 18일) ※ 2월 29일까지 있는 경우는 2월 19일까지 확정 통보</li> <li>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집행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li> </ul>
관할청 보고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li> </ul>
예산공개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 정보공시 4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li> </ul>

나. 법인 유치원 예산 편성 절차

구분	일정	주요내용
예산편성요령제정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 (1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전에 그 법인과 학교의 예산 편성 요령을 정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2조)</li> </ul>
예산안 제출 (유치원장)	회계연도 개시 1월전 (1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비회계의 예산은 유치원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당해 학교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2항)</li> </ul>
이사회 의결 및 예산 확정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인회계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함</li> <li>교비회계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비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성하되 <b>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b> 이사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하고 유치원의 장이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li> <li>- 이사장은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얻어 유치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제1항, 제3항)</li> </ul> </li> </ul>
관할청 보고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법인은 그 이사장이 당해 법인과 그가 설치·경영하는 유치원의 각 예·결산을 함께 해당 관할청(수 개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각급학교의 각 해당 관할청을 포함)에 각각 제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4조)</li> <li>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에 관할청에 보고·공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li> </ul>
예산공개 (이사장)	회계연도 개시 5일전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법인은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 명세서 포함, 결산서는 감사보고서 포함)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유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 정보공시 4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li> </ul>

## 다. 사립유치원 결산 처리 절차

구분	일정	주요내용
회계연도 종료	다음연도 2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종료 (「유아교육법」 제19조의8) ※ 매년 2월 말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징수행위 및 지출 원인행위 종료 ※ 2월 말일 (회계연도 종료)</li> </ul>
회계출납 폐쇄	회계연도 종료후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과 학교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9조) ※ 당해 회계연도(2월 말일)에 징수행위 및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항의 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3월 20일(출납 폐쇄)</li> </ul>
결산서 작성· 제출 (유치원장)	회계연도 종료후 4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2월 말일)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당해 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제출 (「사립학교법」 제3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 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상 이사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사항에는 해당이 없으나, 「유아교육법」 제19 조의4에 의해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사항임</li> </ul>
결산안 확정	회계연도 종료후 55일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55일까지 결산을 심의 확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li> </ul>
결산공개 (유치원장, 이사장)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법인(유치원)은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의 결산서(「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 및 감사보고서 포함)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관할 교육청에 보고</li> <li>●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X: 정보공시 10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li> </ul>

라. 사립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과목 구분

| 세입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별표5) |

관	항	목	주요내용	
1.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1.공통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 수입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이하 "방과후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처리	
		1.	공통과정 지원금	
		2.	방과후 과정 지원금	
		3.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2.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수입	● 방과후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 교원 급여 등 인건비(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는 제외한다)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4.	자본 보조금 수입	● 교사(敎舍)등 시설·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 급식비·간식비(방과후과정 관련 급식비·간식비는 제외한다)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1.	국가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교육정보조금		
2.	1.	수익자 부담 수입	●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1. 교육비 수입		
		1.	입학금	
		2.	교육과정 수업료	●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납부받은 금액(학부모 등이 공통과정 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2.	방과후 과정비 수입	
		1.	방과후 교육·돌봄비	●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납부받은 수익자부담금
		2.	방과후 특성화비	●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3.	급식비·간식비 수입	
		1.	일반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 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특별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과정 또는 아침 저녁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 밖의 수익자 부담 수입	
		1.	현장체험 학습비	●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2.	통학차량 이용비	● 통학차량 이용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3.	졸업앨범비	● 졸업앨범 제작 구입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4.	그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	●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관	항	목	주요내용
3. 설치·경영자 및 민간 이전수입			
	1.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li> </ul>
	1.	법인 법정부담금	●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 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
	2.	법인 이전수입	● 법인이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3.	그밖의 설치·경영자 이전수입	
	2. 민간 이전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후원금으로 처리</li> </ul>
	1.	민간 이전수입	
4. 차입금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 회계로 이전된 금액</li> </ul>
	1. 차입금 수입		
	1.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2.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5. 적립금 이전수입			●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1. 적립금 이전수입		
	1.	건축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교실의 개축·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2.	그밖의 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하는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6. 행정활동 수입			
	1.	지난연도 수납수입	●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 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 납부된 수입
	2.	이자수입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3.	그밖의 행정활동 수입	●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교생실습비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7. 기부·후원금 수입			●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1. 기부·후원금 수입		
	1.	기부·후원금 수입	
8.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1.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금액
	2.	정산대상 자원 잔액	●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3.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 대상 자원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마. 사립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

| 세출과목 구조 및 과목해소(「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별표6) |

관	항	목	주요내용
1. 인건비			●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
1. 교원인건비			● 정규직 교원인건비
	1.	급여	●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고직순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여가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복리증진비
	3.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 직원인건비			● 정규직 직원인건비
	1.	급여	● 기본급 및 성과상여금
	2.	수당	● 정근수당,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비 등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및 복리증진비
	3.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
	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3. 그밖의 인건비			● 무기계약직 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조 대체교사 보수 및 일용직 급여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인건비
	1.	그밖의 인건비	
2. 운영비			
1. 관리운영비			
	1.	수용비	● 소모품 구입비, 인쇄비, 교육용도서 외 일반도서 구입비, 차량 정비 : 유지비 (동학차량 정비 유지비는 제외한다), 청소용역비, 임차료, 대관료 및 비품대여료 등 유치원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경비
	2.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 전기 전화요금, 상하수도료,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공제회비,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교직원 건강검진비 등 각종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성격의 경비
	3.	연료비	●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료 및 차량 유류비(통학차량 유류비는 제외한다) 등 건물 난방 및 차량유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연료비
	4.	여비	● 출장에 따른 소요 여비
	5.	그밖의 관리운영비	●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2. 업무추진비			
	1.	일반업무추진비	● 유치원 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사업추진 업무추진비
	2.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경비
3. 일반교육활동비			● 유치원 일반 교육추진 소요 경비
1. 일단교육활동비			
	1.	교사연수·연구비	● 교직원 연수비 및 연구비
	2.	교재·교구구입비	● 교육 기자재, 교육용도서 등 구입 및 제작 소요 경비
	3.	행사비	● 원아 교육과 직접 관련된 각종 행사 소요 경비
	4.	장학금	● 원아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5.	복리비	● 원아건강검진비 등 원아 건강 및 안전 관련 소요 경비
	6.	일반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시간 내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을 위한 소요 경비
4. 선택적교육활동비			
	1.	방과후 교육 활동비	
	1.	방과후 교육·돌봄비	● 방과후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방과후특성화비	● 방과후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한 소요 경비

관	항	목	주요내용
		2. 그 밖의 교육활동비	
		1. 현장체험학습비	●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학습활동을 위한 소요 경비
		2. 통학차량이용비	● 통학차량 정비·유지비 및 유류비 등 통학차량 이용을 위한 소요 경비
		3. 특별급식비·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 과정 또는 아침·저녁 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간식 제공을 위한 소요 경비
		4. 졸업앨범비	● 졸업앨범 제작 구입 소요 경비
		5. 그밖의 수익자부담재원교육활동비	● 위에서 나열된 것 외에 수익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활동 소요 경비
		5. 적립금	
		1. 적립금	
		1. 건축적립금	●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교실의 개축 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
		2. 그밖의 적립금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하는 적립금
		6.상환금	●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1. 단기차입상환금	
		1. 원금상환금	●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이자상환금	
		2. 장기차입상환금	
		1. 원금상환금	● 단기차입상환금 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이자상환금	
		7. 시설·설비·비품비	
		1. 시설비	
		1. 시설비	● 유치원 시설 증축·개축, 수선 및 개수·보수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
		2. 설비·비품비	
		1. 취득비	● 설비 설치비, 비품 구입비, 차량 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등 설비나 비품 취득 소요 경비
		2. 유지비	● 설비, 장비 및 비품의 정비·유지 비용(차량 및 통학차량의 정비: 유지비는 제외한다)
		8. 지난연도 지출금	● 해당 회계연도 이전에 지출되었어야 하나 지출되지 않았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된 사업비 등
		1. 지난연도 지출금	
		1. 지난연도 지출금	
		9. 잡지출	● 원 단위 절사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성격의 지출
		1. 잡지출	
		1. 잡지출	
		10. 예비비 및 반환금	
		1. 예비비	● 재해 재난 관련 비용 등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1. 예비비	
		2. 반환금	
		1. 보조금반환금	● 보조금 미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2. 지원금반환금	● 지원금 미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3. 수익자반환금	● 수익자부담금 미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반환금

## 2-3

### 어린이집 재무회계

#### 가. 총 칙

- 회계연도
  -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회계연도(2023.3.1.~2024.2.28.)에 의함
- 출납기한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나. 예산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절차



### ● 준예산

- 사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어린이집의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
- 방법
  - 예산 성립 시까지 일부 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 가능
- 준예산 편성 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어린이집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 경비, 법령상 지급의무 경비

### ● 추가경정 예산

- 사유
  -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 방법
  - 예산편성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하여 7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 예비비

-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예비비는 본 세출예산의 2% 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에 지출은 불가

### ● 예산의 전용

-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관·항간 전용: (법인이사회 의결 또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전용가능
  - 동일항내 목간 전용: 어린이집 원장(법인대표이사)이 전용가능
    - ※ 예산전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정함
- 전용의 제한
  - 지자체에서 별도기준으로 전용을 제한한 경우(업무추진비 등)
  -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된 관·항·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 세출예산의 이월

- 사유
  -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 다. 결산



### 라. 회계

- 회계 총칙
  - 수입 및 지출사무 관리주체: 어린이집 원장(소속직원에 위임가능)
  -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 별도의 수입담당과 지출담당을 두는 것이 원칙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회계규모나 보육교직원 수 등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 원장이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되 필요할 경우 보육교직원에게 회계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음
  - 회계의 방법: 단식부기
- 수입
  - 수입금의 수납 관리
    -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함
  - 과년도 수입, 반납금, 과오납금 처리
    -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과 기타 예산외 수입은 모두 현년도 세입에 편입
    -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여입 가능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
- 지출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어린이집 원장) 및 그 위임을 받아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함
    - 지출은 계좌입금, 어린이집 전용 체크(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카드결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전용카드나 보조금 전용계좌를 이용하고,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원은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음
      - ※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범위는 시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재무회계규칙 제29조), 이 경우 현금영수증과 기타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요

다.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 예산 과목 구분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구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제3항제2호(별표7) |

		과 목			내역
관	항	목			
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보육료	만 0~5세아, 장애아, 다문화 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보육료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 운행비, 아침 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보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	운영보조금	321 기관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에 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밖의 지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 간식비 및 냉난방비, 누리고정운영비 등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신증축비, 개 보수비, 장비비 등
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 경영자로부터의 운영 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회계연도 내 상황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 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시설 개 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결연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처분수입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밖의 잡수입	차량 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 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바.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 과목 구분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 구분(「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제2호(별표8) |

		과목			내역			
관	항	목	내역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급여	121	보육교직원 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 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 일용직 급여
		140	기관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 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 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 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용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300	보육 활동비	310
312	교재 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 복리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 간식 재료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 저녁 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 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 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 대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 3

##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영유아 수 추이(2012~2022)

### 가.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단위: 만 명, %, 인구 1천 명당 명, 가입 여자 1명당 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생아 수*		48.5	43.7	43.5	43.8	40.6	35.8	32.7	30.3	27.2	26.1	<b>24.9</b>
전년	증 감	13.3	-48.1	-1.0	3.0	-32.2	-48.5	-30.9	-24.1	-30.3	-11.8	<b>-11.5</b>
대비	증 감 률	2.8	-9.9	-0.2	0.7	-7.3	-11.9	-8.7	-7.4	-10.0	-4.3	<b>-4.4</b>
조출생률 (인구 1천명당출생아수)		9.6	8.6	8.6	8.6	7.9	7.0	6.4	5.9	5.3	5.1	<b>4.9</b>
합계출산율		1.3	1.19	1.21	1.24	1.17	1.05	0.98	0.92	0.84	0.81	<b>0.78</b>
전년 대비	증 감	0.05	-0.11	0.02	0.03	-0.07	-0.12	-0.08	-0.06	-0.08	-0.03	<b>-0.03</b>
	증 감 률	4.3	-8.5	1.5	2.8	-5.4	-10.2	-7.1	-6.0	-8.9	-3.4	<b>-3.7</b>

※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통계청, '23.2월)

\* 출생아수는 출생신고 **의무기간내**(출생후 1개월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지역신고** 및 신고누락된 영아사망자 등을 **포함한 출생아수**로, 주민등록인구(신고된 출생아수)와 차이 있음

### 나. 영유아 수

연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	증감률
2012	464,374	472,275	470,956	446,256	467,432	494,810	2,816,103	
2013	421,465	486,655	474,098	472,047	447,055	467,935	2,769,255	-1.7%
2014	419,833	438,778	488,030	474,932	472,731	447,531	2,741,835	-1.0%
2015	424,563	437,994	439,989	488,716	475,519	473,120	2,739,901	-0.1%
2016	393,674	441,720	439,207	440,530	489,140	475,817	2,680,088	-2.2%
2017	345,786	409,814	442,943	439,700	440,872	489,401	2,568,516	-4.2%
2018	317,685	361,625	411,225	443,586	440,123	441,105	2,415,349	-6.0%
2019	295,132	330,970	362,900	412,018	444,102	440,483	2,285,605	-5.4%
2020	265,087	304,651	331,606	363,250	412,429	444,367	2,121,390	-7.2%
2021	253,946	274,633	306,120	332,157	363,613	412,739	1,943,208	-8.4%
2022	244,250	264,788	277,529	307,975	333,048	364,198	1,791,788	-7.8%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2012-2022)

# 4

##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수 추이(2012~2022)

### 가. 유형별 유치원 원아 수

연도	국공립		사립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증감율
2012	127,347	20.7	486,402	79.3	613,749	-
2013	142,052	21.6	516,136	78.4	658,188	7.2%
2014	148,269	22.7	504,277	77.3	652,546	-0.9%
2015	161,339	23.6	521,214	76.4	682,553	4.6%
2016	170,349	24.2	533,789	75.8	704,138	3.2%
2017	172,521	24.8	522,110	75.2	694,631	-1.4%
2018	172,370	25.5	503,628	74.5	675,998	-2.7%
2019	177,330	28.0	456,583	72.0	633,913	-6.2%
2020	178,901	29.2	433,637	70.8	612,538	-3.4%
2021	177,361	30.4	405,211	69.6	582,572	-4.9%
2022	167,485	30.3	385,327	69.7	552,812	-5.1%

### 나. 유형별 어린이집 원아 수

연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증감율
2012	149,677 (10.1)	113,049 (7.6)	51,914 (3.5)	768,256 (51.7)	371,671 (25.0)	2,913 (0.2)	29,881 (2.0)	1,487,361 (100.0)	-
2013	154,465 (10.4)	108,834 (7.3)	51,684 (3.5)	770,179 (51.8)	364,113 (24.5)	3,226 (0.2)	34,479 (2.3)	1,486,980 (100.0)	0.0%
2014	159,241 (10.6)	104,552 (7.0)	49,175 (3.3)	775,414 (51.8)	365,250 (24.4)	3,774 (0.3)	39,265 (2.6)	1,496,671 (100.0)	0.7%
2015	165,743 (11.4)	99,715 (6.9)	46,858 (3.2)	747,598 (51.5)	344,007 (23.7)	4,127 (0.3)	44,765 (3.1)	1,452,813 (100.0)	-2.9%
2016	175,929 (12.1)	99,113 (6.8)	45,374 (3.1)	745,663 (51.4)	328,594 (22.6)	4,240 (0.3)	52,302 (3.6)	1,451,215 (100.0)	-0.1%
2017	186,916 (12.9)	96,794 (6.7)	43,404 (3.0)	738,559 (50.9)	321,608 (22.2)	4,508 (0.3)	58,454 (4.0)	1,450,243 (100.0)	-0.1%
2018	200,783 (14.2)	92,787 (6.6)	41,298 (2.9)	711,209 (50.2)	302,674 (21.4)	4,360 (0.3)	62,631 (4.4)	1,415,742 (100.0)	-2.4%
2019	232,123 (17.0)	86,775 (6.4)	38,538 (2.8)	664,106 (48.6)	273,399 (20.0)	4,121 (0.3)	66,023 (4.8)	1,365,085 (100.0)	-3.6%
2020	253,251 (20.4)	78,322 (6.3)	34,066 (2.7)	578,196 (46.5)	230,444 (18.5)	3,716 (0.3)	66,401 (5.3)	1,244,396 (100.0)	-8.8%
2021	268,967 (22.7)	72,085 (6.1)	30,998 (2.6)	535,428 (45.2)	208,842 (17.6)	3,465 (0.3)	64,931 (5.5)	1,184,716 (100.0)	-4.8%
2022	275,644 (25.3)	62,714 (5.7)	27,103 (2.5)	476,541 (43.7)	184,033 (16.9)	3,200 (0.3)	61,535 (5.6)	1,091,400 (100.0)	-7.9%

# 5

##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수 추이(2012~2022)

### 가. 유치원, 어린이집 수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8,538	8,678	8,826	8,930	8,987	9,029	9,021	8,837	8,705	8,660	8,562
어린이집	42,527	43,770	43,742	42,517	41,084	40,238	39,171	37,371	35,352	33,246	30,923
계	<b>51,065</b>	<b>52,448</b>	<b>52,568</b>	<b>51,447</b>	<b>50,071</b>	<b>49,267</b>	<b>48,192</b>	<b>46,208</b>	<b>44,057</b>	<b>41,906</b>	<b>39,485</b>

### 나. 유형별 유치원 수

연도	국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2012	3	168	2.0	4,354	51.0	4,525	53.0	4,013	47.0	8,538	100.0
2013	3	184	2.1	4,390	50.6	4,577	52.7	4,101	47.3	8,678	100.0
2014	3	228	2.6	4,388	49.7	4,619	52.3	4,207	47.7	8,826	100.0
2015	3	272	3.0	4,403	49.3	4,678	52.4	4,252	47.6	8,930	100.0
2016	3	305	3.4	4,388	48.8	4,696	52.3	4,291	47.7	8,987	100.0
2017	3	351	3.9	4,393	48.7	4,747	52.5	4,282	47.4	9,029	100.0
2018	3	381	4.2	4,417	49.0	4,801	53.2	4,220	46.8	9,021	100.0
2019	3	403	4.6	4,453	50.4	4,859	55.0	3,978	45.0	8,837	100.0
2020	3	460	5.3	4,513	51.8	4,976	57.2	3,729	42.8	8,705	100.0
2021	3	510	5.9	4,548	52.5	5,061	58.4	3,598	41.6	8,659	100.0
2022	3	554	6.5	4,559	53.2	5,116	59.7	3,446	40.2	8,562	100.0

### 다. 유형별 어린이집 수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2012	2,203 (5.2)	1,444 (3.4)	869 (2.0)	14,440 (34.0)	22,935 (53.9)	113 (0.3)	523 (1.2)	<b>42,527</b> (100.0)
2013	2,332 (5.3)	1,439 (3.3)	868 (2.0)	14,751 (33.7)	23,632 (54.0)	129 (0.3)	619 (1.4)	<b>43,770</b> (100.0)
2014	2,489 (5.7)	1,420 (3.2)	852 (1.9)	14,822 (33.9)	23,318 (53.3)	149 (0.3)	692 (1.6)	<b>43,742</b> (100.0)
2015	2,629 (6.2)	1,414 (3.3)	834 (2.0)	14,626 (34.4)	22,074 (51.9)	155 (0.4)	785 (1.8)	<b>42,517</b> (100.0)
2016	2,859 (7.0)	1,402 (3.4)	804 (2.0)	14,316 (34.8)	20,598 (50.1)	157 (0.4)	948 (2.3)	<b>41,084</b> (100.0)
2017	3,157 (7.8)	1,392 (3.5)	771 (1.9)	14,045 (34.9)	19,656 (48.8)	164 (0.4)	1,053 (2.6)	<b>40,238</b> (100.0)
2018	36,021 (9.2)	,377 (3.5)	748 (1.9)	13,518 (34.5)	18,651 (47.6)	164 (0.4)	1,111 (2.8)	<b>39,171</b> (100.0)
2019	4,324 (11.6)	1,343 (3.6)	707 (1.9)	12,568 (33.6)	17,117 (45.8)	159 (0.4)	1,153 (3.1)	<b>37,371</b> (100.0)
2020	4,958 (14.0)	1,316 (3.7)	671 (1.9)	11,510 (32.6)	15,529 (43.9)	152 (0.4)	1,216 (3.4)	<b>35,352</b> (100.0)
2021	5,437 (16.4)	1,285 (3.9)	640 (1.9)	10,603 (31.9)	13,891 (41.8)	142 (0.4)	1,248 (3.8)	<b>33,246</b> (100.0)
2022	5,081 (18.8)	1,254 (4.1)	610 (2.0)	9,726 (31.5)	12,109 (39.2)	132 (0.4)	1,291 (4.2)	<b>30,923</b> (100.0)

# 6

## 교원/교직원 수 현황

### 가. 유치원 교원 수(연도별)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치원	국공립	14,183	15,869	17,334	19,109	20,304	21,343
	사립	39,625	39,023	36,028	34,542	33,153	32,353
	계	53,808	54,892	53,362	53,651	53,457	53,696

※ 교육통계 기준(원장·원감, 정규·보직·수석·특수·보건·영양 교사, 기간제)

### 나. 어린이집 교직원 수(연도별)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공공	국공립	36,098	41,122	50,436	59,974	67,191	73,511
	사회복지법인	18,845	19,139	18,835	18,313	17,673	16,975
	직장	14,858	16,476	17,961	19,799	20,479	20,944
민간	법인·단체 등	8,254	8,259	8,062	7,695	7,351	7,027
	민간	146,920	146,386	139,344	129,306	123,655	116,442
	가정	104,176	100,987	95,763	89,552	83,758	76,144
	협동	1,066	1,051	1,043	1,030	1,009	953
계		330,217	333,420	331,444	325,669	321,116	311,996

※ 보육통계 기준(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기타)

PART

VI

**참고자료**

1.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23.7.28.)	141
2.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23.9.13.)	148
3.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 업무 이관 안내	159
4. 서식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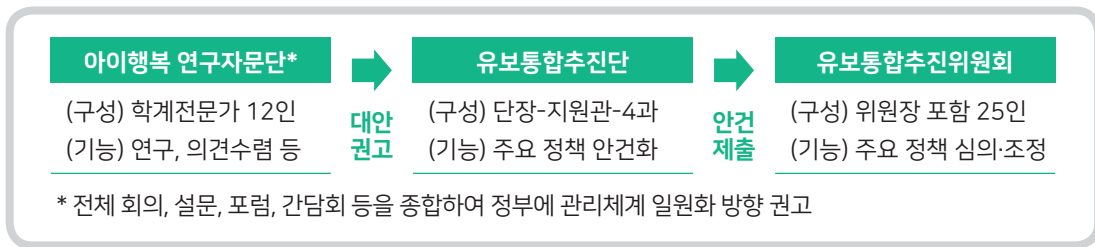
## 1

##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23.7.28.)

## I 유보통합 추진 상황

## 가. '유보통합 추진방안(1.30, 교육부·복지부)'에 따라 주요 과제 추진 중

- 유보통합 논의를 위한 연구자문단-추진단-위원회 추진체계 구축(1.31~)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선정**(9개)으로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개선 추진**  
 ※ **선도교육청 주요 과제** :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유·어·초 연계 교육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내·외 안전 환경 조성, 유·보 교사연수, 유아학비 지원 등
- 대국민 **거주지 기반** 유치원·어린이집 **현황 정보** 제공(7.14.), **행정용** 지역별 **수급 정보** 제공(6.16.)으로 **학부모 편의 증진 및 체계적 수급관리** 추진  
 ※ 월 단위 대국민 읍면동 기준 유치원 추가모집·어린이집 입소대기인원 등 정보 제공, **행정용** 행정동·법정동별 영유아 수 및 유치원·어린이집 정현원 정보 제공
- **통합모델**(교사자격·양성, 교육과정, 시설·설립 등) 관련 연구자문단 논의 등 추진  
 ※ ('23) 쟁점 논의 → ('23.말) 통합모델 시안 공개 → ('24) 의견수렴 및 확정

## 나. 정책관계자와의 소통, 협력에 기반한 정책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방문**(2.6, 2.17, 7.12\*), 기관 단체대표 등 **간담회**, **공무원 설문**, **시도교육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소통**(5~7월)  
 \* 교육부 복지부 장관 현장 방문, 유보통합을 통한 교육 보육 질 제고 방안 의견 청취
-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7.14)  
 \* 중앙·지방이 "재정확보, 인력 지원 등 노력, 유보통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공동선언

## II 정책 환경 분석

### 가. 외부 환경

- **(기회)** 역대 정부 **최초, 국정과제\***(교육부 복지부)로 유보통합을 추진, 젊은 세대, 학부모 등의 기대가 높은 상황

\* (교육부)(84)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복지부)(46)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위기)** 통합모델 등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그림” 제시가 아직 없어\***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불안감, 의구심도 존재

\* ‘유보통합 추진방안’(1.30)은 유보통합추진단 출범 후 논의 과제 및 일정을 제시

### 나. 내부 여건

- **(약점)** 현장의 기대에 부응, 의구심을 해소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나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에 쟁점 논의 몰입, 과거\*와 같이 **갈등만 심화 우려**

※ 박근혜 정부,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 (2단계) 규제환경 정비, (3단계)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3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추진단 해체

- 그 사이, **일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며 유 보 모두 **각각의 법령·계획**에 근거한 별개의 정책 추진으로 현장의 혼선 야기 가능성

- **(강점)** 과거와 달리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양 부처가 이미 합의**(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실무협의체 지속 운영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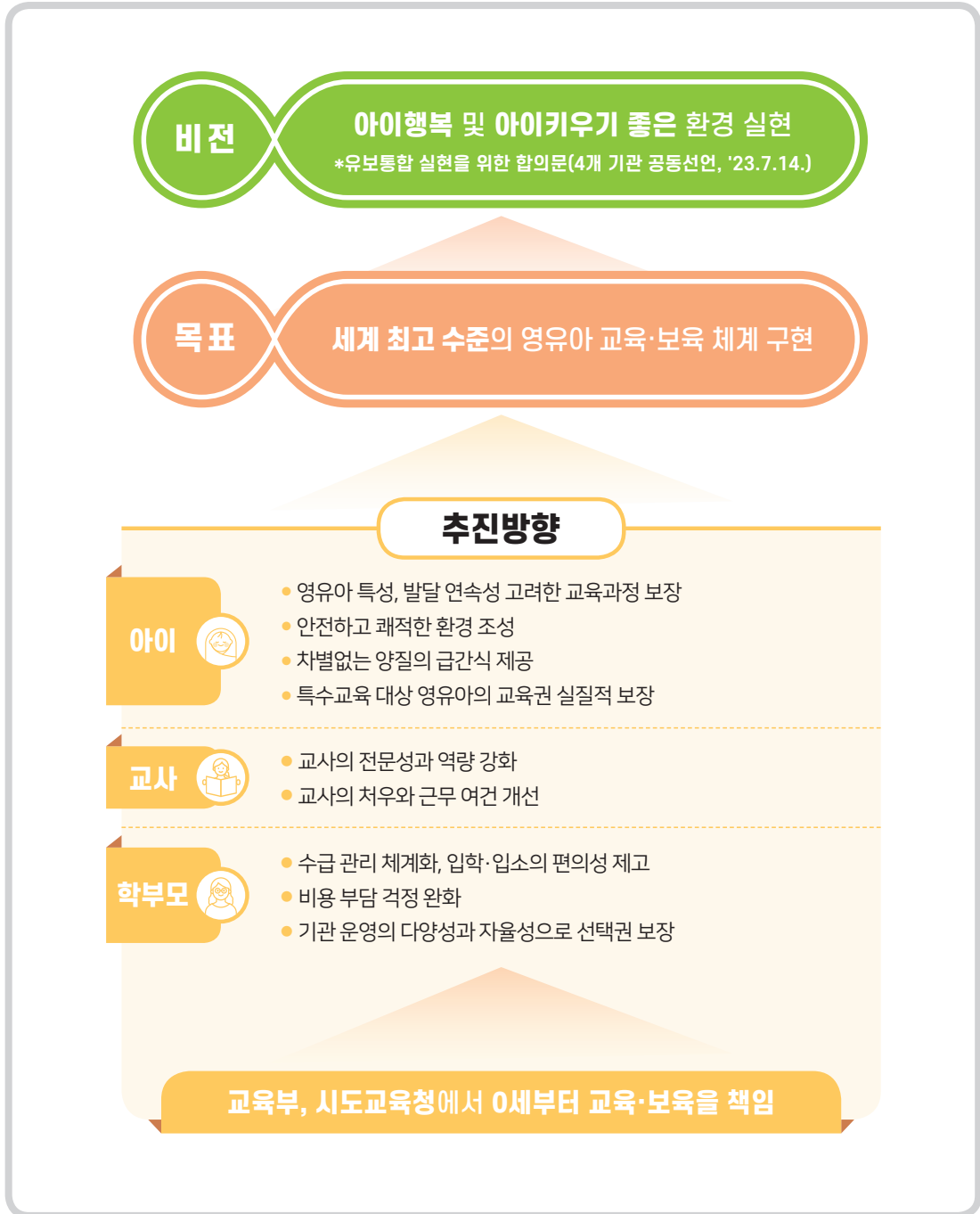
### 시사점



- ① **현장이 안심하고 유보통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해 좋아지는 모습을 공유** →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방향 제시
- ② 그간의 경험 상, **쟁점 우선 논의는 갈등을 격화,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관리체계 일원화’와 ‘쟁점 논의’**를 함께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

### Ⅲ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 가. 유보통합 비전 체계도



나. 비전 실현 10대 정책(안)

- 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0세부터의 교육·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

- 2 영유아의 **특성과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보장**하겠습니다.  
 >> 0~5세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강화

---

- 3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 기반 강화, 놀이시설 개선 등

---

- 4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겠습니다.

---

- 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 6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 양성 교육과정 개편, 현직교사 역량 강화 지원 등

---

- 7 영유아 교육·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 8 수급 관리를 체계화하고, **입학·입소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 지역별 수급 관리 계획 마련 및 입소 대기 해소,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9 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 단계적 학부모 부담 경감 추진

---

- 10 통합 모델 내 **기관 운영의 다양성·자율성**,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관 운영의 다양성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지원 확대

## IV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안)

### 가. 추진 목표

- 쟁점들을 책임 있게 조율하여, 유보통합 비전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 조기 실현 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한 기반 마련

● 대통령 (6.15) : “아동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 아동돌봄 업무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 하여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완성”

- 이원화\* 체제로 인한 비효율과 격차 초래를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 추진

\*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전달 체계 상이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중앙	● 보건복지부(1국 3과, 보육정책관)	● 교육부(1과, 유아교육정책과)
지방	● 시·도청, 시·군·구청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지원 조직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유아교육진흥원
재원	● (중앙) 국고, 유특회계(국고) ● (지방) 지방재정(국고대응, 자체사업)	● (중앙) 유특회계(국세 교육세) ● (지방) 지방교육재정

### 나.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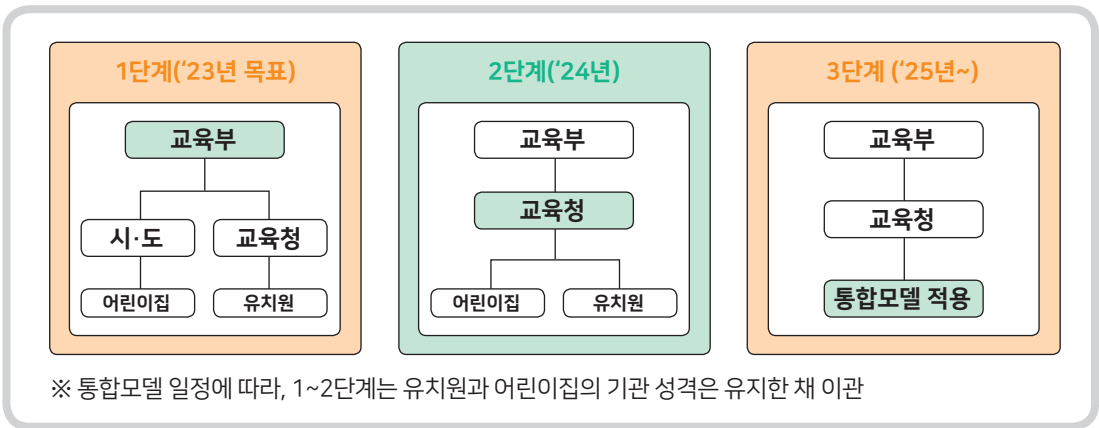
- 유치원, 어린이집 업무 관계자 합동 워크숍, 간담회(4.13, 5.9)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업무 이해, 지역 간 상호 교류 기회 제공 등
- 지방 공무원(시·도교육청, 시·도청 및 시·군·구청) 대상 설문조사(5.17~23.)
  - ※ 유 보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인식, 준비상황 및 요구사항 등 파악 목적
- 17개 시도교육청 면담,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관련 의견 청취(5~7월)
-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논의 지속,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 권고

다. 주요 추진 내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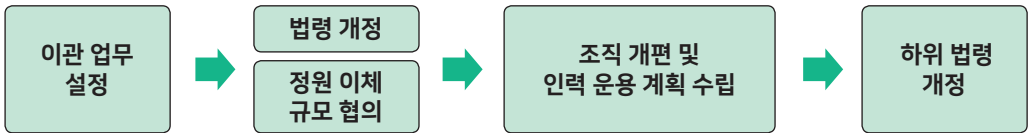
- **(기본방향)** 보건복지부, 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 **(이관범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 업무\*
  - \*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
  - ▶ 「영유아보육법」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예 : 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
- **(이관전략)** 중앙 - 지방 **순차 이관** (先 중앙, 後 지방) 추진
  -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3.5월)** 추진 순서 관련, 응답자의 57.5% (특히, 시·도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74.4%)가 “先 중앙 - 後 지방이 적절하다”고 응답

- **先 중앙** : 효과적 쟁점 조율 및 지방 이관 지원
- **後 지방** : 서비스 전달의 누수 방지, 상당 기간의 이관 준비 조치 필요

▶ 중앙-지방 순차 이관에 따라, 유보통합 **실행 모습은 3단계로 구분**



● **(이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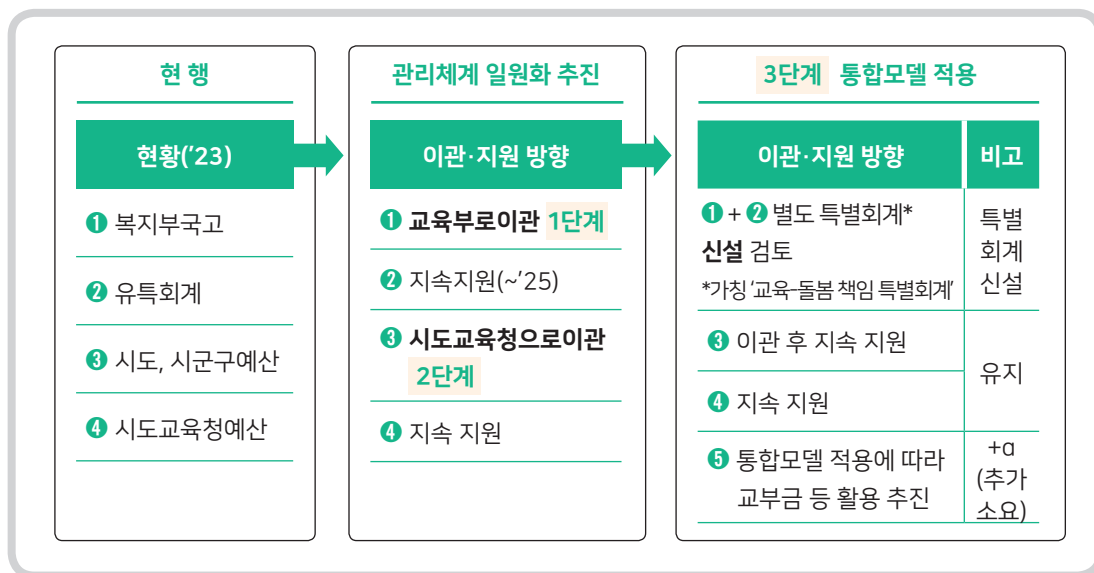


- **(조치 필요 사항)** 중앙실무협의체, 지방추진단, 중앙-지방 4자 실무협의회\* 등으로 업무 자원 이관 및 정원이체 등 세부 사항 협의, 공동 대응
  - \* 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국장급이 참여, 4자 공동선언('23.7.14.) 사항의 세부 이행방안 협의(안건에 따라 행안부 등 참여)

## 라. 재정 이관

### ● 원칙

- 현재 영유아, 부모, 교사, 기관 등에 지원 중인 예산의 **지속 지원** 및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 원칙 준수**  
 ※ 세부 이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등 정부, 시도,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결정
-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1·2단계) 시에는 재정은 **'이관'**하며, 이후 **통합모델**('23.12월 시안공개, '24년 말 확정) **적용 시, 재정 개편** 추진



### ● 이관 방안

- (1단계: 중앙) 보건복지부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소관 변경)
- (2단계: 지방)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으로 이관(법률에 근거 명시)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자체 사업**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 여부 등) 등에 따라 이관 범위 결정  
 ※ 세부 이관범위와 방안은 4자 실무협의회, 지역협의체(TF)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마. 기대효과



# 2

##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 ('23.9.13.)

### I 추진배경

가.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1.30) 이후, 추진체계 중심 논의 본격 시작

-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등 논의를 위한 추진 체계 마련,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따른 주요 과제 추진 중

2023년 1~7월 주요 추진사항	
1월	(1.30) '유보통합 추진방안'(교육부·복지부) 발표 (1.31)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관련 국무총리 훈령 시행
3월	(3.13)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계획 수립 ※ 유보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과제 발굴·지원('23.8월말 기준, 13개 교육청)
4월	(4.4)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4.14)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발족
5-6월	교원자격, 통합모델 등 주요과제 관련 연구용역 착수, 현장의견 수렴 시작
7월	(7.14) 4자(교육부-복지부-시도지사협의회-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선언식 (7.24-27) 교원자격, 통합모델 등 유보통합 주요과제 관련 현장소통 포럼 개최 (7.28) 제2차 영유아교육 보육통합 추진위원회 개최 및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발표

- 특히,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7.28)을 발표하는 등 과거와 달리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시작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 구현 예정

- 유보통합 비전 체계도
  - (비전) 아이행복 및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실현
  -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구현
- 비전실현 10대 정책
  - ① 0세부터의 교육 보육, ② 영유아 특성과 발달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보장,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④ 양질의 급간식 제공, ⑤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권 보장, ⑥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⑦ 교사처우 근무여건 개선, ⑧ 입학 입소 편의성 제공, ⑨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 ⑩ 기관운영 다양성 자율성, 학부모 선택권 보장

**나. 현장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 다만, 주요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표출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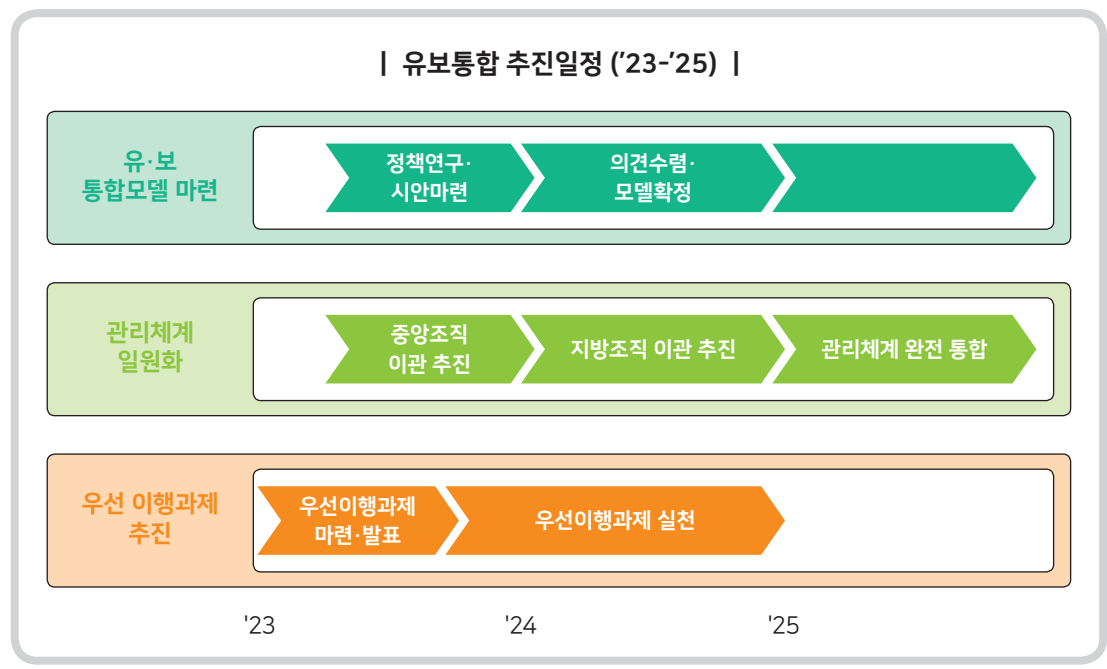
	기대	우려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보육의 질이 높아질 것</li> <li>● 기관 선택의 고민 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발달 차이에 따른 적합성 우려</li> <li>● 다양한 기관 선택지 축소 우려</li> </ul>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지위 향상 및 교권 보호 강화</li> <li>●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자격 체계 개편의 방향성</li> <li>● 교원 양성 기관 체제 개편 가능성</li> </ul>
기관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li> <li>● 연령확대 및 재원아수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수 감소에 따른 경영 부담</li> <li>● 소규모 기관의 경쟁력 약화</li> </ul>
교육청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격차없는 발달지원</li> <li>● 일원화된 관리체계 하 효율적 업무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li> <li>● 보육업무 이관시 재정 인력 부담</li> </ul>

※ (학부모) 중앙일보(1.31), (교사) 유보통합 교원자격, 양성체계개편 포럼(7.24), 이데일리(1.23)

- **유보통합 관련 주체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시점**

**다. 현장 체감도에 기반해 유보통합의 건설적 사례를 만들어갈 필요**

- 유보통합 본격 시행 이전이라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한 **동력 확보 필요**
- 성공적인 유보통합의 가교로서, 현행 체계에서도 실천 가능하고 현장의 **요구가 높은 「우선 이행과제」** 추진



## II 우선 이행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현황 분석

### 가. 동일 유아(만 3-5세) 대상 급식비 지원방식 및 놀이환경이 상이

-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외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내 급간식비를 집행\*

\* '22. 기준, (유) 교육청별 2,800~3,435원 지원, (어) 누리과정비 내 집행(2,500원 + 지자체 일부 보조)

※ 유치원은 통상 1일 1식을, 어린이집은 1일 2식 이상 및 간식을 제공하고 있어 급(간)식비 지원 격차가 추가로 발생

- 유치원의 경우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 정원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

※ '23.8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29,105개 중 놀이터 설치 어린이집은 13,522개(46.5%)

### 나. 유치원·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추가비용액 및 운영시간에 차이

- 부모 추가비용액은 기관 유형에 따라 최소 월 7.7천원에서 최대 월 16만 6천원으로 약 15만 8천원 까지 차이 발생

\* (국공립유치원) 월 7.7천원, (사립유치원) 월 16만 6천원('22.4월, KERIS), (국공립어린이집) 월 3.2만원, (민간어린이집) 월 6.9만원, (가정어린이집) 월 3.1만원('21, 보육실태조사)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일일 운영시간 차이는 4시간 수준

※ 유치원은 1일 8시간(교육과정+방과후과정), 어린이집은 1일 12시간(기본보육+연장보육)

### 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연수와 교권 보호 체계가 상이

- 유치원(매해 60시간, 직무연수)과 어린이집(3년마다 40시간, 보수교육) 교사 간 연수 방식 차이로, 직무능력 개발 기회의 차이 발생

- 현행법상 유치원 교사는 교원이나, 보육교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교권 침해시 보호체계가 다르게 운영

※ 유치원 교사는 「교원지위법」(교권보호위),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

### 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포털(childinfo.go.kr) 기능 한계

- 공시정보 외 결원(추가모집) 및 입소대기 인원현황 제공하는 기능 개선('23.7)하였으나, 입학 및 입소 신청은 개별 웹사이트에서만 가능

※ (유치원) 유치원알리미, 처음학교로,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성공적인 유보통합 기반 조성

우선 이행과제의 선제적, 적극적 실천

대상

우선 이행과제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발달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류 활성화
- 실내외 안전, 건강, 위생환경 개선 지원 및 안전교육 확대
- 어린이집 영아반 추가 지원 추진
-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급간식비 추가지원
-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부모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지원

- 유아 대상 유아학비·보육료 인상 추진
- 양육지원 및 부모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보호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공동 연수 및 현장 컨설팅
-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 <sup>가칭</sup>이음교사단 구성 및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권 보호 강화

인프라



편의 증진 및 협력기반 강화

- 추가모집(입소대기) 정보 이용, 입학·입소신청 편의 증진
-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정보 통합 제공
- 중앙 및 지방의 협력을 통한 추진 기반 마련
- 영유아에 대한 인식 제고 지원

IV 우선 이행과제 및 실천방안

※ **선도** 는 선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과제를 의미

1 |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지원

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류 활성화 **선도**

- 유치원·어린이집간 교육·보육과정 교류, 현장학습·특별활동(생태체험 등) 공동운영, 공간·교재교구 공유 추진('23. 하, 충북 세종)
- 공립유치원 보유 실외놀이터, 인근 어린이집 공유 시범 추진('24)
  - ※ 학교(유치원)놀이터가 어린이집 대체놀이터에 포함되도록 예외 마련(복지부 협업), 어린이집 대체놀이터 기준 적용
-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및 체험교육 개방('23, 대구 세종)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개방 추진

나. 실내외 안전, 건강, 위생환경 개선 지원 및 안전교육 확대

- 출입문 안전시설, 방충망 개선, 살균소독기, 미세먼지 표시기 등 확보, 노후시설 및 놀이터 등 개·보수 지원('23, 서울) **선도**
  - ※ 영상폰, 노후 CCTV 교체, 해충 박멸기 확보, 경사로 개보수 등도 포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확대 추진('24)
  - ※ (교사) 온라인 안전교육, 안전영역별 놀이중심 활동자료·교수법 등 활용(영유아) 실내·외 생활안전, 실종·유괴 예방, 안전 인형극 등(어린이집안전공제회)

다. 어린이집 영아반 추가 지원 추진('24, 복지부)

-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인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 영아(0-2세)반의 경우 아동 1인당 기관보육료 지원 추진
  - ※ 예. 만 0세반 현원이 2명인 경우 영아 1명에 대한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 라.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급간식비 추가지원('23) 선도

- **유평회계 집행지침, 적극행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 ※ 시도교육감이 유치원과 동일한 국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만3~5세 유아에게 보육료, 급식비 등 지원 가능(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23.3)
- **유치원·어린이집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
  - ※ ('23) 경기(2,690원), 인천(1,000원), 충북(1,000원, 광역 40%, 기초 60% 분담), 전북(650원, 교육청 지자체 각 50% 분담), 부산(210원), ('24) 전남(400원), 인천(1,880원) 등

## 마. 장애영유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 **영유아 단계부터 특수교육·장애아동 지원(예.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부모교육지원 등) 정보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모색('23. 하)**
  - ※ 장애아동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범부처협의회 운영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대상 진단·평가 지원('23) 선도**
  - ※ (세종) 장애 영유아 맞춤형 지원, 특수교육 진단평가, 순회교육, (충북) 발달검사 치료 지원
- **장애아동이 적령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24~)**
  - ※ '23.4월 기준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 2회 이상 취학 유예한 장애아동 수 493명
  - ※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 부모간담회 등 입학적응 지원, 어린이집 보육계획 수립시 취학지원 방안 포함
- **장애영유아 및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교육 보육 통합관련 정책자문을 위해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협의 TF 구성, 운영('23.하)**
  - ※ 장애영유아보육 및 영유아특수교육 관련 교사, 부모, 학계, 관계기관 포함

## 2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및 양육 지원

### 가. 유아 대상 유아학비·보육료 인상 추진

- **학부모 부담 완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만 5세 유·유아학비·어누리 보육료(급식비)를 추가 지원 추진 검토('24)  
 ※ 유아학비 보육료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23년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 추가 지원('23. 대구, 광주) **선도**

### 나.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참여 프로그램 다양화

-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과정 시범운영**('23) **선도**  
 - 유치원·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유치원 연계 방과후과정 공동운영(경기 대구),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등
- 부모 수요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양육지원 강화방안 모색**  
 ※ 예. 부산늘봄센터: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제공('23. 9월, 야간 긴급돌봄센터 시범 운영/'24. 시행) **선도**
- 유치원·어린이집 **부모 공동체**를 구성, **공동 부모교육** 제공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23. 부산, 세종, 서울, 충북 등) **선도**  
 ※ (부산 세종)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대상 공동연수 추진  
 (서울)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와 부모 대상 부모행복교실',  
 (세종) 생태체험 등(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이해, 양육, 자녀권리 존중, 스트레스 관리 등

## 3 |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이해제고 및 교권보호

### 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대상 공동연수, 현장 컨설팅 추진 **선도**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대상 공동연수**('23. 서울·부산 등), 교사연수 교차 지원 및 과정 공유 병행  
 ※ 교육청 산하 유아교육진흥원 교사연수를 어린이집 교사 대상으로 개방, 지자체 산하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연수를 유치원 교사 대상으로 개방
- **직무연수·보수교육 교차 인정**, 교육 중 **대체교사 지원**(전북), 유아교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대학 간 연계 및 교류 활성화 추진('24~)
- **누리과정 교육 전문가**를 초빙해,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23. 서울·대구·경남·광주)

## 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선도**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간 상호방문, 교육자료 및 공동수업안 개발, 공동 현장학습 등 운영('23. 서울·광주·세종·충북·경남)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공동체 우수 운영사례 포상 추진

## 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로 구성된 가칭이음교사단 구성·운영 추진

- **공감대 확산**, 교사 부모연수 개발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후 '교사·부모연수 핵심교원' 활동으로 연계

## 라.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교권보호 강화('23. 9월~)

- 교원지위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시행('23. 9)  
-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권보호 및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 추진 ('23. 복지부)

### | 영유아보육법 개정방향 ('23.9-) |

-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보호자의 보육교직원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및 보육활동 존중 의무 신설
  - 어린이집 원장,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근거 마련
  - **보육활동 침해**에 따른 분쟁조정·고충처리 등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 **부모-교사간** 발생하는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예. 무리한 요구, 모욕, 협박, 불법정보 유통 등)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23. 복지부)  
※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 완비 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하여 **보육활동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지원('24.1. 복지부)
  - **맞춤형 심리건강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심리상담\***을 **전문 치료와 연계 강화**('24.1. 복지부)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66개소, 전문상담요원 73명 배치, 심리상담 연간 약 20,000건

## 4 |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협력기반 강화

### 가.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모집인원 정보이용, 입학 입소신청 편의 증진

-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childinfo.go.kr)' 기능개선으로 읍면동 단위 입소대기·추가모집 정보 매월 제공 및 신청사이트\* 연계('23.7)
  - \* 유치원 처음학교로(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 임신육아종합포털(childcare.go.kr)
  - ※ 유치원 학기 중 추가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기능개선, 운영 중
  -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 검색이 용이하도록 관계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학술정보원) 및 **업계와 협업 추진**
- 「정부24(www.gov.kr)」를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추진('23.하~, 행안부)

### 나. 유치원 어린이집 현황정보 통합 제공

- 시군구 단위, 분절적으로 관리·제공되던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계정보\*를 **읍면동 단위로 통합 제공하여 수급관리에 활용 확대**
  - \* 유치원·어린이집 정원, 반별 현원, 결원 및 입소대기 정보 포함하여 시·도청 및 시·도교육청에 매월 제공 중('23.7~)

### 다. 중앙 및 지방의 협력을 통한 추진 기반 마련

- 유보통합 본격 실행('25)에 앞서, **중앙·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7.28)에 따라, **중앙 단위부터 추진하되, 지방 단위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을 적극 지원\***
  - \* 예 : 교육청 소속 지원 등 대상 어린이집 업무지침서 등 개발·보급('23.9~)
  -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지역별 이관 대비 협의체 연계 운영하여, 중앙·지방 이관에 긴밀히 대응**
  - \* 지역별 이관 대비 협의체 운영 상황 점검·지원을 위한 담당관(추진단 소속) 지정 운영
-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업무담당자 **합동 워크숍, 설명회 개최** 등 협력 체계 운영 ('23. 세종·부산) 선도

### 라. 부모 및 업무담당자 대상 영유아에 대한 인식제고 지원

- **부모 교육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의 본질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칭)BABY BRAIN, 이제는 영유아 교육이다” 영상 제작 추진**
  - \* 대구교육청·EBS 등과 협업, 영유아 두뇌·인지·정서 과학적 실험과 검증 포함 구성, 교사 및 부모인터뷰, 국내외 영유아 유보통합 우수사례 심층취재 포함
- **업무담당자 대상 영유아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운영('24~)**
  - ※ 유보통합의 개념, 필요성, 어린이집 업무의 이해, 유보통합 해외사례 등으로 구성 운영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 추진 개요

- (개념) 지역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유치원과어린이집 간 교육·돌봄의 격차를 완화하고, 질을 높이는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
- (운영 기간/분야) '23. 하반기~'24. 12월 / 교육부·시도교육청 제안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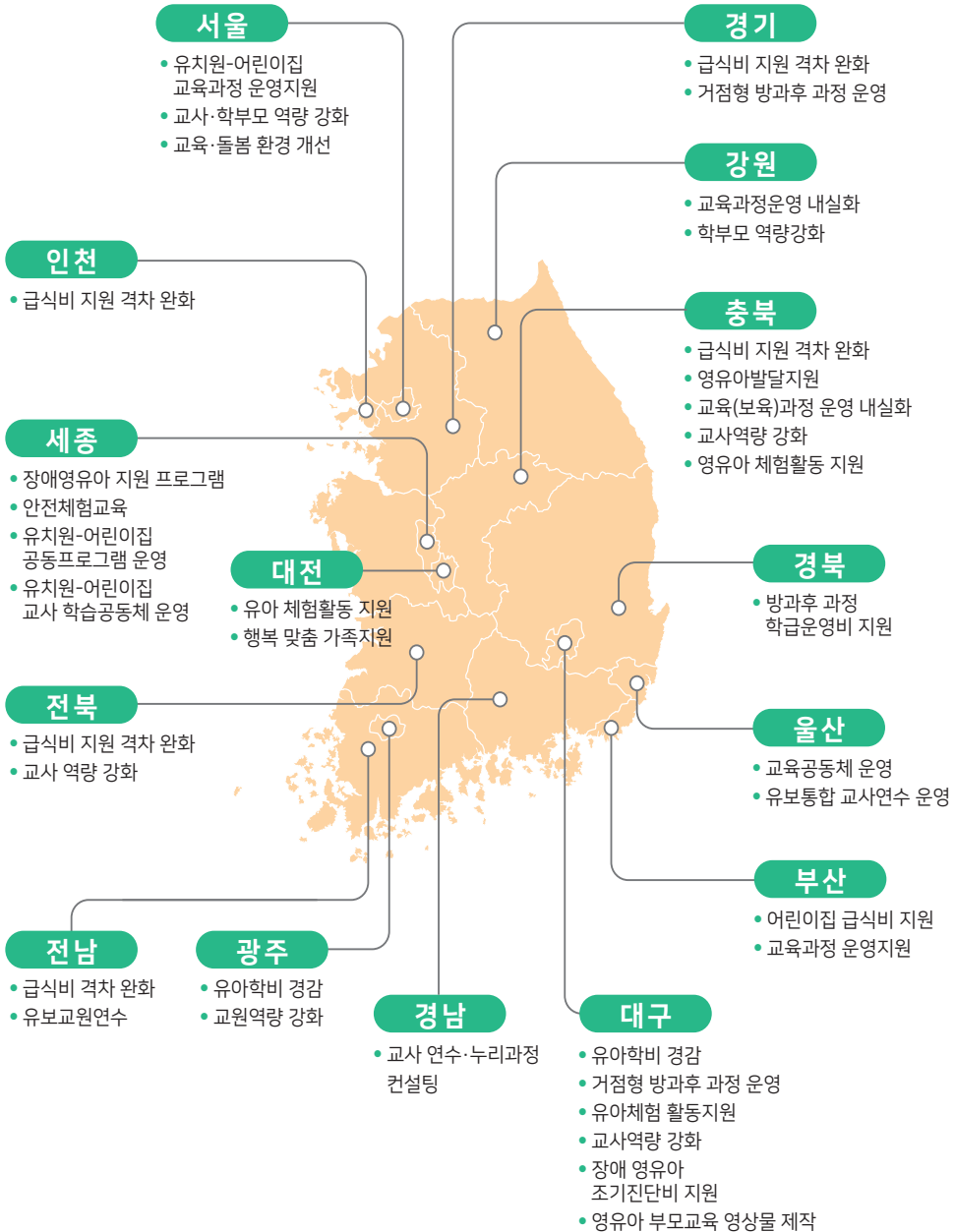
### 운영 현황

- (선정) 15개 교육청(충남·제주 제외)
- (추진내용) 지원격차 완화, 돌봄 확대, 유·어 공동 프로그램 등 운영

분류	추진 과제	시·도교육청
지원 격차 완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전북 전남('24~)
	유아학비 경감	대구, 광주
돌봄 확대	거점형 방과후 과정 운영	대구, 경기
	방과후 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경북
발달지원	장애영유아 조기진단 지원 및 상담	대구
	영유아 발달검사·전문기관 연계 등	세종, 강원, 충북
	장애영유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순회교육 지원	세종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교육과정(프로그램) 운영 좋은 수업 사례나눔 개방	서울, 부산, 세종, 충북
	안전체험교육	세종
	유아 체험활동 지원	대구, 대전, 충북, 경북, 경남
교사·학부모 역량강화	교사 역량 강화 지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학부모 역량 강화 지원	서울, 부산, 대전, 울산, 대구, 강원, 경남
안전 환경 조성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조성	서울
유보통합 역량 강화	유보통합 이해 교사 연수 유보통합 성과 공유 연수 전국 유보이음교사단 운영	세종 부산 경남
유보통합 연계 부모교육 자료 개발	유보통합 관련 영유아 부모교육 영상물 제작(다큐멘터리, 토크쇼 영상)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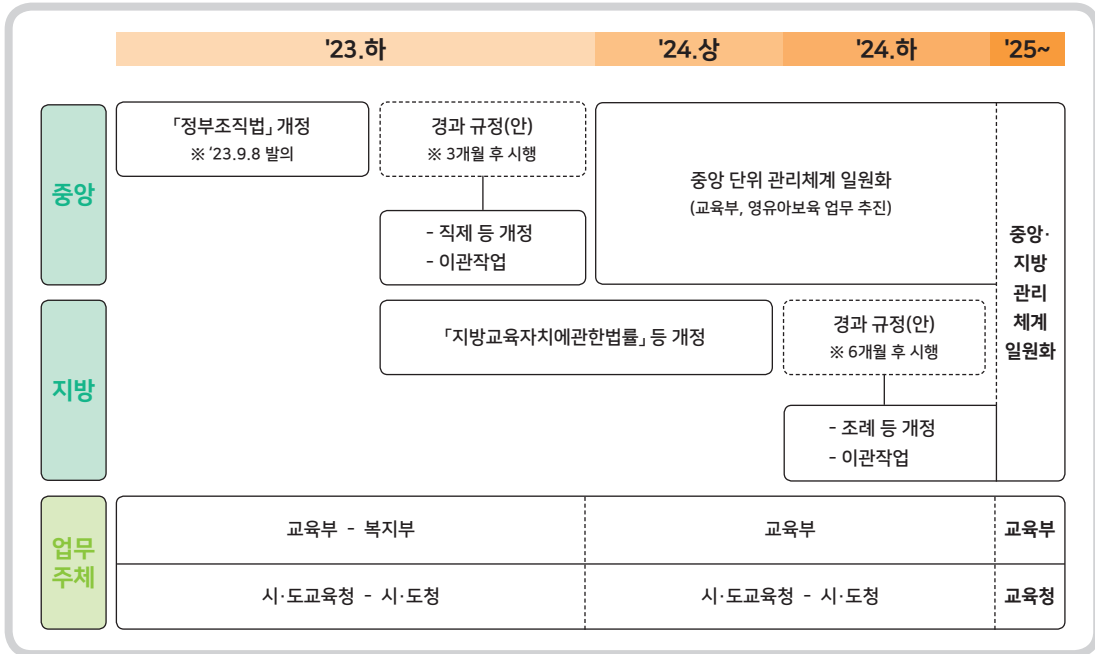
##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 3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지방 업무 이관 안내

### I 중앙-지방 업무 이관 일정(안)



※ 상기 세부 일정은 **법률 개정 추진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이관 순서(중앙→지방), 법률 개정 소요 일정(경과 규정 등 포함) 등 감안하여, '24년도 예산 편성 등은 각 기관에서 현행과 같이 추진

### II 추진 상황

**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23.7.28)'에 따라, **중앙 단위**(보건복지부 → 교육부)부터 영유아보육 업무 이관 **우선 추진 중\***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영·유아보육'을 복지부 →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지방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예정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영유아 보육'을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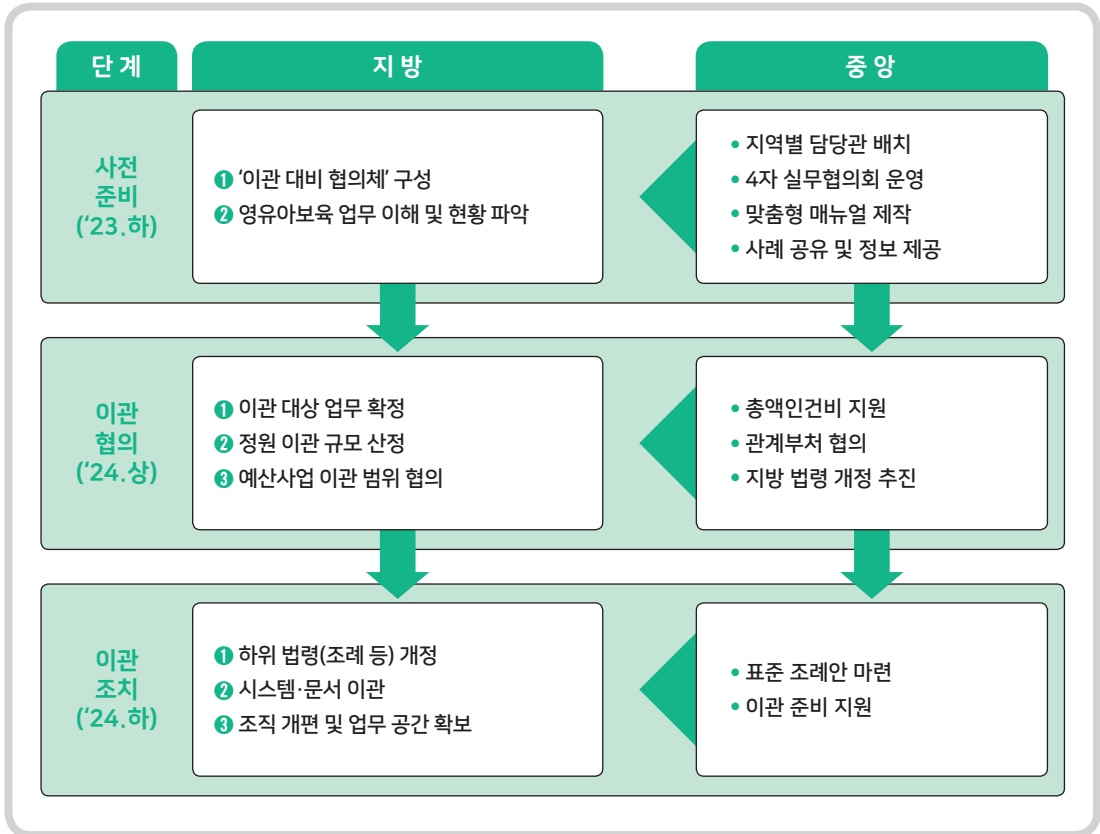
**나.** 그 사이, 지방에서는 '**지방 업무 이관 안내 사항\***'을 참고해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간 **교류, 협의** 등 업무 이관을 차근차근 준비

\* 추후 공동 안내 사항은 1편('23.9)에 이어 추가로 안내할 계획

### Ⅲ 지방 업무 이관 절차(안)

가. (지방) 지역별 '이관 대비 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이관 절차 공동 대응

나. (중앙) 관계기관 협의 등 지방의 업무 이관 지원(공통사항 안내 등)



### Ⅳ ['23.하] 사전 준비

#### 1 | 지역별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운영

가. ('23.10) 예시(안)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 [예시]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안) |

- (단장 / 부단장)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 시·도청 보육 담당 국장
- (참여부서) 교육청 유아교육팀, 시·도청 보육정책팀, 공통조직, 예산, 정책기획 부서 등

- 수시 협의를 위해 **실무협의체**(예 : 팀장급) 또는 **분야별**(예 : 조직·정원, 인사, 예산팀) 협의체 방식으로도 운영 가능

### | 시·도교육청 - 시·도청 간 협의체 구성 사례 |

교육청	추진 내용	교육청	추진 내용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 추진단 구성</li> <li>- 구성 : 단장(부교육감), 부단장(여성아동정책관), 교육청 6명, 도청 4명</li> </ul>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구성</li> <li>- 구성 : 단장(교육국장), 도청 관계자, 유아교육·보육계 전문가 포함 20여명</li> </ul>

※ 이관 대비 협의체 구성 형태는 협의체, T/F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운영될 수 있음

#### 나. ('23.10~) 정례 대면 회의(예 : 월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개최

##### | [예시] 이관 대비 협의체 정례회의 안건 |

- (10월) 지역 영유아보육 업무 현황 공유
- (11월) 예산·조직 관련 기초 자료 분석 및 협의 필요 안건 논의
- (12월) 교육청 전담 조직 설치 공유 및 인력 파견 협조

#### 다. ('24.1~) 시·도교육청 내 유보통합 전담 인력 필수 배치\* → 전담 인력 및 조직 중심으로, '이관 대비 협의체' 지속 운영

\* ('23.9) 총액인건비 가배정 → ('23.12) 확정 통지 → ('24.1~) 전담인력 배치

※ '23.9월 기준, 경기·충남·대구 교육청은 유보통합 전담 인력 배치하여 운영 중

- 특히, 원활한 이관 협의를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TF)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시·도청 협조**

\* 시·도청 소속 영유아보육 업무 경험 인력 파견(교류) 포함

※ 유아교육 뿐 아니라 예산, 조직 부서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

##### (중앙) 교육부 추진단 내 지역별 담당관 지정·운영 예정('23.10~)

- 지역별 정례 회의 등 참여, 진행 상황 모니터링, 지역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관계 기관 협의사항 발굴 (⇒ 4차 실무협의회 안건화)

## 2 | 영유아보육 업무 이해 및 현황 파악

### 가. (~'23.10) 시·도청 → 시·도교육청에 영유아보육 현황 자료 공유

#### | [예시] 영유아보육 업무 현황 자료 |

- 각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의 영유아보육 관련 현황(정·현원, 기관 통계 등)
- 각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의 **사무분장표**
- 각 지자체 **보육 예산 사업**(특수보육시책 사업 포함) 현황
- 각 지자체(시·도청, 시·군·구청)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기타 영유아보육 관련 문서(연혁) 및 참고자료 목록

### 나. ('23.하~) 유치원·어린이집 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 업무 파악 및 교류

※ 선도교육청 운영 연계 전국 시·도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부산교육청 주관), 교육 전문직 연수(세종교육청 주관) 예정

- 유아교육·보육 전문가, 현장 교원 등 참여로, 지역 사회와 함께 논의

#### | 시·도교육청 및 시·도청 주관 토론회 개최 사례 |

지역	제목	지역	제목
전북 (4.20)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대토론회	경기 (5.23)	함께하는 첫걸음, 유보통합 토론회

### 다. ('23.하) 현황 자료 등에 기반해 지역별 협의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 (예) 보육사업 현황 기초자료 : 시·도, 시·군·구의 보육예산 자료 정리

#### (중양) 보육업무 학습 및 지역별 워크숍·토론회 등 개최 지원('23.하)

- '차근차근 어린이집 이해하기 매뉴얼' 제작(교육부·복지부 공동 집필)·배포 예정
-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상황" 설명(자료, 필요시 강연 등 지원) 지원
- 지역별 사례 및 현황 공유 등을 위한 전체 시·도 워크숍 추진 등('23.말)
- 연수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 개발 추진

## 1 | 이관 대상 업무 확정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 업무 이관 원칙**

※ 「아동수당법」 등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예 : 부모급여)은 이관 제외

나. 예시(안)을 참고하되, 조례, 사무분장표 등을 기준으로 이관 대상 업무 **확정**

## | [예시] 이관 대상 업무(안) |

※ 「영유아보육법」 기준

- ① (어린이집 수급관리) 보육계획 수립(어린이집 수급계획 등 포함),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어린이집 인가, 공유재산의 대부 등
- ② (어린이집 지도 감독) 어린이집 지도 및 명령, 어린이집 점검 검사, 행정처분
- ③ (보육료 지원, 보육서비스 가격 관리) 보육료 지급 관련, 수납한도액 결정
- ④ (어린이집 평가 및 관리체계 강화) 평가, 공공형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
- ⑤ (보육교직원 관리) 임면 등, 자격(3급 보육교사 교육훈련시설), 자격정지 취소
- ⑥ (가정양육 지원) 가정양육지원, 보호자 교육,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⑦ (보육정책 지원)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실태조사

## | ◇◇시청 분장사무 검토 (예시) |

직급	분장사무	검토 예시
팀장	보육사업, 보육단체관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총괄	이관 대상
주무관 1	보육계획 수립, 국공립 위·수탁 관리, 국·공립 신규 확충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이관 대상
주무관 2	보육예산 및 보조금 관리(보육료, <b>부모급여</b> , 양육수당, 누리과정, 인건비, <b>도 자체 보육사업 예산 등</b> ) 보육 보조인력 지원(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등)	- 부모급여 제외 - 자체 보육사업 이관 협의 필요
주무관 3	육아종합지원센터, <b>장난감 대여센터</b> 운영지원 및 관리,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가정양육지원사업, 보육단체 관리	- 장난감 대여센터 관련 협의 필요
주무관 4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장애아어린이집 업무, 어린이집 평가제	이관 대상

## 2 | 정원 이관 규모 산정 및 인력 운용 계획 협의

### 가. (산정) 각 지자체의 조례, 사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이관 인원 산정

- 정원을 기준으로 협의하되, 지자체의 정·현원, 결원 현황 등을 바탕으로 시도-시도교육청 간 합의를 통해 이관 인원 산정
  - ※ 부모급여를 제외한 영유아보육 업무 전체 인원을 산정하고, 이관 대상으로 포함

### 나. (인력운용) 안정적 현장 안착 등을 위해 인력 조치 사항 협의

- 시·도청 → 교육청으로의 전입을 우선하며,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파견·교류 등 적극 활용
- 이관 정원 산정 후 ①전입 희망 수요 조사하고 정원-전입 결원에 대해 ②파견·교류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업무 공백 최소화
  - ※ 파견 교류 인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 등과 우대 조치(인센티브 부여 방식) 협의

## 3 | 예산 사업 이관 범위 협의

### 가. (범위) 보육 예산 기초 자료, <sup>중앙</sup>필수 경비 범위 등을 기준으로, 예산 이관 범위 확정(사업명, 예산규모 등)

- ※ 시·도, 시·군·구 보육예산 이관 후 시·도교육청은 사업 지원 재구조화 가능
- 업무 이관 이후 안정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 보육 예산은 원칙적으로 이관(국고 대응투자비, 필수 경비 성격의 자체 사업비 등 포함)

### 나. (방식) 시도의 예산편성과 정산 절차 등의 행정처리가 용이하되, 안정적으로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방식 논의

#### (중앙)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해 필요시 전국 공통 기준 안내

- ※ 논의 안건 예시(안) : 재원 이관 방식, 지자체 자체 사업의 필수 경비 범위, 지자체 재산 관리 방안, 기타 지역에서 발굴한 협의사항 등

## VI [‘24.하] 이관 조치

### 1 | 하위 법령 개정

#### 가. 법률 개정\* 후속조치, 지방 업무 이관 실행 위한 입법 추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후 개정 추진)

##### Ⅰ [예시] 개정 필요 하위 법령 Ⅰ

- (17개 교육청별) 00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 (17개 시도별) 00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 (226개 시군 구청별) 00시/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칙)
- (17개 시도별 / 226개 시군 구청별) 보육 조례 등

### 2 | 시스템·문서 이관

#### 가. 전자결재시스템, 수기 문서 대장 등 이관 작업(필요시 시범 운영)

### 3 | 조직 개편 및 업무 공간 확보

#### 가. 기존 유아교육 담당 부서, 통합모델 연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개편

#### 나.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간 확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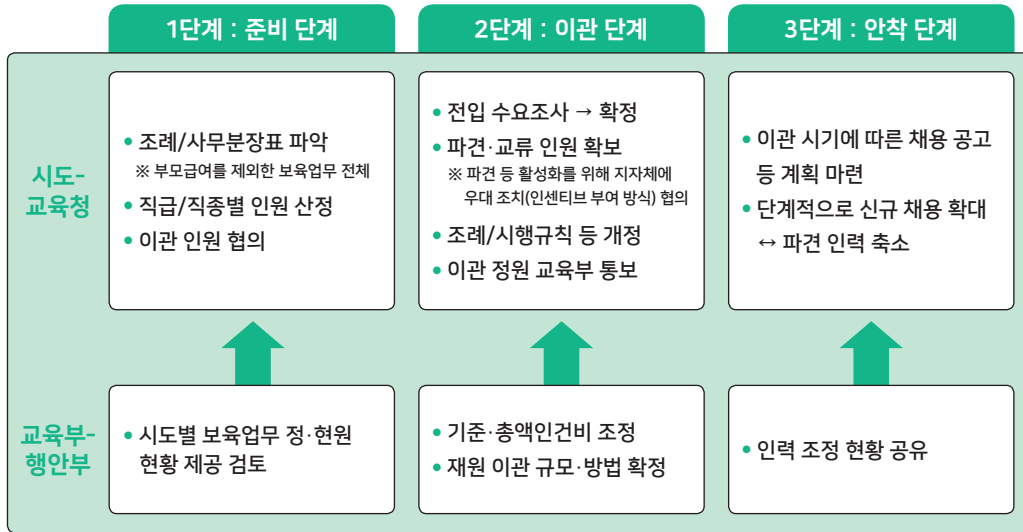
(중앙) 표준 조례안 마련, 중앙 이관 경험 토대로 이관 실행 지원



## 지자체 정원 및 조직 이관 프로세스(안)



● 1단계 : 인원 산정 → 2단계 : 정원 이관 → 3단계 : 전입 채용



- (1단계) 조례, 사무분장표를 바탕으로 이관 정원 산정 협의

- (2단계) 전입 조사, 파견 교류 등 인력 이관 → 신규 채용

※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례/시행 규칙 개정,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등 추진

- (3단계) 단계적 신규 채용 → 파견·교류 인력 점진적 축소

### | ##도 기준 정원 이관 단계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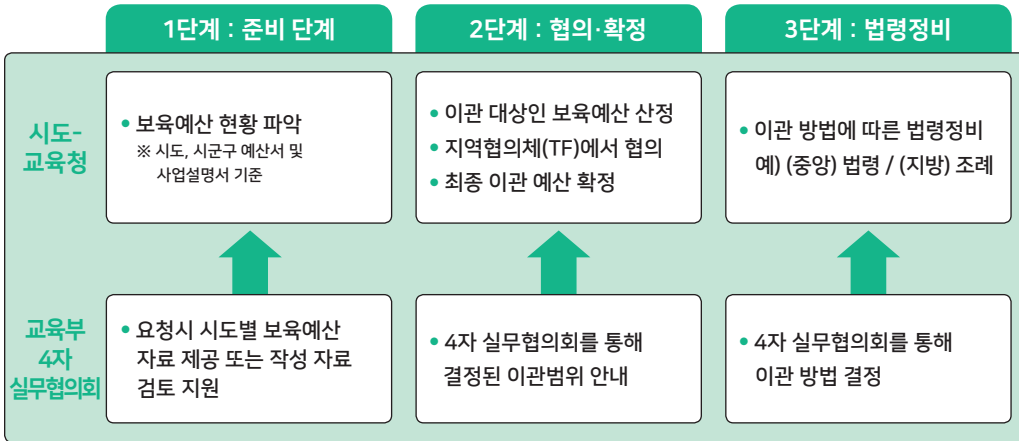
- (1단계) 인원 산정 : ##도 기준 65명 이관 확정(## 6명, 시·군·구 59명)
- (2단계) ① 전입 수요 조사 : 65명 중 20명 전입 희망 → 전입 인원 확정  
 ② 파견 인력 확보 : 결원 45명(65명-20명) 중 30명 파견 확정  
 ③ 조례 등 개정 : 시도, 시·군·구 조례 개정 + 시도교육청 조례 개정  
 ④ 이관 인력 통보(##도 → 교육부 행안부) / 정원·조직 이관 시행
- (3단계) ① 신규 채용 실시 : 결원 45명 신규 채용  
 ② 파견 인력 대체 : 매년 10명씩 파견 인력 축소 → 신규 채용으로 대체



## 예산 이관 프로세스(안)



● 1단계 : 기초자료 작성 → 2단계 : 이관 예산 확정 → 3단계 : 보육예산 이관 근거 마련



- (1단계) 예산서, 사업설명서 참고하여 **보육사업 현황 작성**

※ 사업명 기준, 엑셀로 정리(기초 자치에 설치된 구 예산까지 확인)

※ 예산서는 시도청, 시군구청 누리집 - 정보공개 - 예산공개 참조

| ## 기준 보육예산 (작성 예시) |

예산 사업명	구분	복지부 국고	##도청	AA시	AA시 ★구청	AA시 ☆구청	BB시	...
보육예산 총계	국고대응	183,883,843	61,904,454	19,769,989	6,190,589	7,349,594	12,928,253	
0-2세 보육료 지원	국고대응	100,502,000	14,882,110	9,388,490			3,181,84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고대응	49,631,800	19,152,324		2,367,487	2,669,720	2,500,000	
가정양육수당	국고대응	5,116,043	978,050	367,110			132,280	
시간제보육 지원	국고대응	535,000	267,500	68,250			29,750	
∴	∴	∴	∴	∴	∴	∴	∴	∴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	도·시군구		1,939,392	2,373,504			591,360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도 특수시책)	도·시군구		5,048,640	3,000,000			1,397,760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도·시군구		2,445,368		1,107,362	1,409,370	874,768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도자체		695,207		313,092	398,481	246,120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도자체		42,840		3,881	7,879	2,520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전환사업)	도자체		3,640,500		124,800	115,200	223,000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전환사업)	도자체		531,808					
∴	∴	∴	∴	∴	∴	∴	∴	∴
누리과정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시군구자체			524,520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시군구자체			1,508,400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자체)							245,000	
어린이 안전공제회 가입	시군구자체			97,085			45,585	



## 예산 이관 프로세스(안)



- (2단계) 4자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안내할 '필수경비' 참고하여, 지역 내 협의를 통해 이관

### 대상 보육 예산 사업 확정

※ 시도별로 지원하는 보육사업에 차이가 있어, 4자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대분류와 지원항목, 지원 성격 등을 제시할 예정

| [예시] 중앙에서 제시할 이관범위 대분류 및 지원 항목 |

대분류	지원항목	비고
1. 부모보육료 지원	1.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대한 부모추가부담액 지원금액
1. 부모보육료 지원	2. 영유아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1. 부모보육료 지원	3. 기타 필요경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1. 교사처우개선비	
2. 보육교직원처우개선	2. 근속수당	
3. 인건비 지원	1. 원장 인건비	
3. 인건비 지원	2. 보육교사 인건비	
3. 인건비 지원	3. 대체교사 인건비	
3. 인건비 지원	4. 간호사 인건비	
4. 취약보육 지원	1. 장애아 전문·통합 인건비	
4. 취약보육 지원	11.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비	
5. 어린이집 운영지원	1. 급간식비	
5. 어린이집 운영지원	2. 교재교구비	
5. 어린이집 운영지원	3. 냉난방비	
⋮	⋮	⋮

- (3단계) 보육 예산 이관 방식\*에 따라 법령정비 또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육예산 이관 근거 마련

※ 시·도, 시·군·구 보육예산 이관 후 시·도교육청은 사업 지원 재구조화 가능

※ 4자 실무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논의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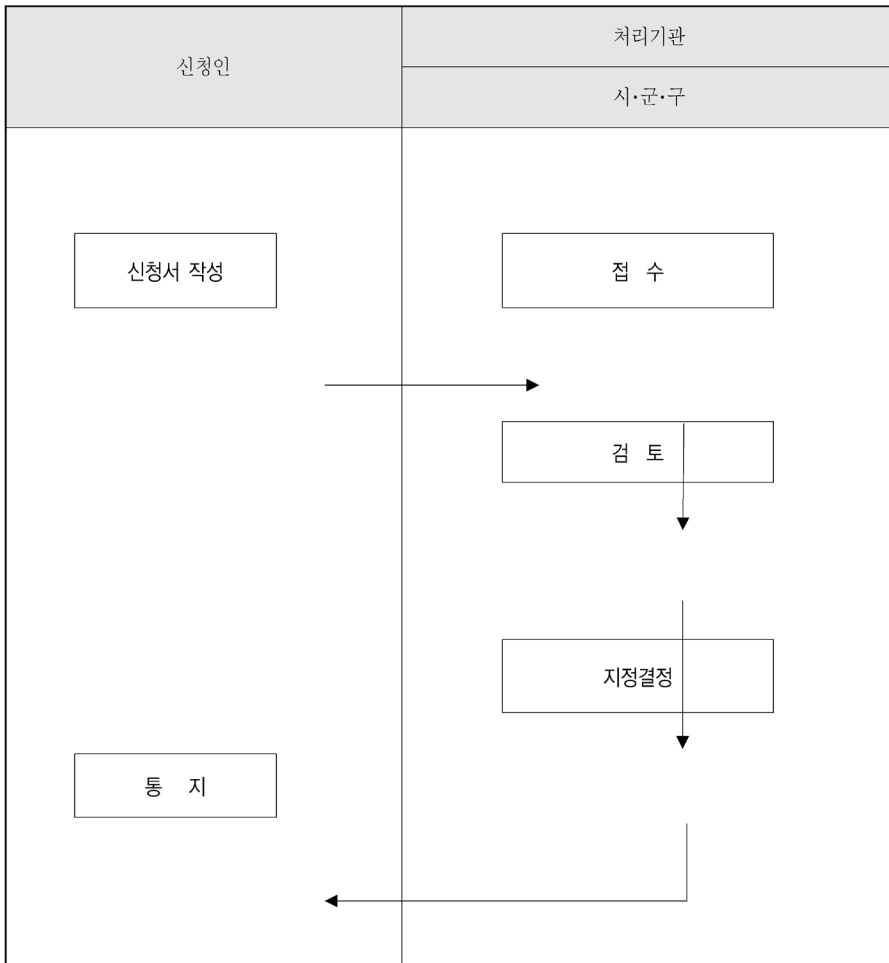


(뒷쪽)

※ 신청안내

신청자격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신고된 어린이집 중 야간연장·휴일 보육에 관심이 있고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제출하는 곳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접수하시면 됩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야간연장,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정서

지정분야 : (야간연장, 휴일) 어린이집

시 설 명:

소 재 지:

정 원: 야간연장 명, 휴일 명

원장 성명: (생년월일 )

위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인

서식 IX-5-3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

24시간 어린이집 이용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 관계	
가족사항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직업	연락처 (휴대전화)	
이용아동	아동성명 (성별)			생년월일		
	시설명 (소재지)					
<p>〈동의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래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이행시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한 보호조치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p> <p>〈보호자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3회 이상 해당아동과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식으로 아동과 접촉해야 한다.</li> <li>2.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최소한 주1회 이상 아동을 가정에 데려가 보호 해야 한다.</li> <li>3.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는 상시적으로 어린이집과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li> <li>4. 24시간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1개월 이상의 보호의무를 해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li> </ol>						
20 .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b>어린이집원장(인)</b>						

##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부록 포함)
2. 보건복지부(2023.8.), 「영유아 보육법령집」
3.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육아정책연구소(2023), 「어린이집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
4. 한국보육진흥원(2023), 「2023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5. 장석환(2020), 「한국의 영유아정책(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관점)」
6. 한국보육진흥원(2020-922), 「사례로 본 알기 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7. 보건복지부(2020), 「보육정책안내(각종 보육사업 및 어린이집 생활)」
8. 한국보육진흥원(2021-912), 「사례로 본 알기 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9. 경기도교육청, 「2022 사립유치원 행정업무 매뉴얼」

교육부(<http://www.moe.go.kr>)

보건복지부(<http://moh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보육진흥원(<http://kcpi.or.kr>)

육아정책연구소(<http://kicce.re.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http://central.childcare.go.kr>)

경기도교육청(<http://www.goe.go.kr>)

##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

**발행일** | 2023년 10월

**발행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문의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대외협력과

TEL. 044-203-7215~7216

FAX. 044-203-7079

**디자인** | 성문기획 044-867-5130

---